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173-10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CONTENTS

제 1 편 제도 개요

-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 II. 업무처리 프로세스 6

제 2 편 신청 및 선정기준

- I. 수급자 신청 13
- II. 수급자 선정기준 17
- III.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45

제 3 편 조 사

- I. 조사의 개요 57
- II. 근로능력 판정 70
- III. 소득조사 77
- IV. 재산조사 98
- V. 부양의무자 조사 122

제 4 편 급여의 실시

- I. 급여의 개요 131
- II. 급여의 지급 135
- III. 급여별 세부내용 143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 5 편

수급자 관리

I.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69
II.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178
III. 보장비용의 징수	182
IV. 반환명령	193

제 6 편

보장시설

I. 보장시설 개요	197
II.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200
III.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202
IV.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207
V.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215

제 7 편

보장기관

I. 보장기관	223
II. 지방생활보장위원회	224
III. 이의신청	230
IV. 각종 보고사항	233

CONTENTS

제 8 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 I.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등 237
- II.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245
- III.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254

제 9 편

서 식

- 서식 265

제 10 편

부 록

- I. 조건표 341
- II. 부양능력판정표 357
- III.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107개 질환) 359
- IV.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364
- V.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사업 365
- VI. 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366
- VII.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안내 373
- VIII.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안내문 379
- IX.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381
- X. 압류방지 전용통장 383
- XI. 기초생활보장 업무 관련 홈페이지 389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주요 기준의 개정사항은 지침 본문에 밑줄로 표시하여 변경된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확인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침 본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 2012년도 최저생계비 >

(단위 : 원)

연도 \ 가구규모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 2012년도 현금급여기준 >

(단위 : 원)

연도 \ 가구규모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1년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2012년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 신청 및 선정기준(2편)

구 분	2011년	2012년 개정 사항
외국인 특례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이혼 또는 사별 포함) 중인 자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이혼 또는 사별 포함) 중인 자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이혼 또는 사별 포함) 중인 자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임신 중인 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자	○ 외국에서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 조사시점부터 과거 6개월을 의미하며, 9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다음날임
부양의무자기준	<신설>	○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부양비 30%부과되는 미약구간)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고 '수급권자(A) 및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 합'의 185% 미만인 경우 ※ $B \times 130\% \leq \text{부양의무자의 소득} < (A+B) \times 185\%$
이행급여 특례	○ 적용대상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근로·사업소득 등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 가구	○ 적용대상자 -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중인 자(가구)가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원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이하인 가구 -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에 참여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함으로써 근로·사업소득 등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이하인 가구

□ 조사(3편)

구 분	2011년	2012년 개정 사항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신설>	○ 시·도는 시·군·구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에 보고 - 전년 하반기(7~8월)조사결과 : 2월 말 - 상반기(1~6월) 조사결과 : 8월 말
일반재산의 환산율이 적용 되는 차량	<신설>	○ 1000cc이하 화물·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부양의무자조사	<신설>	○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리방법
부양의무자조사	<신설>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제외

□ 급여의 실시(4편)

구 분	2011년	2012년 개정 사항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설>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됨
생계급여	(다)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 ○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급여개시일이 16일 이후일 경우: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다)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 ○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교육급여	(3)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3)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초등학생·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수급자 관리(5편)

구 분	2011년	2012년 개정 사항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설>	○ 신청자 중 그 친권자, 후견인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장기관(민원실)에 신청

□ 보장시설, 보장기관,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6~8편)

구 분	2011년	2012년 개정 사항
보장시설 퇴소자 관리		○ 보장시설 수급자가 퇴소할 때 보장기관 관할지역 외로 이주하는 경우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전입 신고를 하도록 안내 하며, 보장시설 담당은 관련 서류를 전입지로 이송
교정시설출소자 에 대한 특별연 계보호방안		○ 치료감호소의 장은 출소예정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보장기관에 수급권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

제1편 제도 개요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II. 업무처리 프로세스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기초생활 업무처리 개요 〉

1. 급여의 신청

- 가. (신청주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¹⁾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 나. (직권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2. 소득·재산조사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법 제22조)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가. 급여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법 제26조)
-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²⁾)에 등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중지·정지·상실]통보서(서식6호)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법 제26조제3항)
- ☞ 반드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통지되어야 하며, 읍·면·동장의 명의로 통지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부양의무자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

다.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 급여신청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서식 12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의무

4.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가. 급여의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

나. 수급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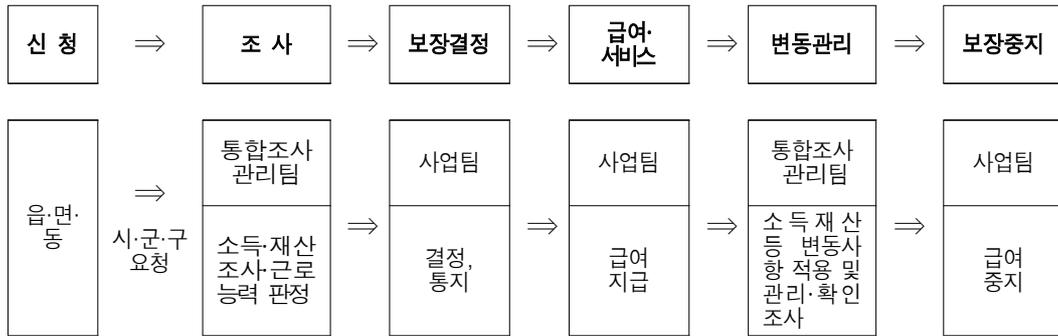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전담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1) 친족 및 그밖의 관계인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지참
2)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함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처리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판정 •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조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주거급여 : 가구별로 “현금급여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 지급 제외자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50만원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50만원

II 업무처리 프로세스



1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가. 읍·면·동 : 대민 서비스 창구

- 읍·면·동은 상담·신청안내, 신청·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나.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자산조사, 자격관리

-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선정,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업무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담하여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 일원화
 - 급여자격 판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변동관리를 전담하여 기준 적용의 편차 제거 및 전문성 확보

다. 시·군·구 기초생활보장담당: 급여지급, 환수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신규 신청자

① 신청 (읍·면·동)

○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 (신청서) 신청서의 ‘안내및유의사항’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조회하여 반영
-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미기재
-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제출 서류 안내

○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즉시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부여

② 조사 (통합조사관리팀)

○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관계,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 (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가구방문 시 징구하거나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가구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 지출실태조사표 징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징구 및 활동능력평가 정보수집,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확인 등

○ 조사결과 반영

- 신청서 접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 근로 능력판정결과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
-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의 결정

③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사업팀)

- 보장결정 후 수급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④ 이의신청 (사업팀)

나. 기존수급자 급여지급 절차

①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스템)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②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재산 변동

-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자동반영되며,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예: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등)은 확인 후 반영

○ 가구원 인적변동

- 거주지 변동(전출·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시 알림
- 전출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장가구 재구성

○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당월 미반영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됨

* 변동처리 후 해당 월 급여변동사항의 상계·소급절차를 진행하여야만 익월급여 변동가능

③ 각종 공제액 반영 및 수정 (사업팀)

○ 각종 공제액이 반영된 개인별 급여예상액 확인

- * 양곡 공제 : 양곡할인 구입을 신청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양곡공제 연간계획'에 따라 매월 급여액에서 양곡 금액을 차감하는 것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후 입력)

- * 장기입원공제 :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3개월간 30일 이상 장기입원 함으로써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것 (건보공단 통보분을 시스템 자동 반영)
 - * 주거공제 : 자가주택 소유자, 전체 무료임차자를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주거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 (주거유형 변동 시 읍·면·동 또는 통합조사관리팀 담당자가 확인 후 입력)
- 예상급여액 확인시 급여생성 이상자(상계금액 이상, 양곡공제 이상)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제사항 재수정
- * 상계금액 이상(상계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 상계 계획 수정
 - * 양곡공제 이상(양곡금액보다 급여액이 더 작은 경우) ⇒ 양곡 계획 수정
- ④ 급여지급자료 생성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급여 지급자료(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재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월 15일 24:00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자동 생성
- ⑤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 (담당 사업과)
- 급여담당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급여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 생계급여
 - 교육급여 : 학년·학적 변동 시 급여 신청, 2/4~4/4분기 재학 조회
 - 장제·해산급여 : 읍·면·동 접수 → 시·군·구 지급
 - 결재된 급여 지급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부서로 지급의뢰
- ⑥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회계부서)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도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하여 급여입금
 -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 인증)후 지급

다. 기존 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 ①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통합조사관리팀)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자동 알림
 - 공적자료가 아닌 자료로 소득산정 된 자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해 확인조사 실시

② 급여중지 요청 (통합조사관리팀)

-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 중지 요청

③ 급여중지 및 결정 (사업팀)

④ 보장비용 환수 (사업팀/회계부서)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I. 수급자 신청

- 가. 급여신청 주체
- 나.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다. 신청 구비서류
- 라. 신청절차
- 마. 신청시 안내사항
- 바. 급여신청의 효과
- 사. 신청 등록

II. 수급자 선정기준

- 1. 보장의 단위
 - 가. 가구단위 보장
 - 나. 개인단위 보장
- 2. 수급자 선정기준
 - 가. 소득인정액 기준
 - 나. 부양의무자 기준

III.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1.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2.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 특례
- 3. 외국인에 대한 특례
- 4.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가. 의료급여 특례
 - 나. 교육급여 특례
 - 다. 자활급여 특례
 - 라. 이행급여 특례
- 5. 타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가. 북한이탈주민
 - 나. 일본군위안부
 - 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에이즈감염자)
 - 라. 농어민가구
- 6.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
 - 나.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
 - 다.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 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I 수급자 신청

가.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 수급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 연계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 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참조

나.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 (2)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제1항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참조

다. 신청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서식 1호)
 - 보장·급여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함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서식 3호)
 - 급여신청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거나 가족관계 단절, 비혈연 관계 등으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단절 등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계단절여부 확인을 통해 수급자격 판단

-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 (4)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신청서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신청절차

- (신청 안내)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 (신청서 작성) 공통신청서 또는 개별사업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제공
 -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 (신청접수) 읍·면·동 접수 후 시·군·구로 송부
- (서류보완 안내)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보완 요청
 -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마. 신청시 안내사항

- 처리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

-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 및 제출 기한 등을 안내
- 통지방법 : 수급권자가 원하는 통지방법(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서면)을 선택하도록 안내
- 신고의 의무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제49조)
 - 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 서비스 신청 접수(대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 고지사항 안내
 -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 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 기타 보호 실시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바. 급여신청의 효과

- (1)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첨부³⁾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간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

※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다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차상위계층조사에 응한 대상자 중에서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의 급여개시일은 해당연도 1월 1일임.

차상위계층의 경우 조사에 대한 본인의 동의를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법 제27조제1항, 제24조제2항)

- (2) 신청조사 실시 : 3편 조사 참조(p.55)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등 수급자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 실시

-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4편 급여의 실시 참조(p.129)

사. 신청 등록

-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 제출된 각종 서류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스캔하여 등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시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 부여

3)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II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의 단위

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음(법 제4조제3항)

- 가구단위 보장 :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 개인단위 보장 : 특정 가구원

가. 가구단위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본단위임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법 제2조 제7호내지제9호)
-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가구규모등을 반영하여 계측 공포되고 있음(법 제4조, 제6조)
-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법 제4조제3항)

(1) 보장가구의 범위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자

-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⁴⁾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⁵⁾ 자

※ 2촌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보장가구로 봄

4)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세대주와 호주가 다른 자는 동거인으로 처리

5) 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 ②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①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에서 분리
- ③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 하는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⁶⁾가 그의 부양의무자⁷⁾가 되는 경우
- ④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 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4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
 - ※ 이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 6)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소득원 1인으로 한정(즉, 부부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에 유의)
-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시행령 제2조제2항)

- ①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 단,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⁸⁾은 보장가구에 포함.
- ②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 ※ 조사시점부터 과거 6개월을 의미하며, 9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다음날임
- ③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사람
- ④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 ⑤ 행방불명자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 ⑥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

(다) 가구 범위 확정 절차

- ①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 ②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 추가
- ③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8)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자

<가구구성 처리 절차>

①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② 별도 주민등록상 포함될 가구원 추가 (담당자 확인)	③ 사업별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삭제(담당자 확인)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포함될 가족 확인 후 추가	- 사업별로 제외대상을 확인하여 삭제
↓	↓	↓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포함될 가구원	제외할 가구원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 배우자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사실혼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 동거인(2촌이내의 혈족)	- 2촌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 되는자>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 외국에서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 · 보장시설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시 제외되는 자'는 조사시 가구원으로 등록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보장결정시 급여·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2)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가) 급여업무 위탁에 따른 별도가구

○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10조)

- 1)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보장시설수급자) : 제6편 참조
- 2)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자

- 가)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보호 아동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 나) 일반 가정위탁보호 아동
 - 일반인의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3호)
- 다)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 가), 나)의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적용

(나)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가구 중, 그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음의 가구원
-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손자녀(부모의 사망·행불·가출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가구로 (외)조부모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가구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그 손자녀를 별도가구로 보호
 -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i)부모가 노인·장애인·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해당하거나 (ii)가구원인 자녀가 중증장애인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iii)기타 가구특성으로 자녀를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자녀와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를 별도가구로 보호
- ※ 다만, 동 특례는 배우자간에는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 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인 부모(시부모 또는 친정부모)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모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에 대해서는 별도가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2)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 별도가구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 별도가구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별도가구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 산정방식에 따라 무료임차소득 부과
-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로 선정된 자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하여 처리

①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자

-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⁹⁾ 및 장애인복지법상 3~4급 장애인, ㉢ 만성·회귀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 임신부(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미만의 여자), ㉤ 18세 미만의 자(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모·부자가정

※ 단,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제3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89쪽 참조)

(예시) 65세의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 : 노인, 동생을 가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수급자로 선정

-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자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범무보호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자

※ 근로능력자의 경우에는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후에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가구 불인정

②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부부 및 자녀 가구(한부모 가정 포함)

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③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자녀가 있는 미혼모·부자 포함,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④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
- 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가 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⑥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부양능력 있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함)
- ⑦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으로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⑧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자녀(다만,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없고 본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거나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 ⑨ 부모의 집에 거주하면서 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자녀의 가구(다만 결혼한 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거나 자녀의 가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근로능력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함)
- ⑩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미혼자녀

(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 동일 보장가구원인 취업자녀의 소득이 발생한 가구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자녀를 제외한 자¹⁰⁾

10) 수급자가구 뿐만 아니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가구(수급자 선정절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대상가구) 취업자녀를 제외한 가구원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적용기한) 취업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만 18세)부터 3년 이내(군복무, 고등학교 재학기간 제외)에 한하여 적용. 미성년으로 취업한 기간동안에도 동 특례를 적용하되, 동 기간은 3년 기한에 포함시키지 않음
 - (적용방안) 동 특례가 적용되는 취업자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로 처리(동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 33쪽 참조)
- ※ 별도가구 가구원 중 취업자녀와 부양의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자(형제 자매 등)에 대해서는 (나)-1)의 별도가구특례를 재적용하지 않음

나. 개인단위 보장

-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근거 : 보장기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을 단위로 급여를 행할 수 있음(법 제4조제3항)
- (1) 의료급여 특례수급자
 - (2) 교육급여 특례수급자
 - (3)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 ※ 각각의 수급요건 등에 대해서는 45쪽~47쪽 참조

2 수급자 선정기준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가.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2012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¹¹⁾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2(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2011(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2,602,257원)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begin{aligned}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부채}) \times \text{소득환산율} \\ &= \text{실제소득} - \text{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text{근로소득공제} \end{aligned}$$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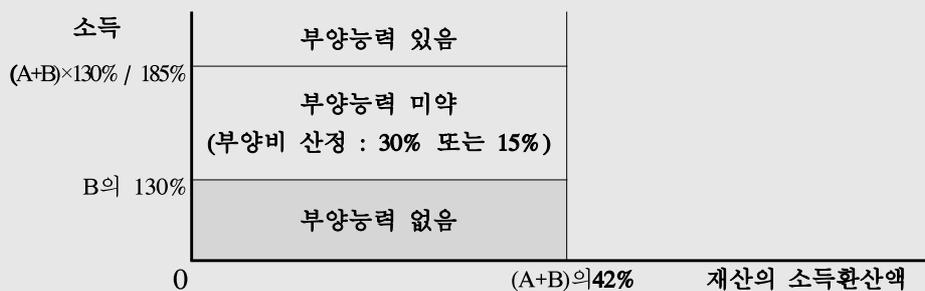
11)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금액은 모두 원단위로 계산

나.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제5조)

- ◆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 (1)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 의 42% 미만
 - (2)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 의 130% 미만(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185%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 의 42%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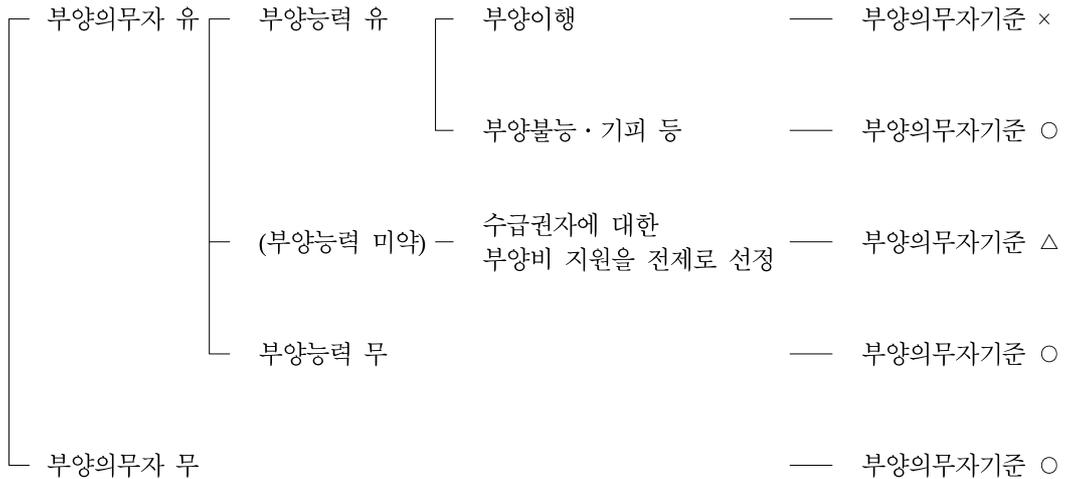
<부양능력 기본 도해>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 하지 아니함

<참고 :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부양의무자가 아님

- (1)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2)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신청자의 계자녀)
- (3)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에 부양의무자 아님)
 - ※ 친양자제도는 기존의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소멸시키고, 양자와 양부모간 관계를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민법 제908조의2에서 제908조의8까지의 ‘친양자제도’ 참고) 하며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로 확인
- (4)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도 산정하지 않음)
- (5)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자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는 산정)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가)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1)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 2)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 반드시 본인 명의의 주거이어야 하며, 부양을 받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소득이 해당 직계존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함

※ 이 경우 부양의무자는 자신의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예1) 수급권자인 아들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인 부가 자신의 주거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아들에 대한 부양책임은 면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

예2) 수급권자인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자신의 주거에서 중증장애인인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

- 3) 부양의무자가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이어서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또는 보호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를 지원받는 가구에 속하는 경우

(나) 소득과 금융재산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시행령 제4조제2항)

○ 소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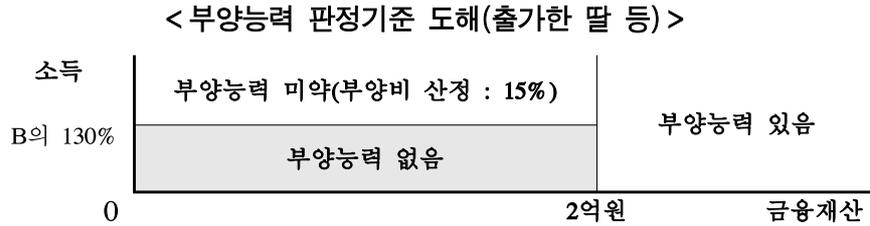
- 부양의무자의 소득¹²⁾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미만

○ 금융재산 기준

-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

※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산정시는 생활준비금(300만원)과 금융부채(담보·신용약관대출 등)를 공제

12)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란 실제소득에서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한 소득(시행령 제4조). 이하 같음



※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다) 재산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 또는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 외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이고, 일용근로소득 등이 주소득원인 경우에 한함)(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소득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 단, 일용근로자 등이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조사 없이 부양능력 없음으로 처리하고,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 기준을 적용

(라)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위 (가)~(다)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중에서 다음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제4조제1항제5호)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의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인 자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부양능력판정 도해 참고)

(마)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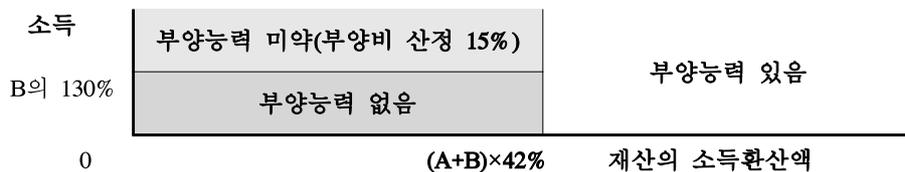
- ①부양의무자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②부양의무자 가구원 중에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가구의 취업자녀¹³⁾. 다만, 성년이 된 시점(만 18세)부터 3년(군복무, 고등학교 재학기간은 제외)에 한함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부양능력 있음 소득구간이 없음에 유의)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 >



※ A :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바) 재산기준 특례에 해당되어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법 제5조제2항)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5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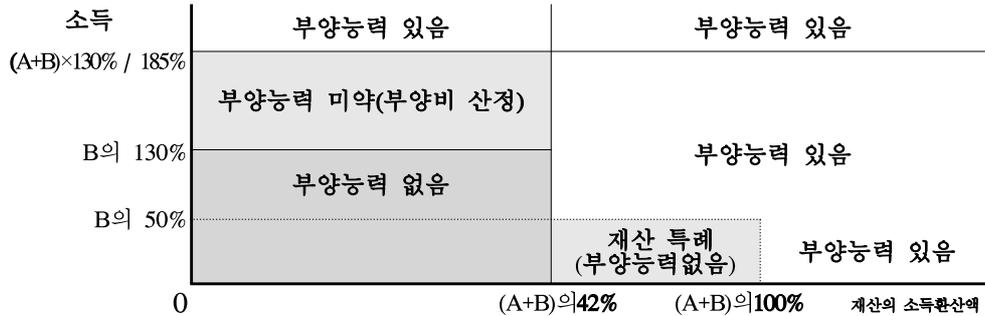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 이상 100% 미만

- 가구특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부양의무자 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개별가구원 포함)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적용을 받던 부양의무자 가구 중 소득과 재산형태·구성에 변화가 전혀 없으나,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특례자로 계속 인정 가능

13) 미성년자로서 취업한 자녀도 적용대상이며, 미성년으로서 취업한 기간은 3년 기한 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일반/재산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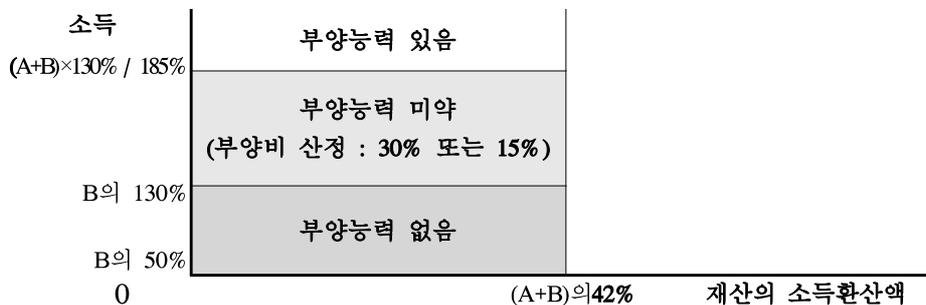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참고> 42%의 의미 : '99년도 4인 가구 재산기준(3,200만원)의 120%(3,840만원)에 대하여 월 이자율 1%를 가정할 경우 발생하는 월소득 384천원과 4인 가구 최저생계비(93만원)와의 비율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 ◆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부양비'는 수급권자가구의 기타소득(부양비)으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
- ◆ 다만,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우선 수급자로 선정·보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182쪽 보장비용징수 참조)

<부양비 부과대상 도해>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가) 부양비 부과율이 30%인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30%를 부양비로 부과
- 부양비 = (부양의무자의 소득-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30%

1)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①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고 ‘수급권자(A) 및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 미만인 경우

※ $B \times 130\% \leq \text{부양의무자의 소득} < (A+B) \times 130\%$

- ②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times 42\%$

2)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 ①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고 ‘수급권자(A) 및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 합’의 185% 미만인 경우

※ $B \times 130\% \leq \text{부양의무자의 소득} < (A+B) \times 185\%$

- ②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times 42\%$

* 노인가구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장애인가구 :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록 되어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법’상 한부모 가구

(나)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부양비로 부과
- 부양비 = (부양의무자의 소득-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 × 15%

- 1)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이거나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 가구인 경우

- ①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 ②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
 ※ 금융재산 산정시는 생활준비금(300만원)과 금융부채(담보·신용·약관대출 등)를 공제

- 2) 취업자녀¹⁴⁾인 경우

- ①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의 두단계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 ②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다)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산정하지 않음
- 1) 부양의무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부양사실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 부양의무자가 다른 피부양자에 대하여 산정된 부양비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면 부양비 산정제외. 다만, 산정된 부양비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 산정된 부양비에서 지원하는 금액만큼 차감하고 부양비 산정
- 2) 부양의무자가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14)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가구의 취업자녀로서 성년 시점부터 3년까지만 적용함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의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비는 한쪽 가구(시부모)에게만 부과

3) 부양의무자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이혼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하여 산정된 부양비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등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시행령 제5조)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 수급자 선정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 징수

(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된 경우(군복무)

(나)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라) 보장시설수급자

(마) 행방불명자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바) 다음 사항 중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수급신청한 자의 1촌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사망한 상태에서 자녀가 수급신청을 한 경우 그 계부모
-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위탁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부양능력없음, 부양비)관련 요약

구 분		부양능력 없음		
		소득	(부양비 지원을 전제)	재산 (소득환산액)
원칙		B×130% 미만	(A+B)×130% 미만 → B×130% / 185% 초과금액의 30% 부양비 부과	(A+B)×42% 미만
예외① (가구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 자신의 주거에서 직계존속,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 부양 ■ 부가급여 대상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	×
예외② (인구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가한 딸 ■ 친정부모 	B×130% 미만	B×130% 초과 → B×130% 초과금액의 15% 부양비 부과	금융재산 2억원 미만
예외③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 행상 - 주소득원 - 이외 근로자 없음 	×	×	(A+B)×42% 미만 (원칙과 동일)
예외④ (가구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가구 중 취업자녀 (18세부터 3년간)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B×130% 미만	B×130% 초과 → B×130% 초과금액의 15% 부양비 부과	(A+B)×42% 미만 (원칙과 동일)
⑤(재산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재산이 주택에 한정 	B×50% 미만	×	(A+B)×100% 미만
⑥(부양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속 부양 ■ 둘 이상의 수급권자 부양의무 → 한쪽만 부과 ■ 중증장애인 ■ 이혼 후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 비속 양육 	-	-	-

* A :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

'12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단위 : 원)

수급권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1인	미약	없음	719,360	464,817	1,224,856	628,131	1,584,535	744,335	1,944,215	860,540	2,303,895	976,744
		719,360 ~ 1,438,720 (2,047,410)	1,224,856 ~ 1,944,216 (2,766,769)		1,584,535 ~ 2,303,895 (3,278,620)		1,944,215 ~ 2,663,575 (3,790,472)		2,303,895 ~ 3,023,255 (4,302,325)			
		있음	1,438,720 (2,047,410)		1,944,216 (2,766,769)		2,303,895 (3,278,620)		2,663,575 (3,790,472)		3,023,255 (4,302,325)	
2인	미약	없음	719,360	628,131	1,224,856	791,445	1,584,535	907,649	1,944,215	1,023,854	2,303,895	1,140,058
		719,360 ~ 1,944,216 (2,766,769)	1,224,856 ~ 2,449,712 (3,486,129)		1,584,535 ~ 2,809,391 (3,997,960)		1,944,215 ~ 3,169,071 (4,509,832)		2,303,895 ~ 3,528,751 (5,021,684)			
		있음	1,944,216 (2,766,769)		2,449,712 (3,486,129)		2,809,391 (3,997,960)		3,169,071 (4,509,832)		3,528,751 (5,021,684)	
3인	미약	없음	719,360	744,335	1,224,856	907,649	1,584,535	1,023,853	1,944,215	1,140,058	2,303,895	1,256,262
		719,360 ~ 2,303,895 (3,278,620)	1,224,856 ~ 2,809,391 (3,997,960)		1,584,535 ~ 3,169,070 (4,509,830)		1,944,215 ~ 3,528,750 (5,021,683)		2,303,895 ~ 3,888,430 (5,533,535)			
		있음	2,303,895 (3,278,620)		2,809,391 (3,997,960)		3,169,070 (4,509,830)		3,528,750 (5,021,683)		3,888,430 (5,533,535)	
4인	미약	없음	719,360	860,540	1,224,856	1,023,854	1,584,535	1,140,058	1,944,215	1,256,262	2,303,895	1,372,466
		719,360 ~ 2,663,575 (3,790,472)	1,224,856 ~ 3,169,071 (4,509,832)		1,584,535 ~ 3,528,750 (5,021,683)		1,944,215 ~ 3,888,430 (5,533,535)		2,303,895 ~ 4,248,110 (6,045,387)			
		있음	2,663,575 (3,790,472)		3,169,071 (4,509,832)		3,528,750 (5,021,683)		3,888,430 (5,533,535)		4,248,110 (6,045,387)	
5인	미약	없음	719,360	976,744	1,224,856	1,140,058	1,584,535	1,256,262	1,944,215	1,372,466	2,303,895	1,488,671
		719,360 ~ 3,023,255 (4,302,325)	1,224,856 ~ 3,528,751 (5,021,684)		1,584,535 ~ 3,888,430 (5,533,535)		1,944,215 ~ 4,248,110 (6,045,387)		2,303,895 ~ 4,607,790 (6,557,240)			
		있음	3,023,255 (4,302,325)		3,528,751 (5,021,684)		3,888,430 (5,533,535)		4,248,110 (6,045,387)		4,607,790 (6,557,240)	

※ 부양능력 판단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수급권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 생계비합의 100분의 42'를 비교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예시) 수급권자 2인 가구,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때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100분의 42'

= (942,197+1,495,550) × 42% = 1,023,854원

- 부양능력 없음 ⇨ 소득이 1,944,215원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023,854원 미만
- 부양능력 있음 ⇨ 소득이 3,169,071원 이상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023,854원 이상
- 부양능력 미약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023,854원 미만이고) 소득이 1,944,215원 이상, 3,169,071원 미만

'12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금액 기준)

부양의무자가구의 총 재산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단위 : 원)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1인	없음	719,360	144,146,699	1,224,856	148,063,104	1,584,535	150,849,768	1,944,215	153,636,443	2,303,895	156,423,118
	미약	719,360 ~ 1,438,720 (2,047,410)		1,224,856 ~ 1,944,216 (2,766,769)		1,584,535 ~ 2,303,895 (3,278,620)		1,944,215 ~ 2,663,575 (3,790,472)		2,303,895 ~ 3,023,255 (4,302,325)	
		있음		1,438,720 (2,047,410)		1,944,216 (2,766,769)		2,303,895 (3,278,620)		2,663,575 (3,790,472)	
2인	없음	719,360	148,063,104	1,224,856	151,979,508	1,584,535	154,766,173	1,944,215	157,552,847	2,303,895	160,339,522
	미약	719,360 ~ 1,944,216 (2,766,769)		1,224,856 ~ 2,449,712 (3,486,129)		1,584,535 ~ 2,809,391 (3,997,980)		1,944,215 ~ 3,169,071 (4,509,832)		2,303,895 ~ 3,528,751 (5,021,684)	
		있음		1,944,216 (2,766,769)		2,449,712 (3,486,129)		2,809,391 (3,997,980)		3,169,071 (4,509,832)	
3인	없음	719,360	150,849,768	1,224,856	154,766,173	1,584,535	157,552,837	1,944,215	160,339,512	2,303,895	163,126,187
	미약	719,360 ~ 2,303,895 (3,278,620)		1,224,856 ~ 2,809,391 (3,997,980)		1,584,535 ~ 3,169,070 (4,509,830)		1,944,215 ~ 3,528,750 (5,021,683)		2,303,895 ~ 3,888,430 (5,533,535)	
		있음		2,303,895 (3,278,620)		2,809,391 (3,997,980)		3,169,070 (4,509,830)		3,528,750 (5,021,683)	
4인	없음	719,360	153,636,443	1,224,856	157,552,847	1,584,535	160,339,512	1,944,215	163,126,187	2,303,895	165,912,862
	미약	719,360 ~ 2,663,575 (3,790,472)		1,224,856 ~ 3,169,071 (4,509,832)		1,584,535 ~ 3,528,750 (5,021,683)		1,944,215 ~ 3,888,430 (5,533,535)		2,303,895 ~ 4,248,110 (6,045,387)	
		있음		2,663,575 (3,790,472)		3,169,071 (4,509,832)		3,528,750 (5,021,683)		3,888,430 (5,533,535)	
5인	없음	719,360	156,423,118	1,224,856	160,339,522	1,584,535	163,126,187	1,944,215	165,912,862	2,303,895	168,699,537
	미약	719,360 ~ 3,023,255 (4,302,325)		1,224,856 ~ 3,528,751 (5,021,684)		1,584,535 ~ 3,888,430 (5,533,535)		1,944,215 ~ 4,248,110 (6,045,387)		2,303,895 ~ 4,607,790 (6,557,240)	
		있음		3,023,255 (4,302,325)		3,528,751 (5,021,684)		3,888,430 (5,533,535)		4,248,110 (6,045,387)	

♣ 부양의무자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단위 : 원)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1인	없음	719,360	119,646,699	1,224,866	123,563,104	1,584,535	126,349,768	1,944,215	129,136,443	2,303,895	131,923,118
	미약	719,360 ~ 1,438,720 (2,047,410)		1,224,866 ~ 1,944,216 (2,766,769)		1,584,535 ~ 2,303,895 (3,278,620)		1,944,215 ~ 2,663,575 (3,790,472)		2,303,895 ~ 3,023,255 (4,302,325)	
	있음	1,438,720 (2,047,410)		1,944,216 (2,766,769)		2,303,895 (3,278,620)		2,663,575 (3,790,472)		3,023,255 (4,302,325)	
2인	없음	719,360	123,563,104	1,224,866	127,479,508	1,584,535	130,266,173	1,944,215	133,052,847	2,303,895	135,839,522
	미약	719,360 ~ 1,944,216 (2,766,769)		1,224,866 ~ 2,449,712 (3,466,129)		1,584,535 ~ 2,809,391 (3,997,960)		1,944,215 ~ 3,169,071 (4,509,832)		2,303,895 ~ 3,528,751 (5,021,684)	
	있음	1,944,216 (2,766,769)		2,449,712 (3,466,129)		2,809,391 (3,997,960)		3,169,071 (4,509,832)		3,528,751 (5,021,684)	
3인	없음	719,360	126,349,768	1,224,866	130,266,173	1,584,535	133,062,837	1,944,215	135,839,512	2,303,895	138,626,187
	미약	719,360 ~ 2,303,895 (3,278,620)		1,224,866 ~ 2,809,391 (3,997,960)		1,584,535 ~ 2,809,391 (4,509,830)		1,944,215 ~ 3,528,750 (5,021,683)		2,303,895 ~ 3,888,430 (5,533,535)	
	있음	2,303,895 (3,278,620)		2,809,391 (3,997,960)		3,169,070 (4,509,830)		3,528,750 (5,021,683)		3,888,430 (5,533,535)	
4인	없음	719,360	129,136,443	1,224,866	133,062,847	1,584,535	135,839,512	1,944,215	138,626,187	2,303,895	141,412,862
	미약	719,360 ~ 2,663,575 (3,790,472)		1,224,866 ~ 3,169,071 (4,509,832)		1,584,535 ~ 3,528,750 (5,021,683)		1,944,215 ~ 3,888,430 (5,533,535)		2,303,895 ~ 4,248,110 (6,045,387)	
	있음	2,663,575 (3,790,472)		3,169,071 (4,509,832)		3,528,750 (5,021,683)		3,888,430 (5,533,535)		4,248,110 (6,045,387)	
5인	없음	719,360	131,923,118	1,224,866	135,839,522	1,584,535	138,626,187	1,944,215	141,412,862	2,303,895	144,199,537
	미약	719,360 ~ 3,023,255 (4,302,325)		1,224,866 ~ 3,528,751 (5,021,684)		1,584,535 ~ 3,888,430 (5,533,535)		1,944,215 ~ 4,248,110 (6,045,387)		2,303,895 ~ 4,607,790 (6,557,240)	
	있음	3,023,255 (4,302,325)		3,528,751 (5,021,684)		3,888,430 (5,533,535)		4,248,110 (6,045,387)		4,607,790 (6,557,240)	

♣ 부양의무자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단위 : 원)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1인	없음	719,360		1,224,856		1,584,535		1,944,215		2,303,895	
	미약	719,360 ~ 1,438,720 (2,047,410)	112,646,699	1,224,856 ~ 1,944,216 (2,766,769)	116,563,104	1,584,535 ~ 2,303,895 (3,278,620)	119,349,768	1,944,215 ~ 2,663,575 (3,790,472)	122,136,443	2,303,895 ~ 3,023,255 (4,302,325)	124,923,118
		있음		1,438,720 (2,047,410)		1,944,216 (2,766,769)		2,303,895 (3,278,620)		2,663,575 (3,790,472)	
2인	없음	719,360		1,224,856		1,584,535		1,944,215		2,303,895	
	미약	719,360 ~ 1,944,216 (2,766,769)	116,563,104	1,224,856 ~ 2,449,712 (3,486,129)	120,479,508	1,584,535 ~ 2,809,391 (3,997,980)	123,266,173	1,944,215 ~ 3,169,071 (4,509,832)	126,052,847	2,303,895 ~ 3,528,751 (5,021,684)	128,839,522
		있음		1,944,216 (2,766,769)		2,449,712 (3,486,129)		2,809,391 (3,997,980)		3,169,071 (4,509,832)	
3인	없음	719,360		1,224,856		1,584,535		1,944,215		2,303,895	
	미약	719,360 ~ 2,303,895 (3,278,620)	119,349,768	1,224,856 ~ 2,809,391 (3,997,980)	123,266,173	1,584,535 ~ 3,169,070 (4,509,830)	126,052,837	1,944,215 ~ 3,528,750 (5,021,683)	128,839,512	2,303,895 ~ 3,888,430 (5,533,535)	131,626,187
		있음		2,303,895 (3,278,620)		2,809,391 (3,997,980)		3,169,070 (4,509,830)		3,528,750 (5,021,683)	
4인	없음	719,360		1,224,856		1,584,535		1,944,215		2,303,895	
	미약	719,360 ~ 2,663,575 (3,790,472)	122,136,443	1,224,856 ~ 3,169,071 (4,509,832)	126,052,847	1,584,535 ~ 3,528,750 (5,021,683)	128,839,512	1,944,215 ~ 3,888,430 (5,533,535)	131,626,187	2,303,895 ~ 4,248,110 (6,045,387)	134,412,862
		있음		2,663,575 (3,790,472)		3,169,071 (4,509,832)		3,528,750 (5,021,683)		3,888,430 (5,533,535)	
5인	없음	719,360		1,224,856		1,584,535		1,944,215		2,303,895	
	미약	719,360 ~ 3,023,255 (4,302,325)	124,923,118	1,224,856 ~ 3,528,751 (5,021,684)	128,839,522	1,584,535 ~ 3,888,430 (5,533,535)	131,626,187	1,944,215 ~ 4,248,110 (6,045,387)	134,412,862	2,303,895 ~ 4,607,790 (6,557,240)	137,199,537
		있음		3,023,255 (4,302,325)		3,528,751 (5,021,684)		3,888,430 (5,533,535)		4,248,110 (6,045,387)	

'12년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단위: 원)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없음 ·소득은 해당금액 이하 ·재산의 소득환산 액은 해당 금액 이상~미만일때	1인	276,677	464,817 ~ 1,106,708	471,099	628,131 ~ 1,495,551	609,437	744,335 ~ 1,772,227	747,775	860,540 ~ 2,048,904	886,114	976,744 ~ 2,325,581
	2인	276,677	628,131 ~ 1,495,551	471,099	791,445 ~ 1,884,394	609,437	907,649 ~ 2,161,070	747,775	1,023,854 ~ 2,437,747	886,114	1,140,058 ~ 2,714,424
	3인	276,677	744,335 ~ 1,772,227	471,099	907,649 ~ 2,161,070	609,437	1,023,853 ~ 2,437,746	747,775	1,140,058 ~ 2,714,423	886,114	1,256,262 ~ 2,991,100
	4인	276,677	860,540 ~ 2,048,904	471,099	1,023,854 ~ 2,437,747	609,437	1,140,058 ~ 2,714,423	747,775	1,256,262 ~ 2,991,100	886,114	1,372,466 ~ 3,267,777
	5인	276,677	979,744 ~ 2,325,581	471,099	1,140,058 ~ 2,714,424	609,437	1,256,262 ~ 2,991,100	747,775	1,372,466 ~ 3,267,777	886,114	1,488,671 ~ 3,544,454

'12년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판정기준표(재산금액 기준)

♣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단위: 원)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	재산								
없음 ·소득은 해당금액 이하 ·재산의 소득환산 액은 해당 금액 이상~미만일때	1인	276,677	144,146,699 ~ 159,539,760	471,099	148,063,104 ~ 168,864,532	609,437	150,849,768 ~ 175,499,448	747,775	153,636,443 ~ 182,134,388	886,114	156,423,118 ~ 188,769,329
	2인	276,677	148,063,104 ~ 168,864,532	471,099	151,979,508 ~ 178,189,305	609,437	154,766,173 ~ 184,824,221	747,775	157,552,847 ~ 191,459,161	886,114	160,339,522 ~ 198,094,101
	3인	276,677	150,849,768 ~ 175,499,448	471,099	154,766,173 ~ 184,824,221	609,437	157,552,837 ~ 191,459,137	747,775	160,339,512 ~ 198,094,077	886,114	163,126,187 ~ 204,729,017
	4인	276,677	153,636,443 ~ 182,134,388	471,099	157,552,847 ~ 191,459,161	609,437	160,339,512 ~ 198,094,077	747,775	163,126,187 ~ 204,729,017	886,114	165,912,862 ~ 211,363,957
	5인	276,677	156,423,118~ 188,769,329	471,099	160,339,522 ~ 198,094,101	609,437	163,126,187 ~ 204,729,017	747,775	165,912,862 ~ 211,363,957	886,114	168,699,537 ~ 217,998,873

♣ 부양의무자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단위: 원)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	재산								
없음 ·소득은 해당금액 이하 ·재산의 소득환산 액은 해당 금액 이상~미만일때	1인	276,677	119,646,699 ~ 135,039,760	471,099	123,563,104 ~ 144,364,532	609,437	126,349,768 ~ 150,999,448	747,775	129,136,443 ~ 157,634,388	886,114	131,923,118 ~ 164,269,329
	2인	276,677	123,563,104 ~ 144,364,532	471,099	127,479,508 ~ 153,689,305	609,437	130,266,173 ~ 160,324,221	747,775	133,052,847 ~ 166,959,161	886,114	135,839,522 ~ 173,594,101
	3인	276,677	126,349,768 ~ 150,999,448	471,099	130,266,173 ~ 160,324,221	609,437	133,052,837 ~ 166,959,137	747,775	135,839,512 ~ 173,594,077	886,114	138,626,187 ~ 180,229,017
	4인	276,677	129,136,443 ~ 157,634,388	471,099	133,052,847 ~ 166,959,161	609,437	135,839,512 ~ 173,594,077	747,775	138,626,187 ~ 180,229,017	886,114	141,412,862 ~ 186,863,957
	5인	276,677	131,923,118 ~ 164,269,329	471,099	135,839,522 ~ 173,594,101	609,437	138,626,187 ~ 180,229,017	747,775	141,412,862 ~ 186,863,957	886,114	144,199,537 ~ 193,498,897

♣ 부양의무자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단위: 원)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	재산								
없음 소득은 해당금액 이하 재산의 소득환산 액은 해당 금액 이상~미만일때	1인	276,677	112,646,699 ~ 128,039,760	471,099	116,563,104 ~ 137,364,532	609,437	119,349,768 ~ 143,999,448	747,775	122,136,443 ~ 150,634,388	886,114	124,923,118 ~ 157,269,329
	2인	276,677	116,563,104 ~ 137,364,532	471,099	120,479,508 ~ 146,689,305	609,437	123,266,173 ~ 153,324,221	747,775	126,052,847 ~ 159,959,161	886,114	128,839,522 ~ 166,594,101
	3인	276,677	119,349,768 ~ 143,999,448	471,099	123,266,173 ~ 153,324,221	609,437	126,052,837 ~ 159,959,137	747,775	128,839,512 ~ 166,594,077	886,114	131,626,187 ~ 173,229,017
	4인	276,677	122,136,443 ~ 150,634,388	471,099	126,052,847 ~ 159,959,161	609,437	128,839,512 ~ 166,594,077	747,775	131,626,187 ~ 173,229,017	886,114	134,412,862 ~ 179,863,957
	5인	276,677	124,923,118 ~ 157,269,329	471,099	128,839,522 ~ 166,594,101	609,437	131,626,187 ~ 173,229,017	747,775	134,412,862 ~ 179,863,957	886,114	137,199,537 ~ 186,498,897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1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120쪽 참조
- 2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 특례 : 30쪽 참조
- 3 외국인에 대한 특례 : 18쪽 참조
- 4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의료급여 특례

(1) 적용대상자

-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2) 급여내용

- 의료급여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¹⁵⁾
 -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 해산급여, 장제급여 :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나. 교육급여 특례

- (1) **적용대상자** : 실제소득에서 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15) 희귀난치성 질환자 목록 : 부록 IV 참조

(2) 급여내용

- 교육급여 : 해당학생 개인만 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 교육급여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다. 자활급여 특례

(1) **적용대상자** : 수급자¹⁶⁾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 기준초과의 판정시점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이므로 그 다음달부터 자활급여 특례자로 선정(다만, 보장기관이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달은 평균산정기간에서 제외)

☞ 일반수급자에서 자활급여 특례자로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생계·주거급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해당 수급자 가구에 계속 지급

- 전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초과 : 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하지 않음
- 전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함

(2) 급여내용

- 생계·주거급여 : 중지
 - 단, 자활급여특례자를 보장기관의 귀책사유로 자활사업에 참여시키지 못하거나 사업기간 단축 등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경우는 지급(수급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미참여시는 제외)

※ 생계·주거급여 지급시 전체 가구원수 기준으로 급여액 산정

- 자활급여 :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 기간 : 자활특례로 선정된 달로부터 3년간

(단, 보장기관의 사유로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달은 산정에서 제외)

16)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하여 일반수급자도 모두 해당됨

-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지급하되, 다음 기준에 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 희귀난치성질환자(부록 참조) 개인에 대하여 1종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2종 의료급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 :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 지급
- 교육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3) 자활급여 특례수급자에 대한 관리

-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급여를 받지 못하나 소득 등의 자료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다음의 사유로 가구의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다시 일반 수급자 가구로 전환
 -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가 질병·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
 - 다른 가구원의 소득감소 등으로 인하여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자활사업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를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기 곤란하거나,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사업에 참여해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 ※ 일반수급자 가구로 전환된 달부터는 생계·주거급여 등 모든 급여를 재개하고, 조건부 수급자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원은 조건을 부여

라. 이행급여 특례

(1) 적용대상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근로·사업소득 등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 가구
-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에 참여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함으로써 근로·사업소득 등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이하인 가구
 - 단, '11년 취업에 성공하여 탈수급한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에 대해서도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하여 '12.1.1.부터 2년간 지원
 - ※ 근로·사업소득의 변동없이 부양비 부과, 부양능력, 가구원 변동 등으로 중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주의
- 다만,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일 경우 적용
 - 이때 1·2인 가구는 상한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 수준이 충분한 자립기반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1·2인 가구의 경우 1인을 추가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를 적용

< '12년 최저생계비 및 이행급여지급 상한소득인정액 >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소득인정액상한	1,413,296	1,828,310	1,828,310	2,243,325	2,658,341	3,073,356

- 탈수급을 촉진하려는 점을 감안하여 보장중지사유가 은닉 소득이 확인조사를 통해 발견된 부정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결과 신규 발견된 소득, 재산 취득과 가구원 변동 등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급여중지자 보장비용 징수규정과 동일)
 - 확인조사를 통해 기 파악된 소득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는 기존 소득 증가 시 지원하고자하는 본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
- ※ 희망키움통장은 소득의 60%~150%로 자격제한을 두고 있어 대상자 대부분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근처에 있는 자로 소득 변동의 폭이 큰 경우가 적음

(2) 급여내용 : 이행급여 대상 결정 시점부터 2년간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며 생계·주거·자활·해산·장제급여는 미지급

-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의료급여 1종, 그 외의 가구원은 의료급여 2종 지급
- 교육급여 : 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중·고등학생’에 대해 지급

(3) 이행급여특례 수급자에 대한 관리

- (사후관리) 이행급여 지급 대상가구의 소득 및 재산자료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 상한선인 최저생계비의 150% 초과 여부 확인
 - 소득인정액이 150%를 초과한 다음달부터 중지
 - 기초생활보장 재진입시에는 근로능력 및 자활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 철저 및 중점관리대상자 등록·관리 등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만 선별 보호되도록 관리 강화
- (중지) 선정 기준 초과 및 지원기간 도래에 따라 중지
 - 특례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이행급여 특례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특례중지
 - 최대 2년까지 보호하며,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중지(중지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 지원)
 - ※ 이행급여 수급기간 중 희망키움통장을 해지하더라도 이행급여 특례는 유지됨에 유의
- (보고) 기초생활보장사업담당자(지자체에 따라 자활사업담당)는 이행급여 특례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서식-44호)하며 보호실적을 매월 시도에 보고

5 타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다음에 따라 특례 적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3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해당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기준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 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2012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 인정액	553,354 (942,197)	942,197 (1,218,873)	1,218,873 (1,495,550)	1,495,550 (1,772,227)	1,772,227 (2,048,904)	2,048,904 (2,325,580)	2,325,580 (2,602,257)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마다 276,677원씩 가산

※ ()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임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부양의무자기준 : 미적용
- 급여방법
 - 생계·주거급여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즉, 1인가구인 경우는 2인가구 기준 생계·주거급여를, 2인가구인 경우는 3인가구 기준 생계·주거급여를 실시
단,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경우 일반수급자와 동일기준 적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7개월~3년) 자활사업 참여 의무 부과

나. 일본군위안부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급여 실시
 - 소득을 조사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 결정
 - ※ 생활안정지원금 및 그 이자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
- 일본군위안부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처리

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에이즈감염자)

-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여부 판단
 - 에이즈감염자 중 가족과 단절되어 생활하는 자로서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하고 본인가구(세대)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
- 재산의 소득환산시 특례적용
 - 사회적 편견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에이즈 감염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1,600cc이하의 승용차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시 일반재산으로 간주
- 조사 상담시 고려사항
 -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조사는 관할 보건소장에 의뢰하여 실시(3개월마다 실시 되는 정기상담 등을 활용)
 -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상담시 별도의 상담실 활용 등 배려
 - 에이즈감염자의 개인정보는 특히 관리에 유의하여 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수급자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에이즈감염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6조에서 정한 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쉼터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에이즈감염자의 보호차원에서 쉼터 소재를 비밀로 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지에서 급여지급. 다만, 주민등록지의 보장기관은 쉼터 관할 보건소장 또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과 협의하여 수급권자의 쉼터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관리

※ 주민등록이 없는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해당 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되고, 쉼터에서 퇴소시 쉼터 운영기관으로부터 퇴소일자 및 새 거주지 등에 대한 사항이 즉시 통보되도록 협조 요청

- 쉼터 거주 수급자가 쉼터에서 생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 제공

라. 농어민가구

○ 특례인정 사유

세계무역기구(WTO) DDA협상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등 농어촌지역에 새롭게 대두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농어민가구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19조(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추가 인정

1)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1ha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 및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2) 농어민가구가 부담한 보육료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3)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1)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중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04.6.5 시행)

6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

- 소득만 조사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후 급여 결정 및 지급
 - ※ 특별생계비(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
- 1세 유자격자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비를 지급 받음
 - 한국에서는 소득 및 재산규모,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기준으로 수급권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해,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
- 1세 무자격자, 2세 배우자, 장애자녀의 경우
 - 입국 후 국적취득(귀화) 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급받음.
 - 다만, 귀화에 필요한 “한국 1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귀화하지 못한 경우 지원불가
 - 국내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3년간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가 지급되나, 3년 경과 후에도 만 64세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가능 일수만큼 생계비를 공제한 후 지급

나.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

- 재산가액 산정의 특례
 - 농어촌지역의 격리된 정착촌인 경우에는 외지인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 미만으로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 ※ 정착촌이 도심 또는 도심인접권에 있어 토지·건물 등의 매매나 임대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와 정착촌이 아닌 곳에 위치한 토지·건물 등은 재산가액 산정의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 ※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라 할지라도 임대업 등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특히, 도심인접권 정착촌의 경우)하고 있는 등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

- 일본 「한센병요양소 입소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법」에 의해 지급받은 보상금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특례

- 한센병력자들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세대를 이루면서 부모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자로서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양거부·기피로 처리하여 보호하되, 한센병력자 가족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보장비용 징수 면제 가능

다.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 제6편 참조

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 제8편 참조

제3편 조 사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2. 조사의 종류
3. 자료 제출 요구
4. 조사수행 주체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II. 근로능력 판정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3.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4. 중앙근로능력심사위원회

III.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2. 소득평가액산정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IV. 재산조사

1. 재산의 종류
2. 재산의 조사범위
3. 재산가액 산정기준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5. 부채
6. 재산의 소득환산액

V. 부양의무자 조사

1. 조사의 내용
2. 조사순서
3.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방법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가. 조사의 목적

-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 보장기관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일반원칙

- 자산조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수정결과 적용
 -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

2 조사의 종류

가. 신청조사

(1) 조사의 목적

-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법 제22조)

(2) 조사 대상 및 내용

-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변동 확인 및 필요자료의 제출 요구 및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조사내용(법 제22조제1항)
 - 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②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육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 필요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3) 조사시기 : 급여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4) 조사결과 처리

-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내용 등을 결정하여 급여신청자에게 통지
-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발견 시, 해당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수급자에게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 무연고 아동 및 장애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사본을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송부하되, 신상카드의 작성·제출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

(5) 조사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부서
조사대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내용 확인 -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자료 등록후 수정결과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없이 추가 신청 	통합조사 담당
자료제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자료제출 요구 - 조사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통합조사 담당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파악 -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소득출처 파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 항목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 - 추정소득 부과여부 판단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실시 	
조사결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조회결과 반영 	통합조사 담당

나. 확인조사

(1) 조사의 목적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 (법 제23조)

(2) 조사 대상 및 내용

- 수급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조사내용은 신청조사와 동일)

(3) 조사시기

- 시·군·구별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법 제23조제1항)
 - ※ 단, 주기적인 확인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 실시.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가구¹⁷⁾에 대하여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 강화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 이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조사 : 공적자료에 의하여 소득·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로서 다음의 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 : 통보시기에 따라 조사
 -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대상자, 추정소득부과자,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 연1회
 -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불이행자 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 : 반기별 1회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된 자 및 임시일용소득자 : 반기별 1회
 - 조건부과 제외대상자 중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 : 그 기간 경과시 소득 조사실시
- 부양의무자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변동사항을 조사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

17) 175쪽 참조

- 부양의무자가 소명하여 소득에서 차감한 교육·의료비 등 : 연1회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 포함) 선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부양 거부·기피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변동 여부) : 연1회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과거 가족간의 부양 기피 사유를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실질적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면제받은 부양의무자 : 확인조사 제외(특히, 금융재산 조사대상 제외)

(4) 시·군·구별 연간조사계획의 수립(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3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수급자 확인조사를 위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사항 조사는 연간조사 계획에 포함
 - 다만, 조사내용 및 조사시기는 ‘보건복지부 통보내용 및 시기’로 표시
- 시·도는 시·군·구의 연간조사계획 수립내용을 매년 2월말까지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연간조사계획의 내용
 - 수급자 등 조사대상자별·조사내용별 조사시기 및 주기
 - 수급자별 조사주기 및 조사내용(보장시설수급자 포함)
 - 수급자별 확인조사 일정(특정시기에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대상자를 분산하여 계획수립)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조사위촉, 기타 조사기간 동안의 행정력 동원, 업무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
 - 조사원의 지명과 교육
 - 관할구역내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 등

(5) 조사결과 처리

- 수급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 수행
-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발견 시,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미신고 시설 확인시 수급자에게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 시·도는 시·군·구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에 보고
 - 전년 하반기(7~12월) 조사결과 : 2월 말
 - 상반기(1~6월) 조사결과 : 8월 말

다. 차상위계층 조사(임의사항)

(1) 조사의 목적

-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수행(법 제24조)
 - ※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시행령 제3조의2)

(2) 조사 대상(시행규칙 제38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중 수급자가 아닌자
 - ※ 최근 1년 이내의 급여신청자 중 보장부적합 결정자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¹⁸⁾
 - 관할지역내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18)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계획」,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 포함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

(3) 조사시기 및 보고(시행규칙 제39조)

- 매년 9월1일 기준으로 조사 실시
 - 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에 대한 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별도계획에 의하여 조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를 매년 10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서식 21호)

(4) 조사절차

- 조사대상자 명부작성 → 조사안내장 통보 및 관계서류 제출요구 →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

(5) 기타사항

- 조사 실시 전에 급여신청서를 받는 것으로 조사에 대한 동의절차를 갈음함
-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변동 등으로 새로이 수급자 선정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 이 경우 해당년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한 급여개시일은 1월 1일

3 자료 제출 요구(시행규칙 제35조)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 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급여 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나 관계기관으로 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 >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 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재소 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
소득확인	- 고용·임금확인서 - 월급명세서	- 근로소득 파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 취업·퇴직사실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휴·폐업 확인서	- 사업자 소득 파악 ※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 어업소득 파악
	-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 임업소득 파악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소득 파악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 무료임대확인서	- 사적이전소득 파악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처리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소득파악곤란자에 대한 소득파악
재산확인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 임차보증금 파악
부채	-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개인간 사채 확인
	-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근로능력 판정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 근로능력 판정
급여계좌 확인	- 통장사본	- 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

4 조사수행 주체

(1) 조사주체

- 보장기관의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공무원이 조사를 수행
 -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시·군·구의 시설담당공무원이 수행
- 전담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 확인조사 및 차상위계층 조사시에는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나 읍·면·동, 시·군·구 공무원, 통·반·이장 등의 지원을 적극 활용

(2) 조사의 의뢰

-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급여신청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공부상 자료로 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자영업자 등 상당한 소득이 예상됨에도 전산자료로는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 소득·재산 전산조회나 급여신청자 면담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부양의무자 등의 거주지에서 반드시 실제 조사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하여 조사의뢰함
 - 조사를 의뢰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¹⁹⁾
 - ※ 조사의뢰 및 회신은 시·군·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수행

(3) 조사의 위촉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 차상위계층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19)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하므로 조사를 의뢰받은 주민등록말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자에 대한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를 할 수 있음(법 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도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해당함(시행규칙 제35조 참조)
 - 급여 정지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지기간을 정하여야 함
-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급여실시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
 -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보

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가.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추가 방문 최소화
-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 (보장결정 시에도 누락서비스를 조회하여 안내)

나. 기타 행정사항

-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3조)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1조)
-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조사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조사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민간 사회복지사, 보건소 등으로부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조사를 즉시 실시

<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공적자료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정보시스템 통보시기 (주기)*	
소득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상시근로소득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6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분기	고용장려금: 전월 근로소득	매분기 초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년	고용부담금: 전월 근로소득	연 1회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10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1회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주가 분기별로 1년동안 신고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검증한 자료(확인조사시 참고자료)	10월	전년도 일용근로소득 자료	연 1회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주가 분기별 신고한 자료	분기	별도 표 참조 신규 신청시: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 3개월 자료 (확인조사시 :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 6개월 자료)	매분기 초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매월	전월소득	매월
		공공일자리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시스템연계 추진중)	분기	최근 3개월 평균소득	매분기 초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공적자료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정보시스템 통보시기 (주기)*	
사업 소득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농림수산물부 농지원부	수시	농지 등록(변동)현황	매분기 초	
		농림수산물부 농업직불금	○고정 : 10월 ○변동 : 3월	직불금(고정+변동)/12	연 1회	
	어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 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임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기타사업소득 (자영업자)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u>반기</u>	
	재산 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이자소득/12	연 1회
		연금(개인)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u>연1회</u>	연금의 월 수령액	연 2회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4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재산	일반 재산	토지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년 1회 (취득세 : 매월)	
			국토부 지적대장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토지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u>반기</u>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년 1회 (취득세 : 매월)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공적자료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정보시스템 통보시기 (주기)*
		국토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건축물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u>반기</u>
	선박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u>년 1회</u> (<u>취득세 : 매월</u>)
		국토부 선박원부	수시	최근3개월내 취득한 선박(어선제외) 정보 ※ 가액정보 없음	<u>반기</u>
		농림수산물식품부 어선정보	수시	최근3개월내 취득한 어선 정보 ※ 가액정보 없음	매분기 초
	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10월 ○취득세: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매월
	어업권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입목재산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분양권	금융결제원 분양권당첨자 (시스템연계 추진중)	수시	최근3개월내 취득한 분양권 당첨 내역 ※ 가액정보 없음	매분기 초
	조합입주권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최근3개월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내역 ※ 가액정보 없음	매분기 초
	금융재산	금융정보 조회결과	<u>수시</u>	금융재산별 가액 ※ 요구불 예금: 3개월 평균 잔액	<u>수시</u>
	자동차	국토부 차적정보	수시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분기별) 포함	<u>수시</u> (<u>차량가액은 매분기초</u>)

* 각 항목별 통보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통보

Ⅱ 근로능력 판정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다음의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②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 ③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임신 사실 확인서(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 ④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공익근무요원, 상근 예비역 등
 - 복무확인서를 첨부하고, 복무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이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
 - ※ 단,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은 근로능력 있음 처리
- ⑤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4급이내 장애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107개)에 해당할 경우(부록참조)
 -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에 따른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제출·확인(유효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 신규 급여 신청자(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건강보험공단 등록확인서’ 제출·확인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상병코드 B20~B24)의 경우 최초 급여 신청시에만 ‘일반진단서’로 확인
 - 기타 보장기관에서 직접 확인(의료급여 사업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이 가능한 경우 등록신청서 제출 생략 가능
- ※ 2011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제3편 II 6.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참고

나.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²⁰⁾

- ① 가)항의 ① ~ ⑤에 해당하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 ②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를 포함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
 -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 간병대상자: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 보호대상자: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20)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적용되는 특례

- ①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②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가구 인정특례, ③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완화, ④ 북한이탈주민, ⑤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⑥ 보장비용 징수제외대상

-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 월평균 20일,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판정하는 부적정 사례

- 1) 투약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의 질병을 적용한 경우
- 2) 경증 장애 및 경미한 단순질환자의 간병을 인정하여 적용한 경우
- 3) 아동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보호자를 아동 양육으로 적용한 경우
- 4) 세대(가구)별 간병·양육으로 2인을 적용한 경우

3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34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참조)

가. 판정 방법

- 최근 1개월이내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 제출하지 않는 경우 판정 불가 → 근로능력 있음으로 처리)
- 정신질환·알콜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협조(진료기록 등 확인)를 받거나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원활한 의학적 평가 및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정 ‘협력 병·의원’ 활용 가능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한 수급자 판정 방법

[의학적평가 반영] → [활동능력평가(간이평가 → 본평가)]

- 의학적 평가
 - 의사가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활동능력 평가용 진단서에 표기된 ‘단계’ 확인
 -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2종류의 질환유형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가장 높은 단계보다 1단계 높은 단계로 확인

- 활동능력평가
 - 수급자를 선정·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수급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 (1차) 의학적 평가 결과 1~4단계 중 4단계에 해당
- (2차) 활동능력 평가의 간이평가 결과 3점 이하
- (3차)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평가 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의학적 평가 1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25점 이하
 - 의학적 평가 2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30점 이하
 - 의학적 평가 3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35점 이하

[요약]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기준

의학적 평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활동능력평가	전체 평가	40점 35점 30점 25점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 활동능력평가 불요
	간이 평가	3점 0점	간이평가 3개 항목(12점) 합계 3점 이하		근로능력 없음

다. 판정 유효기간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된 경우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임
 -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재진단 시기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에 따라 판정결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수급자 판정 가능. (※ 수급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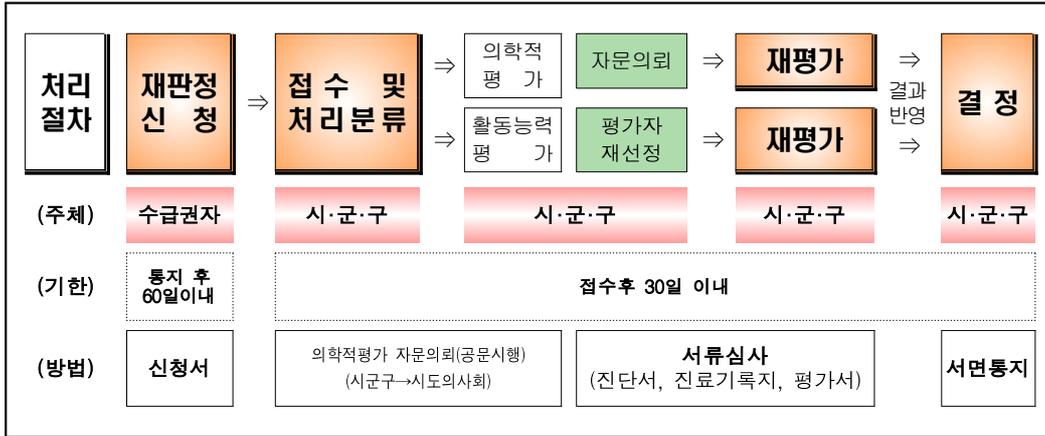
라.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한 관리

- 판정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 판정 대상임을 통보하고, 해당 대상자는 유효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해당 구비서류 제출하도록 해야 함
- 근로능력 (재)판정은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총괄하되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 읍면동에서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접수 및 ‘예비 활동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통합조사관리팀에 제공
 -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의학적평가 결과와 예비 활동능력 평가를 토대로 근로능력 판정 실시

마. 근로능력판정에 따른 권리구제

- 대상
 -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불복하여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판정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자
- 절차
 - 신청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제출
 - 재판정 신청 관할 시·군·구에서 의학적 재평가를 위해 자문의사 선정
 - 시·군·구는 선정된 자문의사에게 기존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재평가용 진단서를 자문의사에게 송부
 - 자문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대상질환별 단계 등을 표시하여 시·군·구에 송부
 - 시·군·구는 원 평가자가 아닌 통합조사관리팀원이 활동능력 재평가를 한 후 의학적 평가와 합산하여 재판정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
-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 근로능력판정 권리구제 업무처리 흐름도



- 재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수급자가 불복할 경우 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신청

4 중앙근로능력심사위원회

-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로능력 판정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근로능력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판정의 공정성 제고
- 심사대상
 - 1)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 의뢰 건
 - 의학적 평가 기준이 신청자의 상태와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 대상자의 질환이 평가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
 - 2)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된 건

- 심사의뢰 방법
 - 심사의뢰 기관은 기존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활동능력평가서, 상담내역 및 정밀심사요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 심사결과 반영
 -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그 내용을 토대로 판정하고, 해당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에게 통지

Ⅲ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차감된 소득”)을 말함 (2010.1.1 개정 시행령 시행)

2 소득평가액산정(법 제2조제8호, 시행규칙 제2조)

- | |
|-------|
| 소득평가액 |
|-------|

 =

실제소득

 - | |
|-----------------------|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
 - | |
|------------------------|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 -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²¹⁾.

가. 소득 산정기준

-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단,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 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소득액을 인정

21) 소득평가액이 (-)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 일용근로자소득, 기타 사업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²²⁾
-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 소득’ 반영

나. 실제소득(시행령 제3조)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가) 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

(나)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라) 기타소득

① 사적이전소득

- 단,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은 제외(무료거주에 따른 임차료 산정의 경우에도 동일)

② 부양비

③ 공적이전소득

- 단,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및 참전명예수당²³⁾은 제외

22)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기존의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계속 유지함

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제외

(마) 추정소득²⁴(신고소득 포함)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가)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재산으로 산정)

(나)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²⁵)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부양의무가 없는 타인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비용(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30만원 이내의 교육부대비용). 단, 교육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 : 교육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한 양육수당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의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다)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수급권자의 소득산정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다만,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

-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금액²⁶)은 최저생계비를 감안한 월 120만원임

24)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음

25)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지급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26) 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참조

다.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단, 당월분이 아닌 전월분 기초노령연금액을 반영)

구 분		79세이하 (‘07.12월 기준)	80세이상 (‘07.12월 기준)	비고
경로연금 수령액		45천원	50천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2011년	15천원	20천원	
	2012년	5천원	10천원	△10천원

-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산정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연차적으로 감소될 계획임
- '08.1.1 이후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되었다가 재책정된 경우 포함)에는 미적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한 장애수당 및 제50조에 의한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의한 기초급여액 및 같은법 제7조에 의한 부가급여액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자립촉진수당 및 아동양육비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단독가구 최고 급여액기준 ex)‘10년 15만원)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²⁷⁾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27)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함에 유의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²⁸⁾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²⁹⁾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익월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³⁰⁾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라.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자활소득공제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자활소득 공제 금액의 지급은 자활장려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³¹⁾ 하되(자활사업안내 참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에 대한 공제액은 별도 지급없이 현금급여로 지급(금액은 자활장려금과 동일하게 산출)

< 근로소득 공제율 >

공 제 대 상 소 득	공 제 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50%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자활근로(근로유지형 제외)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10%

28) 중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 공제는 교육급여 특례에 한하여 실질적 효과가 있는 바, 교육급여 특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의 실익이 없음에 유의

29) 국민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3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기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

31) '03년부터 자활장려금 명목으로 생계비 지급일에 따로 지급함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자활근로(근로유지형 제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자활(공공)근로(근로유지형 제외)를 의미
- ‘자활공동체’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경우를 의미
-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만 인정(즉,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의미)
 - ※ 다만, 휴학생의 경우 1년간 자활소득공제 적용
 - ※ 평생교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자활소득 공제 적용('06.7.1 적용)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을 말함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 일차적으로 관련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전산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 신청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
- 유형별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방법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되, 그와 다른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예 의한 소득파악이 우선함

가. 근로소득

(1) 정 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서목)

(2) 유형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3) 조사방법**(가) 상시근로자 소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②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③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 예)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시 수정결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만 확인된 자료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예)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관광안내원 등

(나) 일용 근로자 소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³²⁾)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제출시 제한적으로 인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 ※ 유사 업종의 평균임금 가이드 해당 노임 참조

(다) 자활근로소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³³⁾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취업성공패키지(노동부) 참여로 얻는 수당 중 다음금액
 -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교통비, 식비)
 - 취업성공수당(1인당 최대 100만원)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2009~2011)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1인당 60만원/연)

32)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임

33) 열거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라)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³⁴⁾의 임금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조회되어 반영
 -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가) 정의

- 경종업(耕種業)³⁵⁾,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³⁶⁾,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³⁷⁾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농산물 표준소득정보에 의한 작물별 단가」가 조회되는 경우,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농업소득 = 경작면적 × 작물별 단가

- * 경작면적 :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 재배작물 확인 : 농지원부 또는 신고
-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 필요경비) : 농산물 표준소득정보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3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 1호(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

35)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36)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생산·판매하는 업

37) 종축(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판매하는 업

(2) 임업소득

(가) 정의

- 영림업(營林業)·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임목재산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수급(권)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3) 어업소득

(가) 정의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어업권 및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수급(권)자에게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4) 기타 사업소득

- (가) 정의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 소득 반영
 -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 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 예) 행사,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다. 재산소득**(1) 임대소득****(가) 정의**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2) 이자소득**(가) 정의**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이자소득만 반영

(3) 연금소득**(가) 정의**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라. 기타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정기적이라 함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 친지, 이웃 등의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의 정기적인 지원금은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소득으로 산정
 - ※ 후원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후원금을 합산한 후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소득으로 산정
 - ☞ 예시) 소년소녀가정(2인가구)가 후원금을 매달 20만원씩 받고 있는 경우 : 2인 가구 최저생계비 942,197의 20%인 188,439원을 초과하는 11,561원만 소득으로 산정
-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산정(외국인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중 1인가구 최저 생계비의 120% 초과금액을 당해가구에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

(나)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자의 집(전세 포함)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수급권자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해당지역 유사주택의 월 임차료가 파악 가능한 경우 : 파악된 유사주택의 월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동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최저생계비 중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소득으로 산정

< 2012년도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 및 임차료 등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주거비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368,392
임차료	66,010	112,395	145,399	178,404	211,409	244,414	277,418
최저주거비의 20%	17,531	29,850	38,616	47,382	56,147	64,913	73,678

※ 최저주거비는 최저생계비의 15.840%, 임차료는 최저생계비의 11.929%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산정한 임차료 금액 중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해당지역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최저주거비의 20%를 소득으로 산정

< 2012년도 임차료 산정 기준표 >

구 분	산정 방법	
1) 부양의무자 집에 거주하고, 월 임차료 파악 가능한 경우	월 임차료 < 최저주거비 • 월 임차료 기준으로 적용 예) 1인 가구이고 월 임차료가 5만원이면 5만원을 무료 임차소득으로 적용	월 임차료 >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적용 예) 1인 가구이고 월 임차료가 20만원 이면 87,656원을 무료 임차소득으로 적용
2) 부양의무자 집에 거주하고, 월 임차료 파악 곤란한 경우	•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적용	
3) 타인의 집에 거주하고, 월 임차료 파악 가능한 경우	월임차료-(최저생계비×20%) < 최저주거비 • 산정된 금액을 적용 예) 1인 가구이고 월 임차료가 15만원이면 39,329원을	월임차료-(최저생계비×20%) >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적용 예) 1인 가구이고 월 임차료가 20만원이면 87,656원을

구 분	산정 방법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 $150,000\text{원} - (553,354\text{원} \times 0.2) = 39,329\text{원}$	무료 임차소득으로 산정 $200,000\text{원} - (553,354 \times 0.2) = 89,329\text{원}$
4) 타인의 집에 거주하고, 월 임차료 파악 곤란한 경우	• 최저주거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적용	

-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보장시설이 아닌 개인신고시설 포함) 거주자,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전세주택 지원사업’에 의한 전세자금대출 가정의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임차료 산정방법에 따라 처리
-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임 (P.157참조)

(2) 부양비

- 개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시행령 제4조1항4호다목)
- 부양비 산정방식 :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31쪽, 122쪽)
 - 부양비 산정시 유의사항 :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경우는 부양비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 ☞ 예시) 부양비 산정방식에 의해 10만원을 소득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6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 부양비 4만원, 사적이전소득 6만원

(3) 공적이전소득

- 개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① 복지급여 연계 자료

-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 아동청소년사업안내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② 타 기관 연계 자료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자녀 수당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③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 (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지자체 지원)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득포함여부	가구특성지출비용포함여부	
복지급여연계	노인	기초노령연금		0	△	
	장애인	장애연금		0	0	
		장애수당		0	0	
		장애아동수당		0	0	
	한부모	아동양육비(한부모)		0	0	
		자립촉진수당		0	0	
	아동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0	0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0	0	
	입양	입양아동양육수당(양육보조금)		0	0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양육보조금)		0	0	
타기관연계	국민연금급여			0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0	×	
	군인퇴직연금급여			0	×	
	사학퇴직연금급여			0	×	
	별정우체국연금			0	×	
	실업급여			0	×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0	×
		장해급여			0	×
		유족급여			0	×
		상병보상금			0	×
	보훈급여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0	△
			국가유공자 급여	보상금	0	×
				간호수당	0	×
				무공영예수당	0	×
				생활조정수당	×	×
		기타	0	×		
		독립유공자 급여	보상금	0	×	
생활조정수당			×	×		
참전명예수당			×	×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고정, 변동직불금			0	△ ³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득포함여부	가구특성지출비용포함여부
미연계	(노동부)직업훈련수당			0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	재활보조금		0	0
		피부양보조금		0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0	0
		산소호흡기 대여료		0	0
		간병비		0	0
	지자체 지원	이·통장 직책수당		0	×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0	0
		교통수당		0	0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0	×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0	0
기타	장애인올림픽연금		0	0	
상기 외 가구특성 지출비용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보험료(50%)			×	0
	만성질환의 6개월이상 의료비			×	0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0

(다)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급여는 자동 반영되며, 조사 과정 중 추가 확인된 급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소득 산정

마. 추정소득

(1)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 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 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38) p.52의 농어민가구 특례 참조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과약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추정소득 부과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주 3일 이상 근로활동에 종사하면서 소득이 60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주거 및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추정소득을 부과하되 조건 불이행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사실확인서 징구 후 추정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음.

※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먼저 적용하여 항목별로 소득을 추가 파악 산정하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추정소득 부과

(2) 추정소득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로 적용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간병·보호하여 조건부과 유예자 또는 조건부과 제외자로 인정한 자

※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 제외자, 조건부과 유예자는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이나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조사(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등 활용)하여 소득 산정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

-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 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 시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소득 산정

-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3) 추정소득 부과기준

-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 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
-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①유사·동종업종의 평균임금, ②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12년 일급 36,640원³⁹⁾)의 순서대로 적용
- 유형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추정소득 부과
 - 최소 월 15일 이상 추정소득 적용자
 - ①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 확인이 곤란한 자
 - ② 조건부 수급자 중 조건 불이행자⁴⁰⁾
 - 월 15일 미만 추정임금 적용자
 - ① 조건부수급자로 조건이행을 하고 있으나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해당 소득 추가 신고시 해당 소득 반영)

(4) 추정소득 부과시 유의사항

-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 금액과 추정소득 부과 기준금액은 별개의 사항임
- 추정소득 부과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 하여 부당한 소득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
- 거주지 이전시 현 거주지의 추정소득 적용일수가 전 거주지에서 보다 더 많게 부과될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적용
 - 추정소득 부과로 인하여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조건이행 유도

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 적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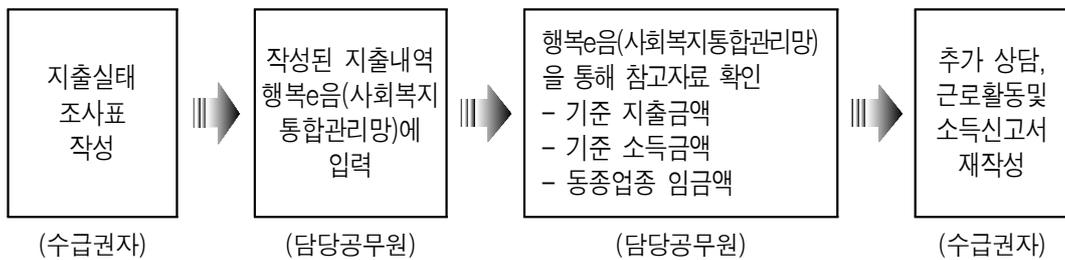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소득 :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관광안내원 등
 - 일용직근로자 소득 : 파출부·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39) '12년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 기준(효력:'12.1.1~12.31)

40) 조건불이행자가 주당 평균 3일이상 근로사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하고 생계급여 재개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소득이 없는 경우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 적용 절차



- 수급권자에게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지출항목들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
 - ※ 작성서식 : 지출실태조사표(개별서식 4호) 참고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기준 지출금액, 기준 소득금액, 동종업종 임금액 등 참고자료 확인
 - * 기준 지출금액 :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소득계층, 거주 지역, 가구원수)을 가진 일반적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된 금액으로, 기준 지출금액보다 해당 가구 지출(합계)액이 적은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재작성토록 함
 - * 기준 소득금액 : 가구원의 인적 구성, 경제적 특성, 지출실태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의 소득 수준 금액
 - * 동종업종 임금금액 : 수급권자와 동종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의 평균임금액으로 조사된 소득 금액
- 수급권자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재작성토록 함
- 재 신고된 소득을 그 출처에 따라 근로소득, 농·어·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으로 부과
-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신고소득이 기준 소득금액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추정소득 부과를 검토

□ 지출실태조사표 작성요령

-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인적 특성과 월 단위 지출항목별 평균지출액(전월 기준)을 기재
- 지출실태조사표 뒷면에 기재된 지출항목 및 해당품목의 지출액이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안내

IV 재산조사

1 재산의 종류

가.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⁴¹⁾, 건축물⁴²⁾ 및 주택(제104조 제1호, 2호, 3호)
 -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공동 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 제4호 및 제5호)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 제11호)
-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9조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어업권)

41) 논·밭·임야 등

42) 건물, 시설물 등

나.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다.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2 재산의 조사범위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다만, 군복무·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3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토지는 지역별 적용을 사용>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 임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 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공시지가 (국토해양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면적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건 축 물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해양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해양부)	표준주택가격 (국토해양부)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원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업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가) 정의 :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3호)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참고> 유형별 시설종류

-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 도크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 급·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 부수시설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나) 조사방법

○ 토지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토지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제시되며, 적용율은 소득 인정액 산정시 자동 적용

○ 건축물

- 건물, 시설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건축물, 주택은 적용을 없이 시가표준액 바로 적용

<참고> 토지가격 적용율

$$\text{토지가격} = \text{시가표준액} \div \text{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예시)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사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액
 ⇨ 1,000만원/0.9 = 1,111만원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지 역	토지가격 적용율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 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 지역) / 0.8(울주군)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군,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처인구 외 지역) / 0.6(용인시의 기흥구, 수지구)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충주시 洞 지역, 제천시 洞 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충주시 邑·面 지역, 제천시 邑·面 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지 역	토지가격 적용율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面·面지역, 진주시 面·面지역, 김해시 面·面지역, 사천시 面·面지역, 거제시 面·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 토지가격 적용율(실거래가격 대비 시가표준액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자료임

(2) 임차보증금

(가) 정의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나)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디딤씨앗통장에 의한 저축액을 수령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24세까지 산정제외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율(0.95)를 곱하여 산출

$$\text{주택 임차보증금} = \text{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times \text{적용율}(0.95)$$

- * 보정계수 설정취지 : 주택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율을 곱하여 5%를 공제함
-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시, 적용율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반영

(3) 선박·항공기

(가)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 제4호 및 제5호)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⁴³⁾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text{선박·항공기 가격} = \text{시가표준액} \times \text{보정계수}(3.5)$$

※ 보정계수 :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4) 동산

(가) 정의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나) 조사방법

- 가축·종묘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43) 보정계수 :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5) 입목재산

(가)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 제11호)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입목의 종류)

- 산림목(총 5종)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 유실수(총 18종)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굴

(나) 조사방법

-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6) 회원권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8) 분양권

(가)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9) 어업권

(가) 정의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등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 표준액을 반영

나. 금융재산**(1) 정의**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2)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3) 금융정보 등 조회

- 법률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 제23조의2
- 조사대상자 : 가구원, 그 부양의무자
 - ※ 신청조사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징구
-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 보험증권 : 해약시 환급금 및 최근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 소득으로 산정
-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시·군·구(읍·면·동)에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 조회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 : 신청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 확인조사 : 연 2회 조회 실시

○ 유의사항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시 법에 의해 처벌 됨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금융정보 제공 누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용·보험정보 제공 누설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조회결과 적용

○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 (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 (도명계좌)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5)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가)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⁴⁴⁾
- ※ 부양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나)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총 900만원 공제 (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이상 가입 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 한해 적용
- ※ 금융재산 조사시 3년 이상 가입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됨
- 수급자 선정시부터 공제를 적용하며,
 - 개별상품에 관계없이 다음 금융재산 조사결과에 의해, 연간 한도 내에서 총액변동분을 반영

(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유족구조금 및 장애구조금

- 수령금액중 사용내역 확인 후 잔여금액에 한하여 공제

(라) 희망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6)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44) 생활준비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소득 산정시에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에 대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우선 반영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으로 변경. 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영

용도	증빙서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다. 자동차

(1)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차량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2) 조사방법

- 국토해양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⁴⁵⁾정보를 반영

(3) 조회결과 적용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행복e음을 통해 확인된 정보와 달리 실제 자동차 소유 및 사용에 제한이 있는 자는 공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한 소명 및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를 통해 재산산정에서 제외 조치,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
 -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 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⁴⁶⁾

45)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액)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장애인 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하여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가구별 차량 보유 한도를 설정
 - 장애인사용자동차 : 장애인 가구당 1대 인정

(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 ①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승용차)
 - 적용대상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 ※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로의 자동차 상용시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 ②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 (가) 장애인사용자동차⁴⁷⁾로써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시 제외
 - (나)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영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과약에 철저)
- ③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 (가)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46) 폐차증은 범칙금자동차세 미납시 발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차 후 말소처리곤란,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로 분류하여 조치, 명의도용대여 등으로 수사 중인 경우 최종적인 확정 결정(판결 등) 이전에는 공적자료를 적용. 다만, 가구 특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호 처리할 수 있음

47) 장애인사용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로서,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인정됨에 유의

(나)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⁴⁸⁾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과약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 소득과약이 어려운 경우 ① 동종업종의 평균임금, ②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일급 36,640원/12년)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의 순서대로 적용

(다)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⁴⁹⁾.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라) 1000cc이하 화물·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마)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바)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사)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48)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의거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까지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차량(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49)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의 년(年)을 기준으로 적용. 예를 들어 등록일이 '99.5.1인 경우 '09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분류, 최초등록일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확인가능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 (아)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⁵⁰⁾으로 전환 예정인 차량.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 신청인과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되(필요시 매매의뢰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 처분 및 생업용 전환예정이 확실한 경우에 한함
 - 2개월 이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으로 미전환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고, 실제 2개월 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 미전환시 해당 가구 특성을 감안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결정
- * 생업용으로 전환예정인 경우, (나)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이어야 함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1) 정의

- 기 산정된 재산을 처분(증여, 금융재산감소 등)한 경우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으로 구분하여 본인재산으로 산정
- *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 본인 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 = (처분한) 재산 가액 - (타재산 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 정보시스템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은 원 재산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일반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함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후 보장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재신청하거나, 기존 수급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기타재산으로 산정하여 처리

50)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차량이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예시) ·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등
· 새벽·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2) 조사방법

-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
 - * 부채는 본인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 본인소비분 확인
 - ①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 *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 ②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 ③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 금액 차감(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 ④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 ⑤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수를 반영한 금액을 차감
 -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의 20% 매월 차감
- 수급자 탈락 후 재신청한 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감액·탈락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는 월 최저생계비의 120% 매월 차감

5 부채

(1) 정의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2) 부채 인정범위

- 부채 인정범위

구분		인정 여부
부 채 출 처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 (공신력이 담보되는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사채	법원에 의해 확인된(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사채만 인정
	임대보증금	○
부채의 지출형태 제한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에 한정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 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등)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대출금
- 개인간 부채(사채) : 판결문(지급명령, 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2010.12.31. 이전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만 인정(2011년 1.1. 이후 신규 신청한 자부터는 인정하지 않음)하며,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인정금액은 2012년부터 매년 1/3씩 감액 조정하여 2014년 전액 불인정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인정 한도>

(단위 : 원)

가구 \ 지역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1 인	28,179,920	31,513,253	44,846,587
2 인	34,396,435	37,729,768	51,063,101
3 인	38,819,712	42,153,045	55,486,379
4 인	43,243,005	46,576,339	59,909,672
5 인	47,666,299	50,999,632	64,332,965
6 인	52,089,592	55,422,925	68,756,259
7 인	56,512,870	59,846,203	73,179,537

※ 사채는 인정한도까지만 부채로 인정 (의료 목적은 전액 인정)

- 공제대상 부채금액의 결정
 -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부채는 전액 공제
- 부채의 용도 및 확인방법
 - 의료부채 : 의료(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사용을 증빙할 서류
 - 학부부채 : 등록금 영수증 등 학비사용을 증빙할 서류
 - 주거부채 : 전·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주거마련을 증빙할 서류
 -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3) 조사방법

- 금융기관 대출금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확인

<참고>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 제공방법
 - 금융정보 등 조회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
- 제공내역
 - 금융기관 대출금 : 담보대출(부동산 등), 신용대출, 약관대출(보험) 등 개인이 받은 '개인대출'만 인정되며, 기업대출은 인정되지 않음
 -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현재 보유상태(금융재산, 또는 기 지출 여부)를 파악
- (처리방식)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⁵¹⁾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에 해당되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
 - ㉡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만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한 잔액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하고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형태를 구분하여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항목에 산정 처리

예1) 5천만원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전액 입금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2,0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으로도 산정(결과적으로 0원)

예2)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을 받아서 1,500만원은 집 구입(5천만원)에 사용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잔액 5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에 산정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나머지 2,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주거부채(집구입)로 산정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부채로 산정

예3) 금융재산 3천만원 보유,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모두 6천만원 가치의 집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 6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3천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
 - 2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은 이미 주택구입에 소비하였으므로 금융재산에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공제도 설정하지 않음. 따라서 부채항목으로 가서 주거부채로 2,000만원을 산정하면 됨

○ 법원에 의해 인정된 사채

-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조정조서에 의해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자납입 증명(2회 이상)을 요구

51) 해당 건물 등은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정하며, 만약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산정함

(4) 부채차감 순서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5)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6) 부채 인정시 유의사항

-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 은행용자 1천만원을 얻어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한 후, 1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6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불인정(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가. 기본재산액

- 개념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 액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나.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 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 소득환산율 산출방식

(1) 일반재산

- 지역별 전세가격 등 재산 수준, 신규 수급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에 최대한 사용하는 경우의 환산율 적용⁵²⁾

(2) 금융재산

-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의 환산율 적용

(3) 승용차

- 승용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 적용

52) 환산율 설정 원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와 최저생활보장 원리의 절충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통상의 이자율(수익율)과 다름(현행 이자율에 기초하여 환산율을 설정하게 되면 역대 이상의 재산보유자도 수급자로 선정 보호되는 문제 발생)
- 즉,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보호되기 전에 자신의 재산, 소득,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보충성의 원리(법 제3조)에 기초하되,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도 반영하여 보유재산 등에 대한 활용 기간을 적정하게 부여

다.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참고사항>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임

(1)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⁵³⁾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⁵⁴⁾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2)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다만, 재산가액⁵⁵⁾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 (가)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 (나)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 (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1)·(2)의 경우에 해당한 수급가구로 소득과 재산 형태·구성에 변화는 전혀 없으나,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특례자로 3년간 계속보호 가능

(4)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재산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수급자로 선정하는

53) 중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는 5~6급 장애인 등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무능력자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54)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 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하여, 만약 부과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없이 보장기관의 결정으로 수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⁵⁶⁾)

(5) 유의사항

○ 차감순서 등

-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가구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할 수 없음. 동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소득환산제를 적용해야 함. 즉,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2)~(3)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해당 재산을 제외처리하고 나머지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
- 재산범위의 특례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의 구성원, 재산상태 등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를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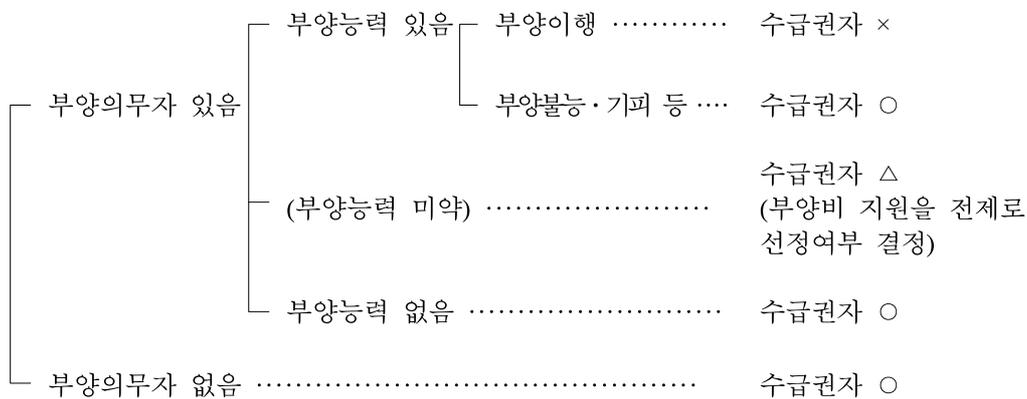
56) 이 사항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수급자로 선정하는 경우 공통 적용

V 부양의무자 조사

1 조사의 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부양여부 및 불능·거부·기피 사유

<부양의무자 조사 단계>



2 조사순서

가. 수급권자 조사 및 부양여부 사실조사

-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조사
→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특례를 비롯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가 불필요함
-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급권자 가정방문 및 통리장·이웃주민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거부 기피 사실 청취·확인(사실조사)

- 특히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이전소득액 및 지급주기(어느 부양의무자로부터 얼마를 지급받고 있는지, 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 등)와 이전소득 등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
→ 부양의무자로부터 최저생계비 이상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다음단계 조사 불필요

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확인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을 확인(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 불필요
→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감안하여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조사

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

-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대한 조사
- 다음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정하되 동 사유의 소멸여부를 수시로 조사

사유	증빙자료
군복무	- 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해외이주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복역	- 재소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행방불명	-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를 우선으로 하고 증빙이 불가능할 때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로 증빙함
사망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정리	- 사망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확인 가능

- 부양불능자로 확인되는 자는 다음단계 조사(부양능력 조사)가 불필요하며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실시

라. 부양능력의 확인(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재산·소득조사 실시)

- 부양의무자가구의 수급자 여부, 직계존속이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 부양 여부, 장애수당 등 수급 여부 등 조사(이 경우는 소득·재산 조사 불필요)
- 차상위계층 및 아들 등 일반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모두 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조회 → 접근가능한 공부를 이용 : 재산·소득 순 조사
 -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시 특히,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의 해당 여부 조사(부양의무자가 자료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감안하여 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등 사실 보완 조사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수급권자가 실제 부양을 받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
 -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통리반장·이웃주민을 통한 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 등을 감안, 부양여부를 조사
- 부양거부·기피 조사방법
 -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본인, 이웃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 ‘사실조사복명서’를 첨부하여 인정하되,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할 것
 -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여부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진술내용 및 타당성 여부
 - 필요시 수급권자 인근주민이나 마을 통·반장,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
 - 기타, 조사자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등
-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리방법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다만,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상담하고, 부양의무자와 유선으로 수급신청 사항을 안내한 후 부양의무자에게 부양기피 사유서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

- ▶ 기본자료 : 부양기피 사유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지출실태조사표, 수급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최근 1년간), 수급자 명의의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통화이력내역서(최근 6개월간)
- ▶ 추가자료 : 가출(실종)신고서,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확인서,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 등 가족관계 단절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부양의 거부·기피, 가족관계 단절 주장내용 등을 확인하여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 징수 제외여부를 지방생활 보장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바.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의해 부양능력 판정(없음, 미약, 있음)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가능)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이전소득을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이 확인되면 부양비 부과없이 선정 가능)

바. 부양거부 기피에 따른 처리 및 보장비용 징수

- 부양 능력 있는 부양의무자(부양능력미약포함)가 부양을 거부 하거나 기피 함으로써 부양을 받지 못해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군·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
 - ※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양비를 제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사적이전소득은 포함
- 수급자 결정 통지시, 보장비용 징수 가능성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에게도 서면 통지
 - ※ 징수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 참조

3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방법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산정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손자녀 포함, 30세 미만인경우, 30세 이상이더라도 근로무능력자 및 대학생)
- * 부양의무자 가구원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산정

○ 조사대상 및 방법

- 부양의무자의 가구원 중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 소득 산정방식 및 조사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다음의 항목을 차감·제외하여 산정
 - ① 사적 이전소득 : 후원금 등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금품, 무료임차료 등
 - ② 공공일자리 소득 : 자활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 ③ 공적이전소득 중 다음 항목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 국가유공자 등 급여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저소득층 복지급여 : 기초노령연금,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입양아동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직업훈련수당(노동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호흡기 대여료 및 간병비
 - 지차체 지원 금액 : 이동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지차체 지원

④ 교육·의료비 등

-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학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부양의무자 가구의 교육비 표준 공제

- 소득하위 40%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교육비 지출수준(통계청)을 고려하여, 자녀가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다음의 교육비 공제액을 표준화하여 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 자녀 1인당 학교급별 교육비 표준 공제액 >

교육비 공제 대상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표준공제금액	102천원	136천원	203천원

- 위 공제액은 표준공제액으로, 소명을 통해 위 금액 이상의 교육비를 매달 지출하고 있는 경우(기 반영된가구 포함)에는 소명과 확인을 통해 공제액 산정

- 부양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예: 형제·자매, 삼촌, 조카, 타인)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3개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차감하지 않음)
- 압류소득
⇒ ①~③번의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며<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소득산정시 자동 미반영>, ④번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하는 경우[부양의무자 이외 가구원(가구원수 산정에 포함되는 가구원)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함]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방안

- 기본재산액
 - ▶ 대도시 : 13,300만원, 중소도시 : 10,850만원, 농어촌 : 10,15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공통으로 적용

- 부채 : 수급권자와 동일 방식 적용
- 기타 사항 :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300만원)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을 부양의무자에게 달리 적용하는 이유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은 재산의 처분(일정기간 균등사용)을 전제로 하는 환산율에 기초하고 있지만,
- 부양의무자에게 '03년부터 적용되는 부양능력 판정을 위한 재산기준 규정(현행 시행령)은 이자율(수익율)에 기초하고 있어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소득환산방식을 부양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곤란

제 4 편 급여의 실시



I. 급여의 개요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종류 등
3. 급여의 결정
4. 소멸시효 관련

II. 급여의 지급

1. 급여지급 절차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4. 계좌관리

III. 급여별 세부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I 급여의 개요

1 급여의 기본원칙

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나.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다. 자립지원의 원칙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
 -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건 부여
 - 조건불이행자에게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라.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이를 위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

마.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바.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사.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직업·연령·교육수준·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2 급여의 종류 등

가.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안내 참조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참조

나. 급여의 보호

- 급여변경의 금지(법 제34조)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압류금지(법 제35조)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

다. 수급자의 의무

-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법 제37조)
 -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경이 있거나, 다음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유무 및 부양여부
- ②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수급권의 양도금지(법 제36조)

-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3 급여의 결정

가. 급여의 결정(법 제26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 후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부채관련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은 반드시 확인
- 차상위계층 조사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새로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급여개시일은 1월 1일임)
- 급여의 결정일 및 결정내용(선정여부, 탈락사유) 등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대장’(서식12호)에 기재함
 -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급여신청 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함(‘급여신청대장’ 출력 가능)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법 제26조제3항, 제4항)

(1) 통지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서면으로 통지할 때 이의 신청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명기하여야 함)

☞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통지해야 하며, 읍·면·동장 명의로 통지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2) 통지기일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⁵⁷⁾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

4 소멸시효 관련

- 급여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국가재정법 제96조)⁵⁸⁾

57) 특별한 사유 : 부양의무자의 조사, 수급권자의 자료제출 지연,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등

58)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II 급여의 지급

1 급여지급 절차

가. 급여 지급절차

(1) 개요



나. 절차별 처리내용

(1) 급여변동 확인

-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소득인정액 변동, 가구원 변동, 전출입내역 등) 확인 및 변동자료 반영
- 조사담당자는 매월 급여 확정 전까지 변동자료 확인 및 반영

(2) 급여자료 생성

- 정기 지급분은 지급확정일 24:00시 기준으로 각 사업별 급여 자료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자동 생성
- 정가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급여자료 생성일자를 조정하며, 조정 시스템 내 알림기능을 통해 자동생성일자를 안내
- 급여자료 생성일 이후 계좌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해당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사업별 담당자가 추가생성 가능

(3) 지급확정

- 급여담당자는 자동생성 처리되어진 급여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별 확정 처리 후 전자결재 요청

(4) 지급의뢰

- 결재된 급여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 부서로 지급 의뢰
 -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과 연계된 급여 및 서비스 목록은 별첨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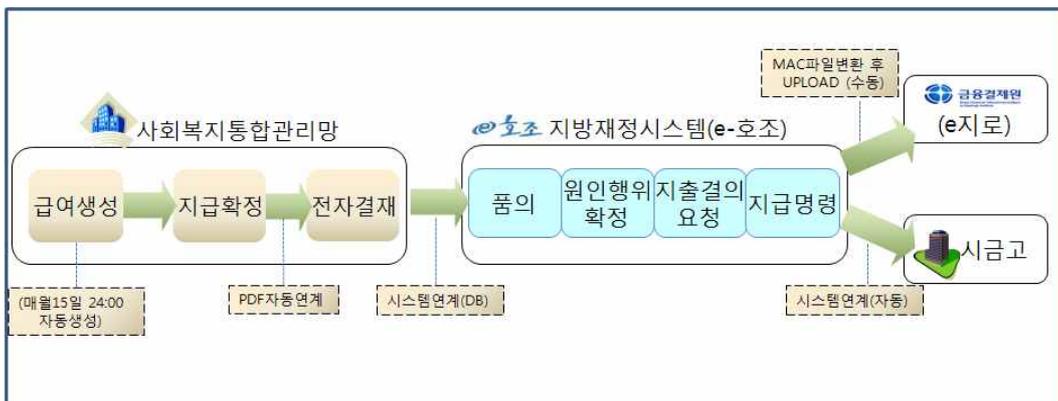
(5)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 전송 및 급여 지급
 -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인증) 후 지급

(6) 추가지급

- 매월 15일 급여자료 생성일 이후 보장결정자는 정기지급분과 동일한 절차로 매월 정기지급일 이후 수시생성 후 추가지급 가능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급여지급 절차



※ 보조금 지급단계별 수정 이력을 기록하여 변동내역 모니터링

복지급여 지급 절차 비교

서울행정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p>급여변동대상 확인 (읍·면·동)</p> <p>↓</p> <p>급여자료 생성 (읍·면·동)</p> <p>↓</p> <p>급여 확정 (시·군·구)</p> <p>↓</p> <p>급여내역 엑셀파일 다운로드 (시·군·구)</p> <p>↓ ← 엑셀파일 수정 가능</p> <p>전자결재(파일첨부) (시·군·구)</p> <p>↓</p> <p>시·군·구 회계부서에 지급요청 (공문 발송) (시·군·구)</p> <p>↓ ← 데이터 미연계로 검증불가</p> <p>시·군·구 회계부서에서 입금 조치 (시·군·구)</p> <p>↓</p> <p>수급자 계좌에 입금 (시·군·구)</p>	<p>급여변동대상 확인 (시·군·구)</p> <p>↓</p> <p>급여자료 생성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p> <p>↓</p> <p>급여 확정 (시·군·구)</p> <p>↓</p> <p>급여내역 PDF파일로 자동변환 (시·군·구)</p> <p>↓ ← ① 전자결재에 자동연계 첨부파일 수정 불가</p> <p>전자결재 (시·군·구)</p> <p>↓</p> <p>시·군·구 회계부서에 지급요청 (시·군·구)</p> <p>↓ ← ② 'e-호조'에 자동연계 급여이체내역 수정불가</p> <p>시·군·구 회계부서에서 입금 조치 (시·군·구)</p> <p>↓ ← ③ 금융결제원, 시·군·구 금고 이체 입금 시 계좌 실명(유효성) 확인</p> <p>수급자 계좌에 입금 (시·군·구)</p>

2 급여의 변경

가. 변경사유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결혼·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나. 변경내용

- 급여의 종류, 급여방법, 급여액 등

다. 변경방법

- 본인의 신청에 의한 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제출
-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에 의한 직권 변경
 - ※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법 제34조)

라. 통지

- 통지내용 :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
- 통지방법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메세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통지 가능

3 급여의 중지

가. 중지 사유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때
 - 수급자의 취업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때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교육급여 대상자 중 휴학·자퇴·퇴학·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거주실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수급자가 급여의 중지를 요청한 때
 - 생업자금을 대역신청당시의 사업 계획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장기관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등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여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경우 등
 - 생계급여의 조건 이행 관련 급여중지는 “조건부생계급여” 참조(153쪽)

나. 중지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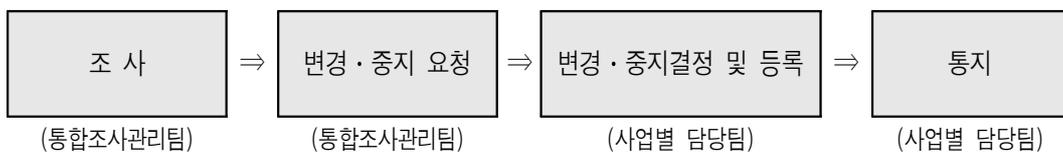
- 중지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중지
 - 중지가 결정된 달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므로 중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것

다. 중지 절차

- 급여의 중지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중지처리
-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30조)

라. 급여중지에 따른 급여지급

급여 변경·중지 절차



4 계좌관리

가. 급여계좌 원칙

- 모든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수급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급여계좌 예외(시행령 제6조 관련)

- 수급자 명의로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 계좌 개설이 곤란한 아래 수급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지급함
 - ① 수급자로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한정자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
 - ② 수급자로서 급여를 계좌로 입금할 경우 압류를 당하는 채무불이행자(종전의 신용불량자)
 -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①②③의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로 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시행령 제6조)
 - ④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법 제9조제3항)
 - 교육급여(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장제급여(법 제14조제2항)
- ①②③의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기초생활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41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지급대상자(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대리수령 신청 해당사유 확인방법

- 법원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 담당에게 확인 가능)
 -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를 제출받아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받아 확인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입원통지서 및 소견서를 제출받아 확인

라. 수급자 명의 확인방법

- 급여이체 시 수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 ① 주거태은행을 이용한 계좌 적정성 여부 확인
 - 시·군·구와 주거태은행간의 관련 시스템 자동연계로 대상자 금융정보(성명, 계좌번호)와 금융기관 보유 금융정보(성명, 계좌번호)를 비교 검증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 ② 금융결제원으로의 대량지급을 통한 적정성 확인
 - 지급결정이 끝난 급여지급자료에 대해 시·군·구 회계과에서 ‘e-지로시스템’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이체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시·군·구로부터 입금의뢰 받은 수급자의 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해당은행 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입금
 - 일치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에 통보, 금융결제원은 다시 ‘e-지로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군·구로 통보하여 말일 추가지급대상으로 처리

마. 급여계좌 수 : 1인 1계좌

(1) 배 경

- 그동안 일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회복지 보조금을 수급할 때 2개 이상의 급여 통장(계좌)을 사용함에 따라 급여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 발생
- 이에 따라, 1인의 수급자가 2개 이상의 급여 통장(계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의 계좌로 단일화

(2) 급여계좌 등록

- 2개 이상의 사회복지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도 급여계좌는 1인 1계좌만 등록 가능
- ※ 기존 수급자 중 1인 다수계좌인 경우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조회 가능

바. 압류방지 전용통장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됨
-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만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계좌관리/ 압류방지 계좌 등록관리에 등록
 -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 발생하므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록에 주의요망

III 급여별 세부내용

1 생계급여

가.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일반 생계급여)

(1) 급여대상자

(가)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의료급여특례자, 교육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 이행급여특례자(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 노숙인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195쪽 참조)

(2) 급여의 내용(법 제8조)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3)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 기준⁵⁹⁾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text{가구별 생계급여액} + \text{주거급여액} = \text{현금급여기준액} - \text{가구의 소득인정액}$
$(80.652\%) \quad (19.348\%) \quad (100\%)$

59)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 수신료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수준을 의미. 개별가구는 이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됨

- 생계·주거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
 - 1원 단위로 계산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반올림이 아님)

<2012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타 지원액(B)	100,305	170,789	220,941	271,093	321,245	371,398	421,549
현금급여기준 (C=A-B)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031
주거급여액(D)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368,392
생계급여액 (E=C-D)	365,393	622,156	804,853	987,549	1,170,246	1,352,943	1,535,639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 2,602,257원)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26,525원씩 증가(8인 가구 : 2,130,556원)

☞ 생계·주거급여액 산출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 =
 $453,049 - 150,000 = 303,049$ (생계급여: 244,415, 주거급여: 58,634)

(4) 급여지급 방식(법 제9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가) 금전지급의 원칙

-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만, 세대주의 알콜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급여는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 다만,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⁶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60)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에 대한 압류 등으로 통장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면 수급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세대주가 알콜중독 등으로 사실상 의사무능력 상태라서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나) 급여의 장소(법 제10조)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 시설이나 타인의 가구에 위탁하여 급여 가능
 - 수급자의 주거가 없는 경우
 -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다) 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

(5) 급여지급 기준

(가) 지급단위 : 가구를 단위로 산정 지급

(나) 급여개시일(법 27조)

-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
 - 즉,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다만,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의 경우는 해당년도 1월 1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
 - ※ 차상위계층조사 대상자는 조사 동의를 급여신청으로 간주하므로 최저생계비의 변동으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과 관계없이 해당년도 1월 1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함

(다)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

-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라)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기타 급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1인 단독가구의 수급자가 거동이 곤란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급여확정이 된 경우에는 급여 확정된 보장기관에서 급여지급

(마) 보장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의 50%를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일반생계급여의 50%를 지급

☞ 수급자 4인 가구 중에서 가구원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의 산정 예시

- 보장시설에 입소한 가구원은 시설소재지로 전출처리하여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하여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격 적합 여부를 재확인한 후 3인 가구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를 실시

-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일반생계급여액 산출방법

- ①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시설에 입소한 자는) 일반생계급여의 50%를 지급하므로 ⇒ 3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구거주지에서 지급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액 - 3인 가구 생계급여액) × 50%은 신거주지에서 지급
- ②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을 전액 지급

- 퇴소일이 속하는 달의 일반생계급여액 산출방법 :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 신거주에서 지급. 다만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라 보장시설 퇴소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퇴소일부터 일반수급자로 선정

시설수급자가 퇴소한 경우 일반생계급여는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지급
되므로 시설장 및 시설담당자는 수급자에게 퇴소한 날 바로 신거주지에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바)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지급기준

- 제외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사) 급여중지자에 대한 지급기준

-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
 -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생계비 지급액 산정은 중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출
 - 단, 부정수급이 명백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로써 보장중지될 예정임이 보장중지월 이전에 수급자에게 충분히 고지된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시행규칙 제6조④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급여의 중지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며,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법 제30조 및 139쪽 참조)할 것. 이의신청 및 민원 발생시 중요한 근거가 되며 소급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

(아) 가구원 출생시 지급기준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가구원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출생일 기준으로 가구원 추가하여 급여지급
- 출생 후 1개월 이후에 가구원 변경신청을 한 경우 가구원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추가
- ※ 1개월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임

(자) 수급자 사망시의 지급기준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지급(사망한 자의 가구에 속하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로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결정(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급여생성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급여생성일)전에 이미 사망신고 등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미지급)
- 생계비는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사망신고 일자가 아님)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지급된 생계비는 반환토록 하여야 함
 - ※ 생계비를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생계비와 장제비의 상계처리 가능
 - ☞ 3인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달의 생계비는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2인 가구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지급

(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지급기준

- 원칙적으로 기초생활급여 전액을 지급
- 다만,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입원일수에 대하여 장기입원함으로써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는 금액⁶¹⁾을 공제대상월 급여에서 공제하되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보전한 후 급여 지급
 - 공제대상월 이전 3개월간 30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공제대상월의 입원일을 모두 공제
 - 공제대상월 이전 3개월간 30일 이상 입원하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월 입원일을 포함하여 30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을 공제대상으로 처리
 - ※ 단, 낮병동에 입원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
-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시점과 생계급여액을 공제해야 할 시점간에 시차가 발생한 경우 과거 초과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다만, 생계급여액이 0원으로 미공제된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 처리하지 않음에 유의
- 생계·주거급여액 산출 방식
 - 생계·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 공제액* + 식대중 본인 일부부담액**
 - * 공제액 : 가구규모 및 입원가구원수와 입원일수에 따라 아래의 금액 적용
 - **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2종의료급여수급자
 - ⇒ ‘공제대상입원일수×2,040원’(공제대상입원일수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보된 장기입원자 내역을 통해 확인)

61)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생계비중 37.7%)

-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2종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
 ⇒ '식대중 본인부담액'(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보된 금액 적용)

<2012년 장기입원 공제표>

입원자수	가 구 규 모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1명	208,802	177,764	153,310	141,082	133,746	128,855	125,362
2명		355,528	306,619	282,165	267,492	257,711	250,724
3명			459,929	423,247	401,238	386,566	376,085
4명				564,330	534,984	515,421	501,447
5명					668,731	644,276	626,809
6명						773,132	752,171
7명							877,533

* 공제액 산출방법(4인가구 중 2인이 입원한 경우)

- ① 가구별 입원자의 공제대상 입원일이 모두 같이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공제액표에서 가구규모별 입원자수에 따른 공제액 적용. 즉, 282,165원임
- ② 가구별 입원자의 공제대상 입원일이 모두 같이 10일인 경우(일할계산)
 - 공제액표에서 가구규모별 입원자수에 따른 {공제액(282,165원)/30}×10일} 공제액은 94,055원임
- ③ 가구별 입원자의 공제대상 입원일이 각각 다른 경우(A-5일, B-10일)
(일할계산)
 - 입원환자별로 각각 공제액을 산정하여 합산한 공제액 산출
 - <1> A의 공제액은 '다인(4인)가구중 1인만 입원할 때 공제액(공제액표 참조)/30×5일' 즉, $(141,082/30) \times 5 = 23,514$ 원
 - <2> B의 공제액은 '다인(4인)가구중 1인만 입원할 때 공제액(공제액표 참조)/30×10일' 즉, $(141,082/30) \times 10 = 47,027$ 원
 - <3> A와 B가 속한 가구의 해당월 공제액은 'A의 공제액(23,514원)' + 'B의 공제액(47,027원)' = 70,541원임
 -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동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공제액에서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은 중지 하되 수급자로는 계속 보호

(카)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생계급여

- 수급자 가구원 중 일부가 교도소 등에 수감되었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보장가구에서 제외함으로써 보장중지하고 교정시설 입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급여 지급 중지

-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수급자는 형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보장가구에서 제외함(수감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계·주거급여 지급)

※ 수급자가 구속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재소증명서를 제출받아 입소일자를 기준으로 급여를 중지. 이 경우 과잉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1인 단독가구인 수급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에도 입소일자를 기준으로 보호 중지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며,
 -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6) 정부양곡 할인지원

(가)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 생계·주거급여를 합산하여 공급가격(20kg 1포대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 예산에서 양곡대금을 공제
- 자활특례수급자 및 지급받는 급여액이 양곡 공급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양곡구입방법을 준용하여 수급자가 현금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외에 별도 관리 필요)

(나) 공급가격

- 연산 : 2011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수준(2012년 기준, 20kg 1포대 20,000원)
 - ※ 농림수산물부의 '12년 판매가격(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추후통보
- 추후 공급연산 변경시 공급가격도 변동 가능

(다)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단, 5인 이상의 가구라도 매월 20kg들이 2포대로 제한)
- 1인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분(20kg)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

(라) 공급방식

-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해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일(매월 20)로부터 5일 이내(매월 21~25일)
 - 다만, 도서지역 등 배달에 지연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10일 이내

(마) 양곡대금 지불

- 양곡대금은 양곡공급을 신청한 수급자의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지원 예산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
- 양곡배달전에 시·군·구 농정과(양정담당)에 입금조치
 - ※ 농정과가 없는 일부 시도 : 농수산유통과 또는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예산중 양곡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시·군·구 농정과 계좌(양곡대금관리계좌)에 납입 조치

(바) 수요량 파악

- 읍·면·동에서 매월 15일까지 양곡공급 신청을 접수 후 입력하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17일까지 취합하여 18일까지 농정과에 통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 기타 필요한 사항

(사) 수급자 유의사항 고지

- 공급되는 정부양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통(시중유통, 판매 등)한 수급자는 양곡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아) 세부집행절차

- 양곡공급 신청 접수 : 매월 15일까지
 - 수급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량(20kg 기준 포), 기타 배달에 필요한 사항
 - 신규 신청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

서에 기재토록 함(서식1호 참조)

- 읍·면·동에서는 정부양곡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관리대장 예시>

(0000년)

성명 (세대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	수 요 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신청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 공제액을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제출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을 정확하게 기재
- 신청자의 급여액에서 공제액(양곡대금)과 실제지급액을 구분하여 제출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계·주거급여지급예정액, 공제액(수요량에 따라 차이 발생에 유의), 생계·주거급여지급액을 구분 작성
 -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생계·주거급여지급예정액, 정부양곡대금공제액, 생계·주거급여지급액』을 산출

○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 : 17일까지
-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농정과에 수요량 및 명단 통보 : 18일까지(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 등 통보)
 - ※ 농정과에서 양곡대금 납입고지서를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송부 : 19일까지
-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수급자의 양곡대금 공제(현금 출납) : 19일까지
- 신청자의 양곡대금을 생계비 및 주거비 예산에서 인출하여 농정과 양곡대금 관리계좌에 입금 조치 : 20일까지
 - ※ 입금사실을 즉시 농정과에 통보(유선)

○ 양곡매출지시 및 배달의뢰

- 시·군·구 농정과는 양곡매출지시 및 택배회사에 배달의뢰 : 20일
 - ※ 시·군·구 농정과에서 택배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사회복지담당부서에 통보
 - ※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는 택배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읍·면·동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조치

○ 배달

-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하여 수급 가구에 양곡배달 : 21~25일
 - ※ 원칙적으로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받은 후 5일 이내 배달
 - ※ 다만, 도서지역 등 배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지역은 10일 이내 배달
- 택배회사는 수급자에게 배달하고 수급자의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시·군 농정과에 제출
- 택배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달기한내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군·구 농정과에 즉시 통보
- 읍·면·동에서 수급자가구로부터 배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사회복지담당부서 및 농정과에 통보하고, 농정과는 택배회사에 확인하여 조치

(7)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조건부 생계급여(법 제9조제5항, 제30조제2항)

(가) 급여대상

- 조건부수급자⁶²⁾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월마다 조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나)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법 제30조)

① 생계급여의 중지결정(시행령 제15조제1항)

-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체없이 생계급여 중지여부를 결정
 - ※ 해당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직업안정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함(시행규칙 제7조제1항)

62)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② 생계급여 중지의 통지(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생계급여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건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함(서식 14호)

③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3월간 급여를 중지하고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여 적용
 - 3월이 경과한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 까지 계속 급여를 중지하고 소득파악 철저

④ 생계급여 중지액(시행규칙 제7조제4항)

-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
 - 동일한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이 1인 추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생계급여액을 “본인의 생계급여액”으로 봄
 - 즉, 조건 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 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조건불이행자를 포함한 가구의 주거급여를 지급

예1)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4인 가구의 가구원 중 1명이 조건불이행시, 동 가구의 생계·주거급여액은 541,760원

* 생계급여는 3인 가구 금액으로,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금액으로 산출

$$\text{생계급여}(401,592) = (997,932 - 500,000) \times 80.652\%$$

$$\text{주거급여}(140,168) = (1,224,457 - 500,000) \times 19.348\%$$

예2)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인 3인 가구의 가구원 중 1명이 조건불이행시, 동 가구의 생계·주거급여액은 115,236원

*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금액으로, 주거급여는 3인 가구 금액으로 산출

$$\text{생계급여}(57,592) = (771,408 - 700,000) \times 80.652\%$$

$$\text{주거급여}(57,644) = (997,932 - 700,000) \times 19.348\%$$

예3)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5인 가구의 가구원 중 2명이 조건불이행시, 동 가구의 생계·주거급여액은 485,588원

* 생계급여는 3인 가구 금액으로, 주거급여는 5인 가구 금액으로 산출

$$\text{생계급여}(320,940) = (997,932 - 600,000) \times 80.652\%$$

$$\text{주거급여}(164,648) = (1,450,982 - 600,000) \times 19.348\%$$

예4)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가구원 중 1명이 조건불이행시, 동 가구의 생계·주거급여액은 55,344원

* 생계급여는 0원, 주거급여는 1인 가구 금액으로 산출

$$\text{주거급여}(55,344) = (436,044 - 150,000) \times 19.348\%$$

(다) 생계급여의 재개(시행규칙 제7조제5항, 제6항)

-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는, 그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을 재개함
 - ※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지(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이내)
- 조건부수급자는 읍·면·동에 별도로 통지할 필요없이 해당실시기관에 참여

나. 긴급 생계급여(법 제27조제2항, 시행규칙 제41조)

(1) 급여의 내용

-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 실시

(2) 긴급급여 대상자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3) 급여실시

-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 :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4) 급여시기

-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에 의해 신속히 급여 실시(생계급여 정기지급일과 무관)

(5) 급여액

-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37.7%)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12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원)	208,802	355,528	459,929	563,330	668,731	773,132	877,533

※ 8인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104,401원 추가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급여 실시 후 법 제26조제4항의 기간(신청일로부터 14일,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급여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긴급급여액과 실제 생계급여액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
-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긴급생계급여 대상자가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와 긴급급여액이 실제지급액보다 많은 경우, 지급된 급여액을 이미 소비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환면제

(6) 급여 기간

-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7) 급여 방법

-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다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

(8) 수급자 선정여부 결정 및 관리

-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 :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및 관리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 긴급급여를 실시한 실제 거주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 여부를 결정

다.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시설 생계급여) : 제6편 참조

2 주거급여

가. 주거급여의 일반원칙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로 지급
 - 주거급여는 기존 정액급여에서 가구별 0원 ~ 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여로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80.652%)		(19.348%)		(100%)		

<2012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주거급여 한도액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368,392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4%)

나.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다음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주거급여 한도액)를 제공하지 않음
 -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
 - 시설생계비를 받는 수급자
 -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신규신청시 신청이전부터 입원해있는 경우 그 기간 포함) 1인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이 경우에는 무료임차자에게 부과하는 임차료에 해당하는 사적이전소득은 산정하지 아니함)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운영비 포함)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노숙인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및 에이즈쉼터’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다. 급여내용

(1) 주거 현금급여

(가) 주거 현금급여기준

- “자가가구 등”⁶³⁾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 2012년 주거 현물급여 기준액 >

(단위 : 원/월)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현물 급여	26,000원	45,000원	58,000원	71,000원	84,000원

※ 5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13,000원 추가

- 가구별 주거급여액이 현물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현금급여로만 실시

예) 산출된 주거급여액이 30,000원인 1인 자가가구 : 현물급여 26,000원, 현금급여 4,000원 실시

예) 산출된 주거급여액이 10,000원인 2인 자가가구 : 현금급여 10,000원 실시(현물급여 미실시)

(나) 주거 현금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생계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준용
 - 신규채정시 :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주거급여를 전액 지급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탈락되는 경우 : 급여중지자에 대한 지급기준에 준하여 급여 지급(147쪽) 참조

63) “자가가구 등”의 범위

-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주택소유자로 타인 주택전체를 무료 임차한 자 포함. 다만 주택소유자가 수선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가가구 등에서 제외가능)
-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기존 무허가 관리 대장에 등재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 ※ 농촌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나, 관례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경우 자가로 인정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자가 있는 가구 : 조건불이행자는 생계급여를 중지하도록 하고 수급자격은 유지(세부사항은 생계급여의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153쪽) 참조

-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1인 단독세대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방법
 - 자가소유자 및 임차료 지급자에게는 지급하되, 부양의무자 또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자(무료임차자), 주거가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 ※ 이 경우에는 무료임차자에게 부과하는 임차료에 해당하는 사적이전소득은 산정하지 않음

(2) 주거 현물급여

(가) 목적

-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나) 급여대상

- 현물급여 공제가 적용되는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 3년 이내에 타부처 집수리사업의 지원을 받아 집수리가 이뤄진 가구는 주거현물급여 지원 제한⁶⁴⁾

(다) 예산 및 집행

- “자가가구 등”의 주거 현금급여액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함
- 본인 부담, 지자체 자체예산(가옥수리 보조금), 이웃돕기 성금 등을 추가 활용
- 보장기관은 주거현물급여 사업에 의하여 사업비 지출
 - 연도말 주거현물급여 사업비 집행잔액은 생계급여로 지출(이월사용 불가)

64)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이지만 수선 및 점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주거현물급여 외의 타부처 사업 등을 통해 지원

(라) 주거현물급여의 공급

- 수선서비스는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사업단’을 활용한 직접 서비스를 원칙으로 함
- 단, 지역에 따라 집수리사업단이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마을청년회 등 민간 공익단체에 의뢰하거나 민간사업자에 의한 수선 실시

(마) 현물급여 주기 등

- 3년에 1회 기준으로 수선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즉 대상가구당 3년에 1회 이상 현물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
 - 수선비 소요가 상한액을 넘을 경우, 수급자 본인부담 또는 지자체 자체 예산(가옥수리 보조금), 이웃돕기 성금 등을 활용
- ※ 현물급여의 구체적 집행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안내” 참조

3 교육급여

가. 목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나. 지원대상자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시행령 제16조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의사상자의 자녀
- 학비(입학금, 수업료)지원 제외(시행령 제16조제2항)
 -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재학생 전체가 학비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포함)
 - 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다른법령에 의하여 학비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 하지 않음(시행령 제16조제2항)
 - 다만,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⁶⁵⁾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수급자 계좌로 지급가능
 - ☞ 학비감면자에 대한 학비 지급기준 : 해당 학교소재지의 급지별 학비기준

다.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1) 입학금·수업료

- 지원대상 : 고등학생(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
 -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후 입학금·수업료 지급
- 지원내용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2)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 지원대상 : 고등학생

65)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범위

-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 등으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 학교장이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비를 면제·감면하는 경우

- 지원내용 : 1인당 119.2천원 지급(연 1회)
- 지원방법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3)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 1인당 36천원 지급(연 1회)
- 지원방법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4)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 1인당 49.5천원 지급(학기당 24.75천원씩 연 2회)
- 지원방법 : 학기초(1/4분기, 3/4분기)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1/4분기, 2/4분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3/4분기, 4/4분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 ※ 4/4분기에 속하는 1~2월 신청자의 경우, 학용품비 지급대상임

라. 학비의 신청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청
 - 신입생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의 입학학교를 신속히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통보
 -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제6편 참조(213쪽)

마. 학비 지급방법

- 학비는 분기별로 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로 직접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외한 학비는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 시장·군수·구청장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지급

-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등 납입기한이 재학생보다 이른 점을 감안, 신속히 입학학교와 학비고지금액을 파악하여 기한내에 학비를 지급할 것
 - ※ 신규수급자의 경우 급여개시일(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수업료를 월할 계산하여 학교로 지급
 - ※ 분기의 구분
 - 제1분기 : 3월1일~5월말일
 - 제2분기 : 6월1일~8월말일
 - 제3분기 : 9월1일~11월말일
 - 제4분기 : 12월1일~다음해 2월말일
- 제2분기~제4분기 학비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비지급 전에 해당학교로부터 당해 수급자의 재학여부를 확인(서식 19호)한 후, 학비납입 기한 전에 해당학교에 학비를 입금 조치(필요시 제1분기 학비지급전에도 확인 실시)
- 학비지원의 중단
 - 학비지원대상자가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급여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학비지원을 중지
 - ※ 학비지원 대상자가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학교에서 시·군·구로 반납 처리(전학할 경우 월할 계산)
- 거주지 변경시의 학비 지급
 - 수급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전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학비 지급. 다만, 다음 분기의 학비가 이미 지급된 때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 가구주의 전출없이, 학비지원대상자만이 학업·현장실습·예비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학비를 지급
- 바. 전학에 따른 학비 정산
 - 수급자의 전학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연도분을 지급하는 때에 정산
 - 전학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전출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계산하여 정산

사. 기타 사항

- 보장기관의 장은 매년 3월 개학 이전에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수급자 명단을 통보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급자에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4 해산급여

가. 급여의 내용

- 조산(助産)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나.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⁶⁶⁾(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 ※ 의료·교육급여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이 출산한 때에는 해산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지급)

다. 급여액

- 1인당 5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000천원 지급)

라.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서식5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갈음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

66)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를 포함(단,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만 해당)하며, 낙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중복 지원에 해당함에 유의

마. 지급 방법

-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해산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⁶⁷⁾이내 처리, 7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
 - ※ 시장·군수·구청장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지급

5 장제급여

가.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나. 급여 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는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 ※ 의료·교육급여의 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이 사망한 때에는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지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의한 의사자
 -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다. 급여액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50만원 지급
 - ※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타법령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 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산재법상 장제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67)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상의 민원사무처리기준도 처리기간을 4일로 개정(2003. 9월)

- 다만,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라.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5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같음 가능

마. 지급 방법

- 장제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할 것
 -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
 - ※ 읍·면·동에서 '개산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군·구에서 '개산급' 등을 확보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
 - ※ 시장·군수·구청장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 ☞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⁶⁸⁾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① 사망자가 남겨 놓은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② 부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장제급여로 지급함 ③ 다만, 사망자가 남겨 놓은 유가증권 등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 ※ 남겨 놓은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6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를 의미

제 5 편 수급자 관리



- I.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 수급자 관리 개요
 2. 수급자 증명서 발급
 3.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4. 중점관리대상자 및 조사정보 제공 관리
 5.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 II.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1. 목적 및 기본원칙
 2.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 III. 보장비용의 징수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가. 부정수급의 확인
 - 나. 보장비용 징수결정
 - 다. 보장비용 징수절차
 - 라. 징수금액의 처리
 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가.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 나. 보장비용 징수결정
 - 다. 보장비용 징수절차
 - 라. 징수금액의 처리 : 부정수급자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3. 결손처분
 4. 소급지급
 5. 소멸시효
 6. 고발조치
- IV. 반환명령
 1. 반환의 요건 및 대상
 2. 반환의 감면
 3. 반환의 절차 및 처리 방법

I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 수급자 관리 개요

- 수급자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 수급자의 신고·신청 등에 의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필요
 - 특히, 부정수급자 확인과 보장비용 징수도 수급자 관리의 주요 사항에 해당
- 수급자의 소득 등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서식7호)와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서식8호)에 기록, 관리함(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2 수급자 증명서 발급

-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시행규칙 제40조)
 - 발급대상 : 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 그 친권자, 후견인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신청자 중 그 친권자, 후견인은 위임장(서식 22-1)을 작성하여 보장기관(민원실)에 신청

<유의사항>

- 수급자 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을 제출
 -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보장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의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출력하여 사용(서식22호)

- 특례수급자는 일반수급자란에 표기
 - ※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서도 발급가능. 동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된 수급자증명서는 신청에 의한 발급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번호부여 후 발급

3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가. 확인 대상

- 수급자 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종류·금액, 관리 주체(해당 보장기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의 거주지
 - 수급자의 세대구성
 - 수급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 수급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 등 조건부과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능력 유무 등

나. 확인 방법

(1) 일반적인 확인 방법

- 수급자의 신고의무 이행(법 제37조)
- 수급자,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급여변경 신청(법 제29조)
-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법 제23조)

(2)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확인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 (교정시설 입소, 군입대 등), 소득·재산 변동 등
 - ※ 각 항목별 알림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보

(3)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 수급자의 거주 여부
- 수급자의 가구구성원 일부 전출시 동일 생계 여부와 동일보장가구 범위에 대한 판단
- 수급자의 공적자료 이외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 특이사항 등

< 참고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기

구분		변동자료 알림시기
소득	근로소득	매분기 변동사항 발생시
	사업소득	매년 변동사항 발생시
	재산소득	매년 변동사항 발생시 (연금소득 금융조회시)
재산	기타소득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일반재산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금융재산	금융조회 후 변동사항 발생시
인적 사항	자동차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사망, 말소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거주지 변경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군입대, 군제대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해외출입국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교정시설 입·퇴소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출생, 결혼, 이혼	매분기 변동사항 발생시

(4) 변동사항 확인항목 및 처리사항

○ 수급자 변동사항

변동사항 확인 항목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알림 기능	처리할 일
거주지 변동	세대 전부	알림	신거주지에 관련서류 이송
	가구원 일부	알림 ※ 수동처리 가능	① 동일보장가구 여부 판단 ② 전출대상자만 시스템에서 전출처리 ③ 시스템자동반영 후 보장가구원 재구성 - 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미거주	×	해당자 보호종지 등
가구원 변동	출생	알림*	①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② 해산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사망	알림	①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② 장제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말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거주불명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결혼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후 재판정
	이혼	알림*	보장가구를 분리하고 현 보장가구원에서 이혼대상자를 삭제

변동사항 확인 항목		행복e음(사회복지동 합관리망) 알림 기능	처리할 일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 등)
	출입국 내역	알림	1회 출국기간이 90일 경과자 확인 후 보호중지
	군 입대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군 제대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교정시설 입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교정시설 퇴소	알림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가출	×	해당자 보호중지(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소득·재산 변동	소득·재산 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 확인 반영
	공적자료 외 신고 소득·재산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기타 변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알림	급여 및 서비스이력을 조회하여 카드 등 재발급 처리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근로능력	-만65세 이상자 알림 -만18세 이상자 알림 -진단서 유효기간 알림 -장애인 등록 알림	- 의료급여 종별변경 및 근로능력 재판정 대상자 안내 - 근로능력 재판정 실시
	가구 특이사항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가족관계증명서 변동 정보에 의해 분기별로 통보

○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변동 항목		행복e음(사회 복지통합관리망) 알림 기능	처리할 일
거주지 변동	세대 전부	알림	부양의무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부양능력 재판정
	가구원 일부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가구원 변동	출생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사망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출입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말소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결혼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등록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이혼	알림*	부양의무자 가구원 삭제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변동 항목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알림 기능	처리할 일
	군입대, 군제대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교정시설 입출소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소득·재산 변동	소득·재산 공적자료	알림	변동자료 확인 반영 후 부양능력 재판정
기타 변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인적사항 변경처리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가구 특이사항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가족관계증명서 변동 정보에 의해 분기별로 통보

(5) 급여중지자(탈락자) 관리

- 급여중지(탈락) 후 5년 이내에 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5년 이내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급여 중지자(탈락자)의 급여 재신청에 따른 조사 등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 후 즉시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상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된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 재신청 시 신청(상담) 화면에서 서비스 수혜이력 및 중지사유 확인 가능

다.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 소득·재산, 가구원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처리할 일을 알려줌(알림기능)
-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 보장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변동사항에 대해 당월 미처리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되며, 변동 처리 후 해당월 급여변동사항의 상계, 소급절차를 진행하여야만 익월급여 변동가능
 - 신규 발견된 소득, 취업, 재산 취득과 가구원 변동 등은 변동이 일어난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기존 신고된 소득·재산 자료의 변동(임금의 인상, 재산의 가액증가 등 단순변동을 의미)은 변동이 확인된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보장비용 징수한다.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서 통보되는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제 등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변경,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소득·재산기준 변동(특히 부양능력 미약인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비 변동) 등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의 변동사항은 적용시점부터 반영해야 함. 특히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1월 급여 지급시부터 반영

4 중점관리대상자 및 조사정보 제공 관리

가.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하여 유형별로 등록
 - (유형) 부정수급자, 소득재산은닉, 부양의무자 누락, 행방불명등록자, 위장이혼자, 차량명의도용, 사실혼 미신고, 급여관리자 지정, 미신고시설,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5인 이상 거주 가구 등
-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확인 후 처리 내용(확인조사 시기 및 결과 등)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관리
 -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 보장비용 환수 절차를 따름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조사 의뢰
 - 복지부는 의뢰 건을 검토하여 자체처리 가능으로 판단 시 해당 지자체로 반송하고 중앙의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 후 결과를 송부

나. 조사정보 제공 및 관리

- 주기적으로 제공된 공적자료의 반영상태 모니터링 자료 제공(복지부→지자체)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선정기준(소득,재산,연령, 자격 등 선정요건)과 개인·가구별 조건을 비교하여 기준초과자 또는 불일치 자료를 추출하여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제공
- 전산 미연계자료 수집 제공
 - 시스템에 미연계된 소득·재산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입수하여 기준초과 또는 급여조정이 필요한 자의 명단 제공
-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정보 제공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확인 후 처리내용(확인조사 시기 및 결과 등)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관리
 -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환수대상자 및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관리(보장비용징수제외자 포함)
- 조사정보 제공 사후관리
 - 보건복지부는 자료반영 실태에 대하여 수시확인 조사 실시

다. 환수대상자 관리

- 환수대상자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부정수급 확인, 환수 대상자, 보장비용 산출, 징수 결정, 보장비용납부통지, 징수, 반환명령, 체납처분 등 징수절차 이행 관리

5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시행규칙 제33조)

가. 전출

(1)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전출하는 경우

- 수급자 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

(2)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중 일부가 전출하는 경우

-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
 - 단,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해당 가구원이 보장가구와 주거는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3)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의 보장기관

-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이 2개 이상의 시·군·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됨
 - 예)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됨

나. 전입**(1)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이 모두 전입하는 경우**

-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이 경우 일반적인 신청과 조사 절차는 생략하고 주거급여에 필요한 조사만을 우선 실시

(2)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중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수급자에 관한 대장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확인하여 급여결정. 필요시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단,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거주지 변경시의 급여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구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1 목적 및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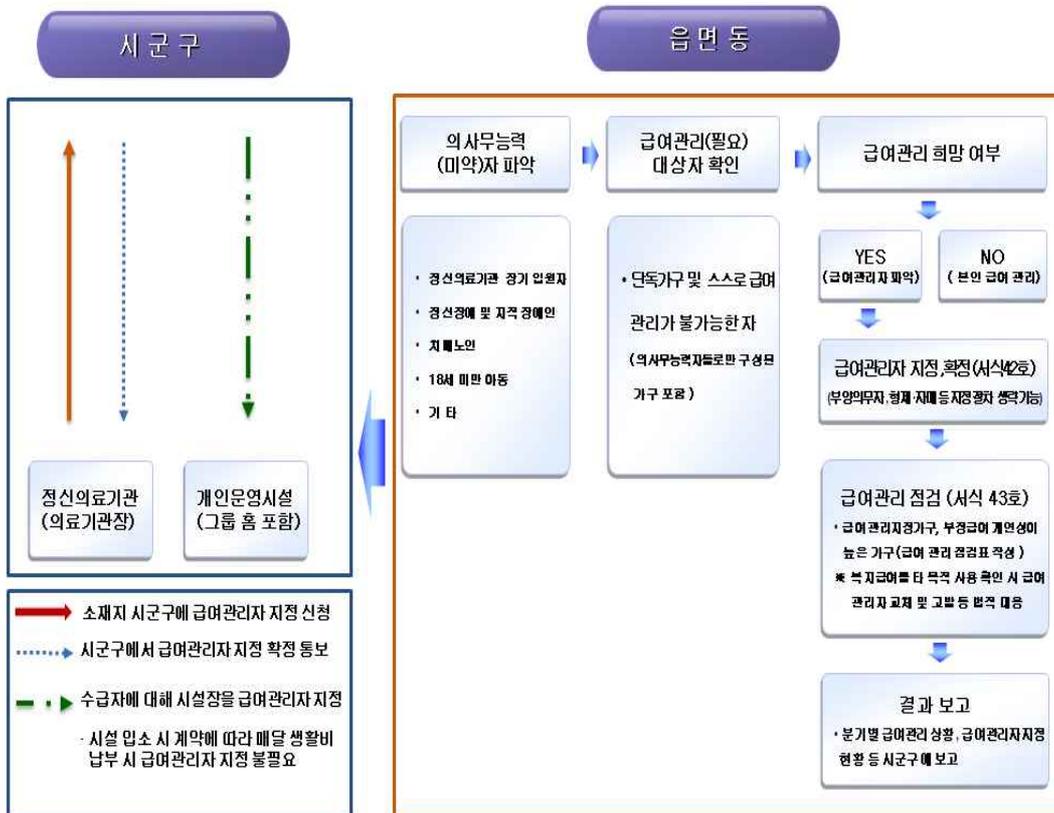
- 수급자 본인이 타인에 의한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 급여관리를 실시하지는 않음(사적자치의 원칙)
- 다만,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노인 등에 대하여는 제3자로 하여금 급여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점검 필요
 - 사적자치 능력이 미흡한 자가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 관리상황을 정기 모니터링하여 부당한 수급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 차단

2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인, 치매 노인, 18세미만 아동, 기타 이에 준하는 자
 - 위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 단독가구이거나, 위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들 로만 구성된 가구 포함
- 세부 용어 정의
 -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라 함은 현재 6개월 이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로 정신분열병(F20-F29), 분열정동장애(F25.0-F25.9), 양극성정동장애(F31.0-F31.9), 정신지체(F70-F79)로 진단받은 자를 말함
 -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정신장애 1급 내지 3급 또는 지적장애 1급 내지 3급을 진단받아 보장기관에 장애등록을 한 자를 말함

- ‘치매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치매의 원인 질병에 관계없이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상 일정점수 이하인자를 말함 [노인노년복지 사업안내(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조]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라 함은 상기 규정외에 장애상태·의사능력 정도, 생활 실태 등 개인별 차이를 감안하여 급여관리의 내실을 위하여 읍·면·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함
- ※ 정신의료기관 장기 입원자가 관외지역으로 직접관리 곤란시 병원 소재지 보장기관과 협의하여 급여관리 위탁

【 급여관리자 지정 및 관리 절차 】



- 수급자 본인이 타인에 의한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 급여관리를 실시하지는 않으나

- 실제 수급여부와 급여관리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
- 의사능력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하여 급여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동의 하에 급여관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2) 급여관리자 지정

-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 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
- 부양의무자 등이 없거나 급여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부양기피, 원거리 거주, 부당한 급여사용 우려, 부양의무자의 장애·정신질환 등)에는
 - 사회복지기관 재가복지담당자, 의료기관 복지담당자, 교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위원, 복지위원, 이웃 등 수급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한 지역인사를 급여관리자로 지정
- 급여관리자 지정시, 동의서 작성(서식42호)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급여관리사실 및 책임 인지 유도
 - 부당 사용·관리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고지함과 아울러 지자체별로 가능한 인센티브 제공
 - * 자원봉사시간 인정, 기관단체장 표창장 수여, 문화시설 또는 사도립 공원 무료 이용(할인), 공용주차장 이용 할인, 지자체 행사 우선 초청, 대중교통요금 할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민원서비스 및 지자체 행정정보 우선제공 등
- 부양의무자·형제자매 등이 급여관리자가 되는 경우,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감안하여 지정절차 생략 할 수 있으나, 급여 관리점검은 실시

(3) 급여관리방법 및 급여관리상황 모니터링

- 급여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영수증 관리)
 -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하고, 급여지출 상황은 간략히 작성토록 하여 급여관리자의 부담을 최소화
- 읍·면·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분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 작성(서식43호 참조)

- 조사대상
 - 급여관리지정 가구
 - 급여관리지정을 하지 않은 가구 중 1회 이상 부적정 급여관리 의심신고가 접수된 가구
- 점검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 급여수령 여부
 - 급여관리자의 급여 사용 실태 점검시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내역을 점검하고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되 고령 등의 이유로 급여관리자에 대한 정리가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이 구술로 확인하여 기재
 - 부양의무자 등 가족이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 영수증 보관·관리로 지출 기록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수급자 생활실태 등을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

(4) 개인운영 신고시설 거주자의 급여관리

- 개인운영 신고시설은 기초법상 보장시설은 아니나, 동 시설에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시설장을 급여관리자로 지정
 - 시설 운영방식에 따라 수급자가 시설입소시 계약에 따라 매달 본인의 생활비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자 지정 불필요
 - * 미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신고시설로 전원 조치하되 그 이전까지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공동급여관리자를 지정·관리
- 시설장은 수급자의 급여에 대한 지출·관리상황을 기록·관리
 - 읍·면·동장은 매분기별 급여관리 상황 확인. 다만, 시설 담당부서(사업팀)에서 시설 지도·감독시 수급자 급여관리 실태를 확인한 경우 해당 분기에 급여관리 상황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 ※ 의사무능력(미약)자가 본인의 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장기관은 급여관리자를 확정하여 해당 병원 및 관할 읍·면·동에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매분기별 급여관리 상황 확인. 이 경우 읍·면·동장은 시설 수급자의 급여관리 '단서' 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읍·면·동장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 개인운영시설(미신고시설 포함), 정신병원이 다수 설치되어 기관 여건상 매 분기별 급여관리 점검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사업과에 행정지원 인력을 요청할 수 있음

III 보장비용의 징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부정수급자),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선보호 조치를 한 경우의 부양의무자 등에 대해서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여야 함(법 제46조,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32조3조)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법 제46조제2항)

■ 보장비용 징수 절차

- 부정수급 여부 확인 → 보장비용징수 여부 판단 → 보장비용징수결정 → 징수

가. 부정수급의 확인

(1) 부정수급의 정의

- 부정수급이란 “사위(詐僞,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를 부정수급자로 지칭
 - 따라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예를 들어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도 부정수급자의 범위에 해당됨
 - 또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기 신고된 자료의 변동(임금의 인상, 재산의 가액

증가 등 단순변동을 의미)을 제외한, 신규로 발생한 소득(신고한 소득과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소득이 상이하여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취업, 재산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하여 미신고한 경우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됨(단, 변동사항 발생 후 1개월 이내 또는 징수대상 금액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업종,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재산 증감(이자, 기존 예금의 평가액 변동은 제외)이 발생한 경우 신고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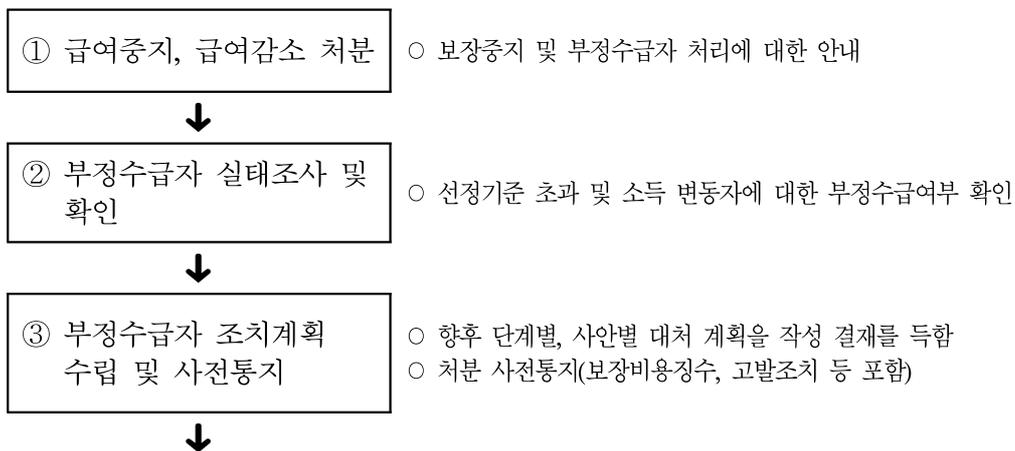
(2) 부정수급의 확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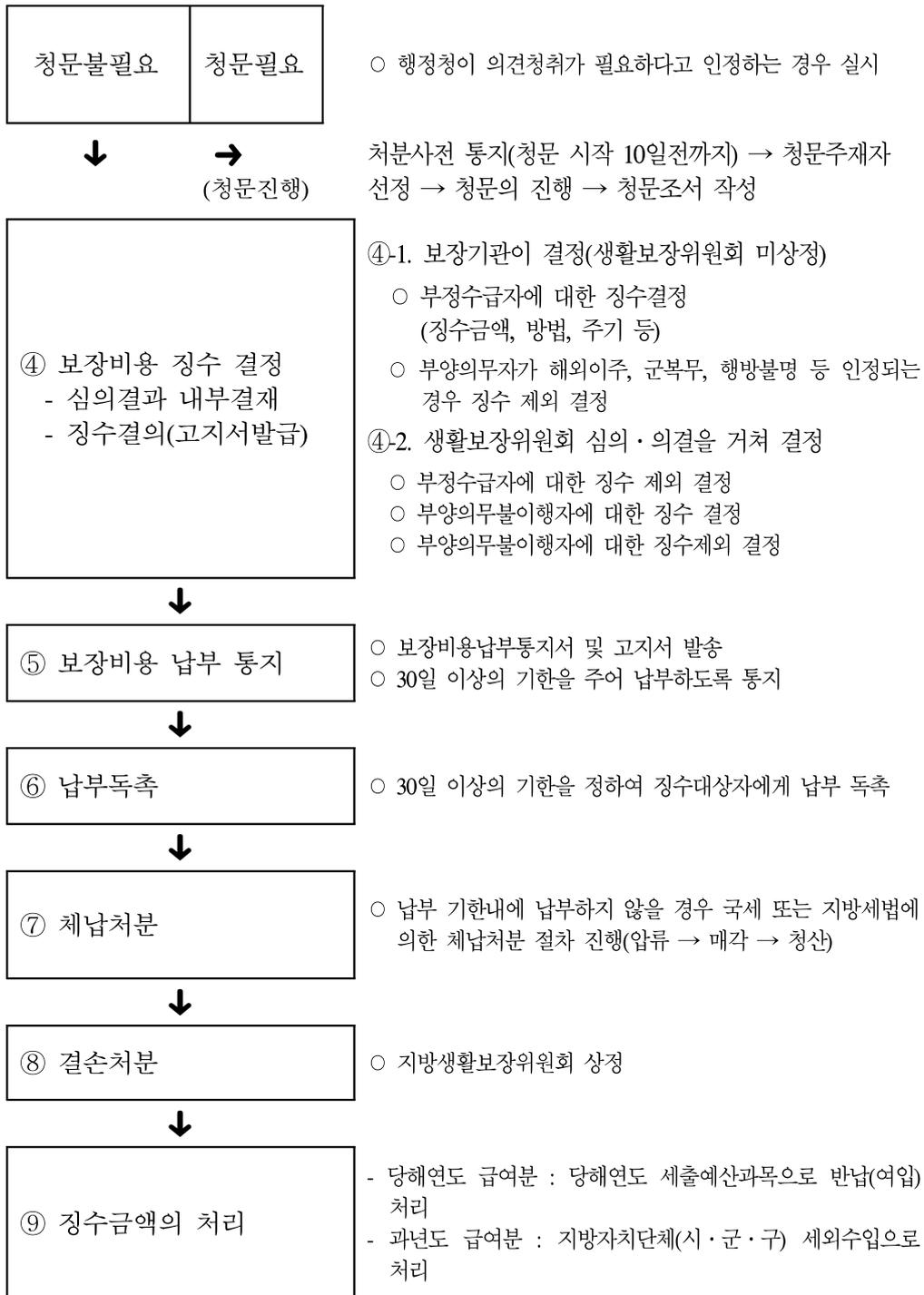
- 부정수급의 확인은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보장기관은 부정수급의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3)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급여중지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하고, 수급자격은 유지하나 급여를 변경해야 하는 자(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을 지급
-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보장비용 징수 제외 여부 심의 결정

【부정수급자 처리 절차】





나. 보장비용 징수결정

- 보장기관은 징수대상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의 사유,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보장비용 징수여부를 결정
- 원칙적으로 모든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징수 대상임
 - 다만,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생활실태·가구특성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보장비용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비용 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 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시행령 제47조제2항)

(가) 징수금액

-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 징수대상 자활급여 보장비용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또는 실비지원 명목으로 지원한 금전은 제외
-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징수금액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

(나) 징수기간 산정기준

- 선정기준 초과로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 ※ 금융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을 파악하여 보장비용을 징수
- 수급 중지사유 발생월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지사실을 안 때 (조회시점 등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2) 징수대상자 관리

- 보장기관의 장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1) 보장비용 납부통지

- 보장기관이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통지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서식 제22호)에 의한 보장비용납부통지서 및 고지서를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시에는 보장비용납부통지서 및 고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2) 분할납부

- 보장기관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
 -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 분할 징수

(3) 독촉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⁶⁹⁾에 의하여 징수

라. 징수금액의 처리

- 보장기관이 징수한 보장비용은 이를 징수 당해년도 급여분과 과년도 급여분으로 구분하되,
 - 징수 당해년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당해년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 처리하고, 과년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사례1)

- 2008년 8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다가 2009.4.25일자로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2009.5.10일자로 보장기관의 장이 보장비용을 징수키로 결정한 경우

69) 국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24조~제88조) 참조

- 징수금액의 산정은?
⇒ 과년도 및 당해년도 급여분을 징수하는 경우이므로 총 징수금액을 산정하되 2008년도 지급한 금액과 2009년도에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2009.12.31까지 보장비용을 징수한 경우는?
⇒ 2009년도 급여분('09.1~4월분)은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 처리
⇒ 2008년도 급여분('08.8~12월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 다음연도인 2010. 1.1이후에 보장비용을 징수한 경우는?
⇒ 2008~2009년도에 지출한 급여(과년도분)이므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함

(사례2)

- A군에서 급여를 받다가 B군으로 전입하여 급여를 받던 중 급여가 중지되어 보장비용을 징수키로 한 경우
→ A군에서 급여한 금액은 A군에서 징수결정하여 징수하고, B군에서 급여한 금액은 B군에서 징수결정하여 징수하여야함.
- B군은 A군에 급여중지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 받은 A군에서는 보장비용 징수결정을 하고, B군에 거주하고 있는 급여중지자에게 보장비용을 납부토록 고지하여야함

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음(법 제46조제1항)

가.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 (1)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장기관이 선보호 조치한 경우 등

- (2)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부양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부양비)을 지원하지 않아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등

나. 보장비용의 징수결정

(1) 보장비용 징수결정 기관

-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양의무 불이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결정해야 함(법제46조제1항)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보장비용 징수 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등을 심의·의결함
 - 징수주기와 관련하여 부양의무 불이행자 중에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보장비용 징수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계속 불이행할 시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주기에 따라 징수절차를 재이행(이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재의결 불필요)

(2)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 (가)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 군복무, 행방불명 등 부양불능 상태로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나) 기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관계를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가구와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자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질병, 교육, 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 차감 가능)이 수급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서 단순히 재산기준만 초과하는 등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에게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이 발생하여 사실상 보장비용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3) 징수금액의 산정(시행령 제47조제1항)

-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징수대상자별 징수금액
 - 부양능력이 있는 자 : 보장기관이 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전부
 - 부양능력 미약자 :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
- 징수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징수금액
 - 징수금액은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징수하되, 그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 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 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간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각각 징수함(시행령 제47조)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할 대상이 수급자 가구원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의 징수금액
 - 부양의무가 있는 그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만을 기준으로 보장비용을 산정
 - ※ 구체적인 징수금액 산정은 해당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4) 징수대상 기간

- 부양능력이 있는 자 : 부양능력이 있다고 확인되는 익월부터 지급한 급여의 전부
- 부양능력 미약자 : 부양능력 미약자로 확인되는 익월부터 지급한 급여 중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

(5) 징수대상자 관리

- 보장기관의 장은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 관리

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1) 보장비용 납부통지

-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비용징수 결정이 나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양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장비용납부통지서를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시 보장비용납부통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2) 분할납부

-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비용을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생략)

(3) 독촉

- 부양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라. 징수금액의 처리 : 부정수급자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처리

3 결손처분

- 보장기관은 국세징수법 제8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 채납처분이 종결되고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에 부족한 때
 - 보장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등 채납처분 중지사유가 발생한 때
 - 지방행정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확인 결과 채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다만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채납처분을 함
-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인한 재산의 멸실 등으로 실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
 - 보장비용 납부의무자가 사망, 국외이주, 행방불명,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소급지급

- 보장기관의 급여결정사항대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소급지급은 불가함, 단, 보장기관에서 급여결정된 사항과 달리 과소지급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하며, 반대로 급여결정된 사항보다 과다 지급된 경우는 반환 대상임.

5 소멸시효

- 보장비용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국가재정법 제96조)
 - 단,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

6 고발조치

-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법49조에 의거 고발조치
 - 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IV 반환명령

1 반환의 요건 및 대상(법 제47조)

-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및 일부
 - 일부의 반환은 반환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2 반환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반환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3 반환의 절차 및 처리 방법

① 과잉지급분 발생	○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
② 반환 결정	○ 반환의 감면사유 해당 여부 확인
③ 반환 통지	○ 반환 결정 즉시(3일 이내) 통지(15일 이내의 납부 기한)
④ 납부독촉	- 반환거부(1차)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수급자에게 납부를 독촉
⑤ 체납처분	- 반환거부(2차) ○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 압류 : 반환대상자가 소유하는 재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 경매처분: 보장기관의 장이 압류한 반환대상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하는 절차를 진행
⑥ 반환금액 처리	- 당해연도 급여분 :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급여분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제6편 보장시설



- I. 보장시설의 개요
 - 1. 보장시설의 의미
 - 2. 보장시설의 범위
 - 3.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 II.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 1. 보장시설 입소자 기준
 - 2.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범위 특례

- III.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 1. 조사 및 관리 주체
 -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 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 IV.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1. 생계급여
 - 2. 주거급여
 - 3. 교육급여
 - 4. 장제급여, 해산급여

- V.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 1. 배경
 -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I 보장시설 개요

1 보장시설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19조제2항)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는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임(법 제10조제1항)

2 보장시설의 범위(법 제32조, 시행령 제38조)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 보장시설의 범위 >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 사회복지 준비 또는 장기간 요양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 양로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 노인공동생활가정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 노인요양시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요양 필요자 등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중증노인성질환자 등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	○ 아동양육시설	· 요보호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함
	○ 아동일시보호시설	· 일시보호, 향후 양육대책수립·보호조치
	○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아동의 선도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 아동직업훈련시설	· 15세 이상 아동 및 저소득아동의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
	○ 자립지원시설	·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취업준비기간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로 자립지원
	○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보호곤란한 아동의 단기보호
4.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제3조)	○ 정신요양시설 (주거제공시설 제외)	· 정신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
	○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 훈련시설
5. 부랑인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부랑인보호시설	· 주거 및 생활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 하는 자의 보호 및 재활
6. 여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 미혼모시설	·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시 안전분만 및 건강회복을 위한 보호
	○ 모자보호시설	·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 모자자립시설	· 저소득모자가정에 주택편의 제공
	○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한 일시 보호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5조)	○ 일반지원시설	· 입소희망자,보호처분자 대상으로 6월의 범위내에 숙식 제공과 자립지원
	○ 청소년지원시설	· 성매매 피해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1년 범위내에서 숙식 제공, 교육·자립지원
8.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시설 (성폭력방지법 제25조 및 26조,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 및 8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피해자 일시보호, 사회복지 조력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일시보호,가정복지조력,타보호시설 위탁
9. 기타 사회복지시설	○ 한센시설	· 무의탁 한센(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결핵요양시설	· 무의탁 결핵(전염병예방법제2조)환자의 보호 및 요양서비스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령 제38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보장시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 아닌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기타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

3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가. 보장시설수급(권)자의 조사 관련 의무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하여 행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를 위촉한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법 제22조제3항,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4항)

나. 급여 위탁 관련 의무

-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33조, 제50조)
- 보장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는 시설 수급자의 수급여부 확인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함(법 제9조제3항)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하여야 함(법 제33조)

다. 보장시설 수급자 보호관련 의무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선 안되며, 강제노동의 금지 등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함(법 제33조)
-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법 제33조제5항, 제50조)

II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1 보장시설 입소자 기준

-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법 제5조제1항)
- 수급(권)자 관련
 - 보장시설 입소자는 주민등록을 보장기관으로 변경하여야 함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해당되므로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즉,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의 나머지 가구원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모두 부양의무자로 처리)
 - ※ 배우자는 수급권자로서 시설 수급자와 함께 조사해야 할 대상이나 시설입소자의 보호를 위해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고 조사하며, 이 때 시설수급자의 배우자가 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직계존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 단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 ☞ 4인 가구 수급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에 3인 가구의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급여 실시
 -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 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수급자격은 유지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3개월 이내의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조건부과 제외자로 관리
-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관계가 있는 다른 가구원이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는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 처리(시행령 제5조)

2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범위 특례

- 소득인정액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보장시설 입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례수급자로 선정보호
 - 다만, 다음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 생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있음으로 처리
 - ※ 단,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친정부모에 대해서는 동 기준 적용시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만을 고려
-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한함)
 -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시설생활자의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관계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3년 이상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시설생활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유기된 경우(아동, 장애인, 노인 등)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미혼모, 탈성매매여성인 경우
 - 시설생활자가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폭력피해여성(가정폭력, 성폭력 등)인 경우 등

Ⅲ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별 담당공무원)이 보장기관이 되어 보장시설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주체
 - 신규신청 및 소득재산 확인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 입퇴소 관리 및 급여지급 관리 : 시설관리 사업 담당(팀)이 실시
 -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지와 보장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보장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임
 - 지방이전시설의 경우에는 행정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약에 의거 급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시·도에서 보장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시·군·구와 협의하여 조사 및 관리 수행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전산조회 등), 조사의 일부를 시설장에게 의뢰(수급자 상담 등)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특히, 보장기관은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23조제1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가. 수급(권)자 조사

- 조사범위
 - 모든 소득·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자의 자립적립금 공제 :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장기 저축하는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 다만 동 적립금은 재산산정에 포함(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조)

○ 조사방법

- 전산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 확인

나. 부양의무자 조사

○ 조사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한하여 조사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공부상 자료확인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함.
 - 다만, 부양의무자 조사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에 생활하는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

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가. 보장시설 수급자의 입소사실 통보 및 급여자격 변경

- 타 시·군·구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장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⁷⁰⁾에 수급자의 입소사실을 즉시 통보(해당 관내에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통보)
- 입소사실 통보시 포함내용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전 주소지, 시설명, 시설입소일, 시설유형, 시설소재지 주소, 시설연락처
 -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사실을 즉시 보고

70) 수급자 증명서의 '주소지'란에 명시된 시장·군수·구청장

- 보장시설 입소사실을 통보 받은 입소전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일반수급자에서 보장시설수급자로 자격변경 조치하고
 - 남은 가구원에 대하여는 남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 여부 및 급여 등 재결정

나. 주민등록 이전 관리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시설소재지로 이전하여 관리

- 이전신고 대행처리 등 보장시설장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장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71)
-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시설주소지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 보장기관(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의 명단을 시설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매분기마다 입소전 보장기관으로 통보
 - 주민등록 미이전 보장시설수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수급자에 대한 자격전환 및 급여중지 여부 등을 확인

다. 관련서류 이전 및 전산입력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하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
 - 전산에 입력된 자만 수급자로 간주하여 전산으로 확인되는 수급자수를 근거로 급여 지급

71) 보장시설입소 후 주민등록 이전처리방법

- 보장기관 및 보장비용 부담기관의 명확화,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소재지로 수급자의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
 - 따라서, 보장기관(시설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수급자의 주민등록이 시설에 설정되도록 관리함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 처리하도록 할 것 <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입소전 보장기관은 거주지 변경시의 관련 공부의 이송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수급자가 입소한 보장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장시설 담당공무원)에게 이관
 - 수급자가 사전에 시설에 입소하기로 시·군·구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서류를 이관하고 사후에 입소사실을 확인
- 시설소재지 관할 시·군·구 보장시설 담당공무원은 동 통합조사표 등 관련 서류를 이첩받아 반드시 시설소재지 시·군·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해당 수급자의 확인조사 등에 활용

라. 생계급여 지급시 수급자격 확인

현재 수급자가 아닌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급할 것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장으로부터 보장시설 신규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신규입소자의 보장시설수급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해당 신규입소자가 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만 생계비 지급
- 보장기관은 생계급여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지급되는 시기 부터는 반드시 전산으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것
- 보장기관은 매분기마다 수급자의 급여 지급여부를 확인(법 제9조제3항)

마. 보장비용 반환명령

- 보장시설수급자가 시설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타 시·군·구로부터 일반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 일반생계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은 일반생계 급여의 과잉지급분에 대해 반환 조치(법 제47조)
 - ☞ 4인 가구에서 1인이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생계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나머지 가구가 지속적으로 4인 가구 일반생계비를 받는 경우의 과잉지급분은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에서 3인 가구 기준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바. 보장시설수급자의 퇴소시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부의 이송 절차(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조사표 등 관련서류 전입지로 이송
 - 보장시설 수급자가 퇴소할 때 보장기관 관할지역 외로 이주하는 경우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전입신고를 하도록 안내 하며, 보장시설 담당은 관련 서류를 전입지로 이송
 - ※ 퇴소시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전입지에서 일반생계급여 지급되므로 즉시 전입신고가 필요함에 유의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에 퇴소사실을 즉시 보고
 - 보장기관의 장은 동 수급자의 전입지로 전출 통보
-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보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등을 결정하며, 재조사에 의해 파악된 가족관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통합조사표에 기재(전산입력)하여 관리
 - 보장시설 퇴소후 전입시 일반수급자로 자격 변동 후 전입과 동일하게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 실시(조사 후 급여 결정 및 탈락 등 조치)
 - 퇴소한 이후 상담 등을 통하여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되, 입소전에 비하여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실태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여부를 결정

IV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후 생활하고 있는 자는 일반 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만 생계급여 지급
- 긴급급여의 실시 : 일시보호시설 등의 생활자로서 수급자 선정절차 진행 중에 긴급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급여 실시 가능
 - 다만, 1개월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월 이내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209쪽 참조)

나. 지급기준

- 급여내용 :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 지급기준 : 보장기관은 다음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보장시설별 예산 편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장기요양 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생계비를 지급

<보장시설 월평균 지급액>

구 분	정부양곡 미구입시설	정부양곡 구입시설
100인 미만 시설	149,015원	148,738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148,874원	148,595원
300인 이상 시설	148,802원	148,526원

<표>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정부양곡 미구입 시설	정부양곡 구입 시설	비고	
○ 주·부식비 *백미, 정맥 부식비, 취사 연료비 등	- 100인 미만 시설	127,882원/월	113,546원/월	
	- 100~300인 시설	127,741원/월	113,404원/월	
	- 300인 이상 시설	127,669원/월	113,334원/월	
	- 월동대책비 (100~300인 기준)	25,290원/1인	25,290원/1인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 생일파티준비금	-	36,196원/년	생일에 지급
○ 피복·신발비	- 피복비	12,996원/월	12,996원/월	런닝·팬티비 포함
	- 동내의	19,189원/년	19,189원/년	연 1회 / 10월 지급
	- 신발비	-	48,045원/년	연 1회 / 10월 지급
○ 위로금 등	- 송년위로금	-	42,230원/년	연말 지급
	- 생일축하금	-	42,230원/년	생일에 지급
	- 특별위로금	26,585원/연2회	26,585원/연2회	설, 추석 5일전 지급

- 1) 월동대책비 : 시설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5,772원(100인 미만), 25,290원(100인~300인), 25,038원(300인 초과)
- 2)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 대한 추가지급 가능 급여
 - 송년위로금(42,230원), 생일축하금(42,230원), 생일파티준비금(36,196원), 신발비(48,045원)
 -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시설생활자에 대한 추가지급이 곤란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

다. 집행방법

- 정부양곡할인가입여부에 따라 급여기준 달리 집행
- 보장시설장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기준에 따라 주·부식비와 피복비 구분없이 집행 가능
 - 다만, 생계급여를 인건비 등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쌀 등 기부금품 등으로 주·부식구입비가 절감되는 경우 주·부식비 및 피복비로 전환 사용 가능
- 보장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 보장시설의 장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생일축하금은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선물로 지급할 수 있음

- 정신질환자· 영유아· 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소풍, 생일파티 등) 또는 선물 구입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도 동일)

-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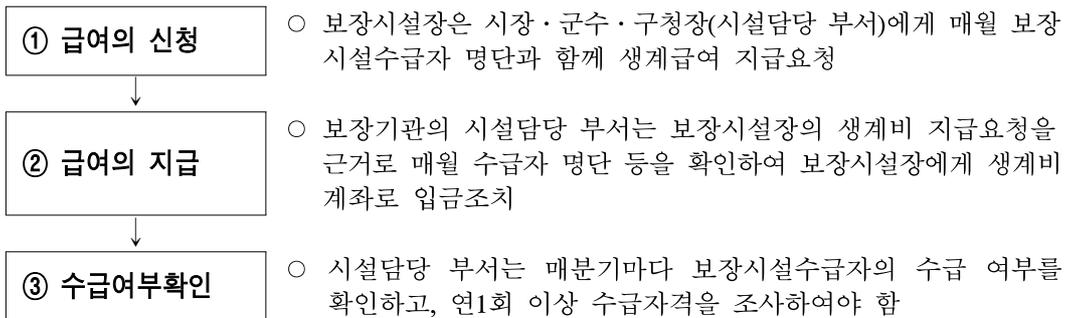
구 분	정부양곡 미구입시설	정부양곡 구입시설
100인 미만 시설	4,696원	4,218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4,691원	4,213원
300인 이상 시설	4,689원	4,211원

※ 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및 동내의비, 신발비는 별도 지급

※ 피복 신발비중 동내의비, 신발비는 10월에 집행

- 일반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일반수급자로 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 지급방법(일반생계급여 기준 참고)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보장시설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계비 지급
 - 다만, 3월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 입원 일수에 대하여 생계급여액 중 주부식비 상당액(예 : 100~300인 시설 중 정부양곡 미구입시설 기준 127,741/월)을 공제하되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은 보전하여 생계비 지급
-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시점과 생계급여액을 공제해야 할 시점간에 시차가 발생한 경우 과거 초과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 다만, 생계급여액이 0원으로 미공제된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처리하지 않음에 유의

- 생계급여액 산출 방식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 공제액(127,741원) + 식대중 본인일부 부담액(단,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보전은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일할 계산시에는 ‘공제액(127,741)/30×입원일수’를 적용하여 산출
 -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 보장시설장은 매월 전월의 생계급여 집행실적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시설 담당자에게 보고
 - 보장시설 담당자는 매분기마다 시설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고,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시설담당자)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생계급여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실시
 -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군·구 또는 시·도의 보장시설 담당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수급자격 확인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을 생계급여 담당 부서에 통보할 것
- ※ 보장기관은 시설생계비를 보장시설에 분기별 또는 개괄급으로 지급해서는 안됨



라. 보장시설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 등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 방식

(1) 보장시설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

-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기준·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방법에 의하여 지원

- 법인이 운영하는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⁷²⁾
- 법인이외의 주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 ※ 미신고시설등 불법시설에서 생활중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2)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 보장시설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급여를 실시
- 보장시설에 입소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월 148천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 몫의 생계급여를 미지급(단, 교육·의료 등 기타 급여는 실시)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215쪽 참조)에 의한 생계급여 제한 예외
 - 근로소득이 월 148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1년 이내에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시 공제(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촉진 지원방안 참고)

(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장시설의 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연고 아동 및 무연고 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에 대한 신상카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
 -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상카드를 확인하여 부모·친인척 등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 및 장애인의 신상카드는 「실종아동전문기관」⁷³⁾에 송부하여 미아찾기 사업에 협조
 -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내용을 보장시설에 사전에 반드시 고지할 것

바. 정부양곡 할인지원

(1)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개요

- 목적 :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

72) 법인운영시설 중 신설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당해연도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동 기간에 한해서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생계급여 지급

73) 실종아동전문기관 :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27-3 어린이재단 양천별관 3층 실종아동전문기관
(Tel : 02-777-0182, Fax : 02-332-7565)

- 신청자격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 보장시설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나, 수급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적극 권장
- 구입범위 :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1식당 144g
- 정부양곡 공급 내용
 - 연산 : 2010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20kg 기준 1포대 20,000원)
 - ※ 농림수산식품부의 '12년 판매가격(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추후통보
 - 공급포대 표기 : 복지사업용

(2) 정부양곡 구입절차

- 정부양곡 할인구입을 희망하는 보장시설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에게 정부양곡공급신청서(서식 1)를 제출
- 보장기관의 시설담당부서는 매월 20일까지 보장시설별 구입물량을 결정한 후 양정담당부서에 대금납부고지서 발급 요청
 - ※ 서울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별로 시(市)의 양정부서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
 - ※ 기초생활급여 담당부서에도 시설별 구입물량 결정자료 통보
- 보장시설의 장은 발급받은 납부고지서에 의해 양곡대금을 지정 국고취급은행에 납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양곡인수통지서 및 인도지시서 발부
- 보장시설의 장은 양곡인수통지서에 의거 지정창고에서 인수

(3) 사후관리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서식2) 및 정부양곡 수불대장(서식3)을 비치하고 매일 작성·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 부서)은 분기별 1회 이상 보장시설 급식시설의 정부양곡 사용실태를 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시설담당부서 →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취합)은 분기별로 보장시설의 구입량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기초생활보장과)에게 보고
- 수불대장을 부실 또는 허위 기재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에서 제외(시설담당부서)
 -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공급대상에서 제외

(4) 기타

- 부정유통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벌
 - 지정용도의 정부양곡 사용·처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주거급여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지급제외

3 교육급여 : 일반수급자와 동일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학비 신청
 -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로 직접 지급

4 장제급여, 해산급여 : 일반수급자와 동일

<서식 1>

정부양곡 공급신청서

1. 보장시설 현황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월평균 급식인원		

2. 정부양곡 공급요청량(월)

전월까지 수입량 누계	사용량 누계	잔량	금회신청량	급식예상인원
kg	kg	kg	kg	명

<서식 2>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

시설명	계	기초생활보장수급 자(명)	비수급자(명)	비고

<서식 3>

보장시설 정부양곡 수불대장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월,일	구입량(kg) ①	급식회수	급식인원	사용량(kg) ②	잔량(kg) ①-②
월 별					
누 계					

V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경

- 보장시설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가.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이 월 148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 입소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시설의 수급자는 예치기간을 퇴소 예정인 달을 초과하여 설정한 경우에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함
- 보장시설수급자가 별도 계좌를 신설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인정
 - 기존에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적금 등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 만기시까지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포함하여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여야 함
 - 동 수급자가 1년 이내에는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보장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 : 보장시설수급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정신지체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통장관리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급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등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예)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농협(수협)신용사업부문 등

나. “근로소득평가액” 산출방법

- 근로소득평가액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실제 근로소득에서 해당 수급자의 특성과 근로유인효과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금액

$$\text{근로소득평가액} = \text{실제 근로소득} - \text{공제액}$$

- 실제 근로소득 :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동일
- 공제액 : 실비 및 필수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 실비 : 시설 외부의 직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성격의 실비 (식비, 교통비 등) 공제
 - 실비산정방식 : 직업활동 참여일수 × 일당 5,000원
 - 식비, 교통비 등을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실비 불인정
 - 필수지출비용 :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장시설장이 인정한 금액에 한함 (보장기관의 장은 추후에 적정성 여부 확인)
 - 예)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등 자기개발비용,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 가구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모자보호시설 등) 당해 가구의 생계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경비 등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방식

-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적립금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의 70%(당해년도 누적평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월의 생계급여 전부 제한
 - 다만, 정기적으로 누계적립율을 새로이 기산하여 적립에 소홀했던 수급자의 경우에도 기회 부여 : 2003년도 이후에는 1.1부터 기산함(즉, 2월분 생계비 적용시부터)
- 예1)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400천원, 7월 350천원, 8월 32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7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80%	70%	64%	지급가능
누계 적립율	80%	75%	71%	

- 예2)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6월 370천원, 7월 350천원, 8월 300천원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1,020천원)/누적소득액(1,500천원) < 70% 이므로 9월 생계비 지급제외
 (이 경우 9월에 380천원 이상을 저축하면 10월 생계비 지급가능)

구 분	6월	7월	8월	9월 생계급여 지급여부
당월 적립율	74%	70%	60%	지급불가
누계 적립율	74%	72%	68%	

※ 만일 9월에 38만원을 저축하면 누적 적립율 70%로 10월 생계급여 지급가능

나. 자립적립금과 수급자격 적용기준

- 자립적립금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 다만,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보장시설수급자의 기본재산액(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지원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수급자 선정기준 적용
 - ※ 자립적립금은 1년 이전까지는 소득·재산 어느 것으로도 산정되지 않음

다. 업무처리 절차 및 사안별 처리방법

직업활동(수급자) → 자립적립금 저축(수급자) → 소득 및 저축현황 파악(보장시설장) → 보장기관에의 보고(보장시설장) → 생계비 지급여부 결정(보장기관)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립적립금을 파악
 - 보장시설수급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근무처, 소득을 파악
 -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파악
 - 저축액 및 소비실태를 파악(통장 등 확인)
-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 처리방법
 - 보장시설장은 생계비 미지원 대상자로부터 생계급여 지급액(148천원/월)을 미지급기간 만큼 합산하여 징수하되, 생계급여 이외의 급여는 실시(수급자격 유지)
 - ※ 실비 등 필수 지출비용을 제외한 저축대상금액이 시설생계급여 지급액(148천원/월)보다 낮을 경우 징수 예외가능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에게 징수한 생계급여는 비용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 보장시설장은 보장기관에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자의 발생사실을 보고하고 다음달 생계급여 예산 신청시 당해 인원 분의 생계급여는 제외
- 보장시설수급자가 자립적립금을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 보장시설장은 수급자가 1년 이내에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 조기인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장기관의 장은 누적적립율이 70% 이상이 될 때까지 당해 수급자를 생계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익년도 1.1부터는 새로이 기산)
 - 예) 매월 소득이 500천원인 수급자가 8월에 적립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0천원을 인출한 경우 (이후 소득 전액적립 가정)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당월 적립금	45만원	45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누계 적립율	90%	90%	47%	60%	68%	73%

※ 9월~11월 생계급여 지급제외, 12월 생계급여부터 지급가능

- 보장시설장은 동 금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
- 보장시설장은 다음 년도 1.1부터 적립율이 새로이 기산되는 점을 수급자가 악용하여 연말에 적립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라. 기타 행정사항

- 보장시설의 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 양식의 관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관리
- 보장기관은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예산집행시 필요한 경우 동 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수급자 근로활동 관리대장(00월)

수급자성명	사업장	실제소득 < A >	공제액 및 공제사유 < B >	소득평가액 < C=A-B >	저축액 < D >	적립율 (누적개념) < D/C >	생계비 지원여부 < O, X >

※ 필수적인 지출(의료비 등)은 「소득공제금액 및 공제사유」란에 기재하고, 보장기관에서 이의 타당성 검토

○ 사회복귀의 촉진

- 보장시설의 장은 가능한 한 시설외부에서 직업활동을 행하여 직업적응효과를 제고
- 보장시설의 장은 시설예산 및 수급자 본인의 저축액 등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주거비용,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영구임대주택 활용, 그룹홈 프로그램 등 고려)
- 보장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들과 연계하여 수급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
- 보장시설의 장은 수급자가 퇴소하면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급자로 계속 보호
 - 근로능력자도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간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

제 7 편 보장기관



I. 보장기관

II. 지방생활보장위원회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운영

III. 이의신청

1. 이의신청제도의 개요
2. 시·도지사에게 대한 이의신청 절차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한 이의신청 절차

IV. 각종 보고사항

1. 조사 관련 보고
2. 급여 관련 보고
3.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관련 보고

I 보장기관

-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임(법 제2조, 제19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급여기준의 결정,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지역자활센터 지정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 정책 사항을 결정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대부분의 사업집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임된 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의 경우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거나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지역자활센터 지정 관련 서류 제출(법 제16조, 시행규칙 제27조)
 - 수급자의 보장시설 위탁(법 제19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법 제20조, 시행령 제29조)
 - 수급자 현황, 차상위계층 등 각종 조사결과 보고(법 제25조)
 - 시·도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보고(법 제28조, 시행령 제37조)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법 제38조 내지 40조)
 - 보장비용의 부담(법 제43조)
 - 보장기금의 설치·운용(법 제44조, 시행령 제41조, 제44조, 제46조) 등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임(법제19조제1항)
 - ※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타소재지 의료기관에 입원중이거나, 소득활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임

II 지방생활보장위원회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법 제20조,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5조)

가. 종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
- 다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전제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의하여 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음
 - 성격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이어야 함
 - 위원회의 위원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 단,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위원장 : 조례로 정함

나.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구성시 여성비율을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위원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공익을 대표하는 자
 - 공익 대표자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지역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가급적 전체위원의 20% 범위(정부조직관리지침) 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위원 임기 : 2년(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
- 간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1인을 임명
 -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가. 시·도 생활보장위원회

-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나.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1) 법령에서 정한 사항

-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결손처분 관련 사항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개별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 사실상 국공유지에 준하여 활용되고 있어 소유자 개인의 처분 및 활용이 곤란한 재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일정기간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차량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부양의 거부·기피, 가족관계 단절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 급여결정·변경·중지와 관련하여 민원 및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보고사항)
 - ※ 급여결정·변경·중지 자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으로 결정
-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 관련 사항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등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원칙
 - 다만, 특례수급자 결정을 위한 회의는 사안 발생시 개최, 필요시 서면의결을 활용
 -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은 매년 1월말까지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1월에는 반드시 회의개최(시행규칙 제37조)
-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
 -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
 - 매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실적(상정안건, 심의대상자, 심의결과 등)을 별도로 기록관리
 - 매 분기별 실적을 시·도(특별자치도 포함)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보고(매분기의 다음달 말까지)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운영

가. 목적

- 지역실태에 따른 보호확대를 위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시행령 제28조)

나. 설치방법

-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운영세칙으로 설치(시행령 제28조, 제35조)

다. 운영방향, 구성, 기능

- 운영방향
 -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에 준하며, 사후 본위원회에 보고
 - * 본위원회에서 반대의결할 경우, 본위원회 의결시점부터 소위원회 결정을 취소하고, 보장 비용 징수생략
- 구성
 - 소위원회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

- 위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사회복지 전문가 및 공익대표자)로 구성

※ 위원구성 예시 : 위원장 기초생활 담당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 간사 기초생활 담당자, 사회복지과장, 감사과장, 시민단체 전문가 또는 학계전문가

○ 기능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심의
 - 보장비용,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 항목 관련 사항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 가구특성에 따라 차량을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
 -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등
 - 기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위원장 업무의 전결 범위내의 사항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세칙(안) 예시

제정 2010.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사항 중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신속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소위원회의 구성) ①소위원회는 4~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 1인과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과장급으로 한다

②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을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위원장은 ○○○국장으로 하며, 간사위원은 ○○○과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소위원회의 직무) ①소위원회는 법령이 정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국민기초생활사업안내)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한다.

1.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2.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3.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항목 관련 사항
4.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5.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등에 관한 사항
6.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등
7. 기타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의 전결 범위내의 사항

②제1항에 의해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소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행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의 위원임기)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간사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타) 이 세칙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Ⅲ 이의신청

1 이의신청제도의 개요(법 제38조 내지 제40조)

가. 이의신청 대상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신청 등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및 부작위(급여의 중지 포함)

나. 이의신청인

- 수급자,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

다. 이의신청 기한

- 시·도지사에게 대한 이의신청은 수급자 결정통보서, 급여변경 및 중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한 이의신청은 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라. 이의신청에 따른 시·도지사의 처분 등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의 효력의 소급

- 이의신청의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 및 재결은 그 효력의 소급에 대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은 한,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을 신청한 날(급여 중지 결정일 포함)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의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급

2 시·도지사에게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가. 이의신청 방법

-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법 제38조)
 -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 이의신청서 양식은 (서식11호)를 활용하여 작성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부 불필요
 -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취하를 한 경우
 - 보장기관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여 이의신청취하동의서를 받은 경우(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간주)

다. 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복명서를 작성토록 함
 - 그 소속 관계공무원은 이의신청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현장조사 3~4일 전에 미리 이의신청인, 담당공무원 등에게 현장조사 및 상담일자와 장소를 통보 및 협의하여 필요한 증거서류·증인, 기타 주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은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신청인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

○ 통지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 서면으로 통지
- 이의신청인에게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림

3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상기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준용함

-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

IV 각종 보고사항

1 조사 관련 보고

- 차상위계층 소득·재산현황 보고(시행규칙 제39조제3항, 매년 1회)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표 및 관리카드를 기초로 매년 9월1일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소득·재산현황」(서식 21호)을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용중인 경우 동 시스템에서 보고서 출력 가능

2 급여 관련 보고

-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집행 실적 보고
 -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실적 보고
 -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7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장시설의 장은 매월 5일까지 보장기관의 시설담당부서에 집행실적을 보고
 - 보장기관은 매분기마다 예산집행 추이를 점검하고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인
 - 보장기관은 전년도 보조사업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하여야 함
- 교육급여 관련 사항
 - 보장기관의 장은 매년 3월 개학 이전에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수급자 명단 통보
- 정부양곡 구매 관련 보고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의 분기별 정부양곡 구매실적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분기 첫째 달 20일까지 정기적으로 보고

3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관련 보고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자
 - 시장·군수·구청장은 별도의 관리대장(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 등 : 서식 25호 및 26호)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분기 첫달 15일 까지 전분기 현황(전분기 마지막달 20일 현재 기준)을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특별보호대상자의 이중급여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호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서식 제25호)
- 교정시설 출소자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자와 함께 보고
 - 보고양식은 (서식 25호) 참조 :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현황

제 8 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 I.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1. 취약계층의 범위
 2.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원칙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5. 노숙인 쉼터 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방안
 6. 노숙인에 대한 보호방안

- II.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1. 목적
 2. 급여신청의 특례
 3. 보장기관
 4. 보호방안
 5. 보호절차
 6. 급여 실시상의 유의사항
 7. 행정사항

- III.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1. 목적
 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방안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5.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운영방안
 6. 행정사항

I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등

1 취약계층의 범위

-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소불명 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자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인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자

2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원칙

가. 보장기관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민간후원단체 등을 “자립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실제거주 사실 확인, 정기적인 상담, 생활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나. 수급자격 요건

- 실제거주 요건
 - 수급권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수급자격’ 부여
 - ※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거주기간 산정 불필요

○ 지속거주 요건

-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다. 급여의 범위

- 보호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필요한 일부로 함

라. 관리 방안 : 주민등록번호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 주민등록식별 가능자(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노숙인쉼터 등) :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활용**
 - * 교정시설출소자 중 주거가 없는 경우도 해당

- 주민등록미식별 대상자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관리**

- 주민등록 확인 불가능자 등
- 신규대상자부터 적용(기존대상자는 2010년 상반기까지 전산관리번호로 전환)
 -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 의료급여 전산번호로 관리(의료급여 사업 안내 참조)

<예시>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 (의료급여 사업 안내)

구 분	전산관리번호 구성
○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p>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p> <p>①-②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p> <p>③ : 자료구분(5)</p> <p>④-⑥ : 일련번호</p> <p>⑦ : 성별(남:1,3 / 여:2,4)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1, 여:2) 2000년대 출생(남 :3, 여 :4)</p> <p>⑧-⑨ : 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p> <p>⑩-⑬ : 시설기호(보장시설 관리번호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한 4자리)</p> <p><예시> '04. 1. 15일 ○○시 감로당(2349)에 입소된 150번째 노인 (1930년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 305150-2042349</p>

마. 보고 : 제6편(각종 보고사항) 참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안>

구분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인쉼터 거주자			노숙인
			주민등록설정자		주민등록 확인불가자 등	
			쉼터소재	타지소재		
관리 수단	실제거주요건 (급여신청시)	최소 1개월거주	최소 1개월거주	-	최소 1개월 거주	-
	지속거주요건 (수급기간중)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지속 거주 사실 확인	-	지속거주사실확인	-
	관리방법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	주민등록 번호 사회복지 전산번호	-
급여	생계	○	○	×	×	×
	주거	○	○	×	×	×
	의료	○	○	○	○	×
	교육	○	○	○	○	×
	해산	○	○	○	○	×
	장제	○	○	○	○	×
	자활 조건부과	○	○	×	×	×
비고	생계급여방식	현금/물품/분할지급가능	현금/물품/분할지급가능	-	현금/물품/분할지급가능	이동시 긴급급여 ⁷⁴⁾

74) 긴급 생계급여 지급 기준 참조(155쪽)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주민등록법상 주소설정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

나. 보장기관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1) 급여신청 및 상담·조사 단계

-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조사 실시
 - 보장기관(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은 관할지역내에 보호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급여신청을 적극 안내
 - 관할 지역내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보호대상자와 상담하여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실제거주 사실’의 확인
 - 보장기관은 보호대상자가 관할 지역내에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 확인 방법(예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실조사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 (전화상담 포함)
 - 수급권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정기적인 거주사실 신고 (예 : 주 1회 등)
 -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자립후견인(통·반장, 민간복지단체·시설이나 노숙인 쉼터, 종교단체의 소속인사 등)의 ‘실제거주사실’ 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일지 등에 의한 판단 등
 - 최소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거주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
 - ※ 예) 2006.12.2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 2007.1.2일에 신청 가능
- 급여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
 - 보호대상자의 급여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제출토록 하여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등에 활용

-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수급자격 요건은 아니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및 선정 가능함에 유의
 - ※ 주민등록번호 확인방법 : 본인의 확인, 주민등록 재등록을 통한 확인, 경찰관서를 통한 확인 등
- 보장기관은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신청시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 타 시·군·구(주민등록지나 연고지)에서의 수급여부 확인 등 조사 실시
 -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있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 중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가족의 소재지나 연고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여 조사 의뢰
 - 타 시·군·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나, 타 시·군·구로 이동할 의사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보장기관간에 상호 보호방안을 긴밀히 협조하여 실제 거주지에서만 급여를 받도록 조치(이중급여 방지)
- 긴급급여의 활용
 -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실제 거주여부(최소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최장 1개월간 긴급급여 가능

(2) 급여의 결정 단계

- 급여의 결정
 - 전산 및 공부상 입수가 가능한 자료만으로도 우선 선정 및 급여할 수 있음
 - 선정후 선정기준에 초과하는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급여중지 및 반환절차 실시
- 급여결정 통지
 - 급여신청 후 30일 이내에 행함
 - 통지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기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 수급기간 중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의 일부 및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을 통보

(3) 급여의 실시 단계

- 급여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급여
-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통장이 없거나, 술·약물 등으로 탕진할 수 있거나, 월1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다음을 참조하여 생계비 지급처리
 -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금전으로 직접 지급(직접 지급하는 경우(서식 제26호)의 특별보호 관리대장에 의거 직접확인). 월단위가 아닌 주(週)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 금전 또는 동일가치(同一價値)의 물품, 식권, 숙박시설이용권, 상품권 등으로 나누어 지급. 월단위가 아닌 주(週)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4) 수급자 관리 단계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 급여결정 후 수급권자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통합조사표’를 작성하여 접수번호 우측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기하고,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별도 관리
- 수급기간 중 지속거주요건의 확인
 - 실제거주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 급여지급
 -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제30조의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거부한 때’로 간주하여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 실제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의 전부를 중지(실제거주지에서 수급자격 상실)
 - 지속거주요건으로 급여중지시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미지급
 - ※ 지속거주의 확인방법 : 실제거주(최소거주기간) 확인방법에 준함
- 실제거주지 변경시 관리방안
 - 실제거주지에서 타 시·군·구로 이동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기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타 시·군·구에서는 ‘최소거주기간 요건’에 관계없이 연결 급여
 - 타 시·군·구에서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받은 날을 거주지 변경일로 간주하여 연결 급여(※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해당부분 참조)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은 제외)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자

나. 보장기관 :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사회복지시설 중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미신고시설은 제외)’ 입소자는 시설급여 실시

5 노숙인 쉼터 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인 쉼터’에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자
 - 노숙인 쉼터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쉼터거주자도 포함
 -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공단의 보호시설 거주자’도 동일 처리

나. 보장기관 : 노숙인 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노숙인 쉼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기준’은 다음을 적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무료숙식을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를 제공

- 다만, 생계급여를 제외하게 되므로 조건부과는 생략(쉽터에서 제공하는 자활프로그램은 자율참여)

6 노숙인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일정한 주거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중 노숙인 쉽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 일정한 거주지로 이동을 하는 자

나. 보장기관 : 거주지 이동 전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보장기관간 협조)

-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인 쉽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토록 설득(급여혜택 설명)
 - 일정한 주거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실제거주지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여 쉽터나 쪽방 등으로 입주토록 유도하여 보호
 - 타 거주지로 이동을 원할 시에는 거주 이전 의사의 확인 및 기초 조사, 이동 예정지 관할 보장기관에 거주이전 예정사실 통보 및 이전 지원
- 신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인이 노숙인쉽터, 사회복지시설, 일반 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완료의 확인,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실시
 - ※ 노숙인이 실제거주지 관내에서 이동시에는 실제거주지 보장기관이 행함
 - 노숙인이 신거주지로 이동한 이후의 보호방법 및 절차는 앞의 '3~5항'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
 - 다만, 급여기준은 다음을 감안하여 적용
 - 신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은 노숙인이 신거주지로 이동한 즉시 우선 긴급 급여 실시
 - 긴급급여 실시 후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앞의 '3~5항'에 해당되는 급여기준을 적용

II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1 목적

- 교정시설 출소자 중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 임에도 급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여 사회적응 곤란, 재범유혹, 노숙인으로 전락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수립 필요
- 따라서 교정시설 출소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를 기초생활보장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출소 즉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 보호체계 구축

2 급여신청의 특례

가. 급여신청의 특례

- 교정시설의 출소자가 출소일로 부터 10일(공휴일포함, 1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근무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급여신청시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출소일을 기준으로 출소일부터 보호
 - 특례제도의 취지상 교정시설 출소자 모두에게 특례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적용하여 보호
 - ※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 부터 보호

나. 급여신청 특례적용 대상자의 범위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를 말함)에서 출소하는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 정지자 등 출소자로서 출소 후 10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 수급을 신청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출소예정자의 가족이 수급자로 이미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적용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출소 후 거주지 읍·면·동에 출소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수급자 가구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어 수급자로 보호 받음
 - ☞ 2인의 수급자 가구에 출소자가 있는 경우 3인 가구로 변경 보호됨
 - ※ 가구원 변동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에 유의

- 치료감호소(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충남공주소재) 출소자의 경우에는 치료감호소의 장이 출소예정자가 출소전에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장기관에 확인신청 할 수 있음
 - 출소 전에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출소일 부터 수급자로 결정하여 지원
 - ※ 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하는 수감자는 퇴소 후 즉시 병원입원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므로 사전신청의 특례 인정 필요

<보호절차>

- ① 치료감호소의 장은 출소예정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보장기관에 수급권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
 - ☞ 치료감호소의 장은 출소 60~30일 전에 보장기관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신청서(서식 28호)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서식29호, 교정시설작성용), 진단서와 함께 공문으로 요청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출소 7일전까지 수급권자 해당여부를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통보(서식35호)
- ③ 치료감호소의 장은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출소예정자가 출소하는 경우 보장기관에 출소사실 및 입소하는 병원에 관한 사항 등 수급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으로 즉시 통보
- ④ 보장기관은 치료감호소의 장으로부터 출소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수급자격이 되는 치료감호소의 출소자를 수급자로 보호 조치하고 수급자에게 통보

3 보장기관

가. 주거가 있는 경우(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

■ 출소자가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지(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출소자가 한국법무보호공단(구 한국갱생보호공단, 이하 “법무보호공단”)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출소 후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하고 수급자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를 법무보호공단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시행규칙 제33조)
- 출소자가 주거지와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상태인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출소자를 가정위탁보호형태(가정에서 보호하거나 자원봉사형태로 보호)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출소 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하고 수급자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를 보호자의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시행규칙 제33조)
- 보장가구(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출소자의 보호 및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나. 주거가 없는 경우(주민등록지가 없는 경우)

■ 출소자가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주거지(교정시설 소재지 등)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주거가 없는 법무보호공단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소할 법무보호공단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주거가 없는 출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상태인 경우에는 실제거주지(의료기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주거가 없는 출소자를 가정위탁보호형태(가정에서 보호하거나 자원봉사형태로 보호)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주거지(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 주거가 없는 출소자가 주거를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출소자가 주거를 새로이 정하기 전에는 실제거주지(교정시설소재지 또는 의료기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4 보호방안

가. 가구보호

(1) 가구보호 대상

- 가족(보장가구)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
- 가정위탁의 형태로 보호받는 경우
 - 교정시설의 매개역할을 통하여 종교인 등 개인가정에서 가정위탁보호 형태로 생활하는 경우

(2) 가구보호 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보호 방법에 따라 보호

나. 보장시설 등 위탁보호

(1) 보호원칙

- 보장기관은 교정시설 출소자가 주거가 없거나 가족(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가 보호 및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보장시설 등에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음
 - 보장시설 등이라 함은 노인·장애인·아동·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사회 복지시설과 법무보호공단, 노숙인쉼터 등 주거생활시설을 말함
- 그러나 주거가 없는 출소자가 보장시설 등에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위탁하여 보호할 수 없음

- 다만, 정신질환자, 의사무능력자 등은 보장시설 등에 입소조치 가능

(2) 보장시설 등 위탁보호 대상

- 출소자가 주거가 없어 보장시설 등에 입소를 원하는 경우
 - 다만, 주거가 없는 출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되, 보장기관은 보장시설 등에 보호를 위탁하고, 보장시설 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출소자를 보호토록 조치
- 출소자가 주거는 있으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의 보호 거부·기피시
 - 가족이 보호(또는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보장단위에 속하는 가족이 있으나, 당해 가족이 보호(또는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보장가구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보호 및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위탁보호의 방법

- 근로능력이 있는 자 : 법무보호공단, 부랑인시설, 노숙인 쉼터 등에 입소 보호
 - 1차적으로 법무보호공단, 2차적으로 부랑인시설, 노숙인 쉼터에 입소토록 유도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가 법무보호공단과의 사전면담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 조치
 - 보장기관은 수급신청 상담시 본인의 의사 및 교정시설의 장의 상담 결과를 토대로 입소할 시설을 정하여 보호를 위탁
- 근로능력이 없는 자 : 노인·장애인·아동 등 해당 보장시설에 입소 보호
 - 아동은 아동보호치료시설(교호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보호
 - 치매, 중증질환 노인 등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 보호
 - 정신질환자 등은 정신병원,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 보호

-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는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 보호
- 기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부랑인 시설에 입소 보호. 다만, 교정 시설에서의 행형성적이 우수한 모범수이거나 초범자인 경우 등은 일반 보장시설에 입소 보호 가능

(4) 위탁보호 절차

(가) 보장시설 등 입소

- 출소자는 보장기관에 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 제출

(나) 법무보호공단 입소

- 법무보호공단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입소신청서 제출 불 필요
- 보장기관은 법무보호공단입소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시설소재지 보장기관에 수급자 관리 업무를 이관

(5)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위탁보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법 제50조)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에 입소한 교정시설 출소자가 보장시설내에서 폭행, 협박, 절도 등의 범죄행위를 하거나 음주, 소란 등으로 기강을 문란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에 출소자의 퇴소를 요청할 수 있음
- 보장시설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최저기준이상의 급여, 차별대우의 금지, 종교상 행위 강제 금지 등

5 보호절차

가. 출소자의 출소전 교육(교정시설)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특례제도에 대하여 안내
 - 급여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수급권자 자격 및 신청시 구비 서류 등
 - 급여내용, 소득 및 재산신고, 세대원 변동 및 거주지 이동 등 신고사항
 - 출소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사회복지전담 공무원)를 방문하여 상담해야 함을 반드시 고지
 - 특히, 교정시설 출소자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써 출소후 10일 이내에 방문하는 자에 대해서만 특례가 인정됨을 안내
 - 출소예정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지원

나. 급여신청(출소자)

- 출소 후 10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방문하여 급여신청
 - ※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 부터 보호
-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p.13 참고
 - 교정시설 출소증명서(출소일 확인을 위하여 필요)

다. 소득·재산 등 조사(보장기관)

-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산조회 등을 실시하고,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판단
 - 출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조사결과 수급자에 해당하면 신청일을 출소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급여 지급

○ 조사수행 주체

- 주거가 없는 출소자 : (실제주거지)시장·군수·구청장
- 주거가 있는 출소자 : (주민등록지)시장·군수·구청장

※ 실제 거주지(교정시설 또는 의료기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 협조 요청시, 출소자의 주민등록말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조사방법

- 보장기관은 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및 근로능력에 관한 사항을 조사

라. 수급자 관리(보장기관)

-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한 출소자가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경우 “교정시설출소자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가능

마. 수급자 재수감 통보 등(교정시설)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자가 재수감되는 경우 동 사실을 재소자 주거지 보장기관에 즉시 통보
- 교정시설 신규 수용자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즉시 주소지 보장기관에 수용 사실을 통보

6 급여 실시상의 유의사항

○ 급여개시일

- 보장기관은 출소 당일 수급자로 선정조치. 이 경우 급여개시일은 출소일임

○ 급여의 제한

- 법무보호공단, 노숙인쉼터 등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보장시설 제외)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제한
-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건부생계급여 실시

7 행정사항

- 교정시설의 장은 교정시설 수용자 중 수급자가 있는 경우 즉시 주소지 보장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 교정시설의 장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를 의뢰토록 함
- 보고 : 제6편(각종 보고사항) 참조

III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1 목적

- 지역사회와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노령, 장애, 질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
 - 보장기관은 해당 주민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적용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여 적극 보호
 -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하고, 기초노령연금 등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방안 강구

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방안

가. 기본운영 방향

-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수급권자 보호의뢰 권한’ 부여
 -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관할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 주민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
- 보장기관은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이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사항을 본인 및 사회복지사에게 통보

나. 민간 사회복지사의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다음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

복지사

-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파견·주간보호·단기보호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실비노인복지시설
-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숙인쉼터 및 부랑인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종교단체·민간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또는 단체 소속의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민간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학 관련 교수 또는 사회복지사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보호의뢰 대상자

- 노령·장애·질환·실직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
- 주민등록말소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등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생활여건상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질환교육 등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모든 저소득 가구 포함

라. 저소득주민에 대한 보호의뢰 업무처리 절차

(1) 민간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주민의 사전 생활실태 확인 후 보호의뢰

- 민간 사회복지사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의뢰시 해당 주민의 가족사항, 주거·생활실태, 상담내용 등 사전에 확인된 기본사항을 보장기관에 제출 (서식 호 참조, 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 가능)

(2) 보장기관의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등 확인조사(시·군·구/읍·면·동)

- 생활실태조사
 - 보장기관은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확인토록 조치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민간 사회복지사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동 가구의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
- 필요시 직권신청
 - 생활실태 확인결과 급여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하고, 통상적인 신청조사 실시
 - ※ 긴급생계급여 실시 : 급여실시 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에 의하여 긴급급여 실시

(3) 수급권자 해당여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해당가구의 보장적합 여부를 결정
 -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 선정, 급여 실시 (특례보호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우선 보호 조치(추후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검토)
-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차상위계층으로 관리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적극 부여
 -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하여는 기초노령연금 적용여부를 확인
 - 저소득 장애인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은 교육비·보육료 지원가능 여부 확인

(4) 조사결과의 통보 및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해당 주민 및 보호의뢰한 사회복지사에게 조사결과 및 수급자 선정여부에 대한 결정결과를 반드시 통보(서식 호)
 - 해당주민에게는 서면, 사회복지사에게는 서면/팩스/이메일 등으로 통보
- 해당 저소득주민에 대한 조사결과를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분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가. 기본운영 방향**

- 보장기관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나. 협력대상 공공기관 및 저소득가구 선별·통보기준

- 협력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보건지소)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의 지방조직(지사)
 -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교육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안정센터 등
- 저소득가구 선별·통보기준 설정
 - 보장기관(시·도/시·군·구)은 각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저소득층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과도한 명단 통보에 따른 읍·면·동 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을 방지
 - 선별기준은 저소득층 선별의 용이성, 지역별 특성, 읍·면·동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대상자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설정
 - ※ 다음의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기관과의 선별·통보기준 협의(예시)」를 참고하여 협의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기관과의 선별·통보기준 협의(예시)

□ 선별·통보 기준의 결정

- 전기·수도·가스 요금의 장기 채납자 중 「사용량 또는 사용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채납자의 명단만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협의
- 통보기준은 각 보장기관이 지역별 특성, 전기·수도·가스의 소비실태(최저생계비중 광열·수도비 구성내역 참고), 읍·면·동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정
 - 선별·통보 기준(예시)
 - 전기 : 월평균 사용량이 주택용 208kWh(확인) 또는 월평균 사용금액 25,000원 이하인 세대 중 장기채납으로 공급중단된 세대
 - 수도 : 월평균 사용금액 17,000원 이하 세대 중 6개월 이상 채납세대
 - 명단 통보 결과 통보자 수가 과다할 경우 기준을 하향 재조정

<2010년 최저생계비 중 전기·수도·가스요금 구성표(4인가구 기준)>

품 목	기간	사용량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기요금	1개월	사용량(kWh)	208	208	187
		요금(원)	24,720	24,720	20,410
수도요금	1개월	요금(원)	15,660	17,030	11,360
난방비(LNG)	1개월	사용량(m ³)	67.4	67.4	-
		요금(원)	50,960	49,320	-

□ 협의주체

<공급기관 측>

- 채납자에 대한 전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사용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세대의 명단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최하 단계의 지방조직
 - 전기 : 「한국전력공사 - 지사 - 지점」 체계의 ‘지사’
 - 수도 :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사업소」 체계의 ‘수도사업소’
단, 상수도사업본부가 없는 시·도는 ‘시·군·구 상수도 담당부서’
 - 가스 : 「○○도시가스(본사) - 지역관리소」 체계의 ‘본사’
(가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보장기관 측>

- 공급기관측 협의기관의 관할범위에 부합하는 보장기관
 - 전기 및 가스 : 시·도
 - 수도 : 시·군·구

□ 구체적 적용예시

- 전기
 - 시·도지사가 전력공사 지사장과 협의하여 월평균 사용량이 주택용 208kWh(또는 금액이 2010년 기준 25,000원) 이하인 세대 중 3개월 이상 채납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아 시·군·구(읍·면·동)에 배포
- 수도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월평균 채납요금이 가정용 17,000원 이하인 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아 읍·면·동에 배포

다. 저소득가구 명단통보

- 협력대상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장기관과 협의된 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명단을 보장기관에 통보
- 보건소(보건지소)
 - 방문간호사업 수행과정에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을 알게된 경우 해당가구의 생활실태를 (서식 34호)에 기재하여 시·군·구(읍·면·동)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해당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
 - 요금 체납으로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게 될 가구 중 사용액이 보장기관과 협의된 기준 이하인 가구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그 주소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
-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교육청
 - 가정생활 곤란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점심을 굶는 학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부모성명 등을 기재하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관할지역내 보험료 장기체납자, 보험료 납부예외자 중에서 사실상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시·군·구에 통보
- 고용안정센터
 - 실업급여의 지급 종료월에 해당자 인적사항을 시·군·구에 통보

라. 명단통보에 따른 업무처리

- 생활실태 확인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호의뢰 요청 또는 사실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등을 조사토록 조치
 - ※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 조사방법은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의 해당부분 참조

- 수급권자 해당여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해당 가구의 보장적합 여부를 결정
 - ※ 구체적인 보호방법은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호의뢰 권한 부여”의 해당부분 참조
- 결과의 통보 및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른 보호여부 결정 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가. 방문보호제도의 의의

-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단독가구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보호방안

나. 실시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통·반·이장의 가구방문을 통하여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보호」를 강구토록 조치
 - ※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야쿠르트 배달 사업과 병행 실시
 - 읍·면·동장은 통·반·이장으로 하여금 「방문대상 가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토록 지시(통장, 이장회의 : 월 2회)
 - 통·반·이장은 방문결과 「읍·면·동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에 그 사실을 즉시 신고
- 읍·면·동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응급조치, 수급자 선정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

다. 방문대상 가구 선정

- 저소득 단독 가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가구

-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문밖 출입이 어려운 가구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진 가구
 - 알콜중독 등으로 의사능력, 분별력이 미약한 가구
- 미성년자가 있는 한부모가구

라. 가구 방문시 확인 및 신고사항

- 통·반·이장은 이웃주민 또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
- 주민의 계속 거주여부(장기출타 여부 등)
 -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급중단 여부
 - 관리비 등 체납여부 등
 - 기타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
- 통·반·이장은 방문결과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읍·면·동에 즉시 신고
- 계속 주거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 경우
 - 이웃주민에게 이야기 없이 장기간 출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우편물, 신문, 우유, 야쿠르트 등이 계속 쌓여 있는 경우
 -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급이 중단된 경우
 - 관리비 등이 장기간 체납된 경우
 - 기타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마. 확인조사 및 보호조치

- 통·반·이장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확인토록 지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우선 전화(복지전화) 등을 통한 유선 확인
 - 전화확인이 안되는 경우 직접 가구방문 실시
 - 문이 잠겨 있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여 함께 확인
-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실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해당 주민이 병원후송 등이 필요한 응급상황인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를 구하여 급여신청 및 긴급급여 등 실시

5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운영방안

가. 실무간담회 운영 방향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민·관 연계보호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사 등으로 실무간담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실무간담회는 시·군·구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시 읍·면·동 등에서도 운영 가능

나. 실무간담회 참석범위

- 협의사항에 따라 다음 대상자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 민간 복지기관 및 대학, 종교기관, 민간단체 등의 사회복지사 등
 - 보건기관의 방문간호사업을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 지역의 전기·수도·가스 등 공급기관의 업무담당자
 -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안정센터의 업무담당자
 - 지방교육청의 결식아동 점심지원 업무담당자

다. 실무간담회 운영방법

- 논의사항
 - 지역사회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실천사항
 - 법령 및 지침의 범위내에서 기초생활보장업무의 탄력적 운영방안
 - 차상위계층 조사에 관한 협력방안
 - 기타 지역사회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업무 개선사항 등
- 실무간담회 운영결과의 활용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자체 개선 조치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은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

6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 권한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지)소, 전기·수도·가스 등 공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방교육청 등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군·구 통보 등 협조사항 적극 협의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민간 사회복지사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의뢰 또는 사실통보를 받은 경우와 조사·처리를 한 후, 그 사실을 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 별도 관리(서식 36호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상회보, 지역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

제 9 편 서 식

- (서식1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별지제1호서식)
- (서식2호) 소득·재산 신고서(공통서식 별지제1호의2서식)
- (서식3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공통서식 별지제1호의3서식)
- (서식4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공통서식 별지제2호서식)
- (서식5호)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 신청서(공통서식 별지제3호서식)
- (서식6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공통서식 별지제6호서식)
- (서식7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공통서식 별지제7호서식)
- (서식8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공통서식 별지제8호서식)
- (서식9호)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공통서식 별지제10호서식)
- (서식10호)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차)(공통서식 별지제11호서식)
- (서식11호) 이의신청서(공통서식 별지제12호서식)
- (서식12호)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 (서식13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 (서식14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 (서식15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 (서식16호) 고용·임금확인서
- (서식17호) 무료임대확인서
- (서식18호) 사실조사복명서
- (서식19호) ()년도 ()분기 교육급여 수급자 명단 통보 및 학비지급 요청서
- (서식20호) ()년도 ()분기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 실적보고
- (서식21호) ○○년 차상위계층 소득·재산현황(○인가구)
- (서식22호)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 (서식22호) 수급자 증명서(시행규칙 별지제3호2서식)
- (서식22-1호)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 (서식23호) 지출실태조사표
- (서식24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서식25호) ○○년 ○○분기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현황
- (서식26호)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
- (서식27호) 노숙자 긴급급여 관리대장
- (서식28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 신청서
- (서식29호)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교정시설 작성용)
- (서식30호) 무연고자 확인서
- (서식31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 (서식32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안내문
- (서식33호) 교정시설출소예정자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
- (서식34호)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서
- (서식35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 (서식36호)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자 관리대장
- (서식37호) 통합조사 상담지
- (서식38호) 복지대상자 사정표
- (서식39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 (서식40호) 재판정 신청서(고시 별지제1호서식)
- (서식41호) 생계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시행규칙 별지서식5호)
- (서식42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지정동의서
- (서식43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점검표(시군구보관)
- (서식44호) 이행급여특례수급자 관리 명부

[서식1호-공통서식 별지제1호서식]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input type="checkbox"/> 신규(제공)신청 <input type="checkbox"/> 변경신청 <input type="checkbox"/>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 ¹⁾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부양의무자 ²⁾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 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 ³⁾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안 내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 ⁴⁾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 타 관계인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								
		영유아보육·유아학비	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후견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 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5일, 영유아보육·유아학비 30~60일, 기초노령연금 30~60일, 장애인활동지원 30~60일, 장애인연금 30~6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이내입니다.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①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②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③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의거 해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급여가 중지됩니다. 3-2.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나 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와 「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또는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3-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법」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및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스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정지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3조,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23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8.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견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견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 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p>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의 경우)</p>
<p>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제활용품))</p>

[서식2호-공통서식 별지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원 성명 ¹⁾							
소득 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원	원	원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²⁾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 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선 박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입목재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항공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어업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명() <input type="checkbox"/> 용도 (생업용/장애이용/자가용)					
	임차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전·월세보증금(원) <input type="checkbox"/> 상가보증금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동 산	<input type="checkbox"/> 소 (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돼지(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가축(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종묘(원) <input type="checkbox"/> 기계·기구류(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공증사채	<input type="checkbox"/>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가구특성 지출요인 ³⁾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input type="checkbox"/>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원)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원) <input type="checkbox"/>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3호-공통서식 별지제1호의3서식]

[앞면]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 계	동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 1)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의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증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10)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 「유아교육법」 제26조의4 제4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유아교육법」 제26조의2 및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최초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장애인연금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6제5항, 「유아교육법」 제26조의3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4호-공통서식 별지제2호서식]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시설 입소 (이용) 대상자	01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소					희망입소 기간	
	02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소					희망입소 기간	
입 소 (이 용) 사 유 내 容	노인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요양시설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⑤ 기타()						
	아동복지시설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자립지원시설 ⑤ 아동단기보호시설 ⑥ 아동상담소 ⑦ 공동생활가정 ⑧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① 지적장애인·뇌병변장애인생활시설 ②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생활시설 ④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생활시설 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⑥ 장애영유아생활시설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① 모자보호시설 ② 부자보호시설 ③ 모자자립시설 ④ 모자일시보호시설 ⑤ 미혼모자시설 ⑥ 공동생활가정(미혼모자, 모·부자, 미혼모) ⑦ 기타()						
	여성복지시설	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② 기 타()						
	부랑인복지시설	① 부랑인복지시설 ② 기 타()						
	기 타							
입 소 (이 용) 사 유								
통지방법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시지서비스(SMS)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div>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5호-공동서식 별지제3호서식]

복지대상자 [<input type="checkbox"/> 해산급여 <input type="checkbox"/>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급여 대상자와의관계	
	주 소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해산(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input type="checkbox"/> 출산 <input type="checkbox"/> 사산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통지방법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시지서비스(SMS)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기타()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div>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같음할 수 없습니다.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6호-공통서식 별지제6호서식]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input type="checkbox"/> 결정 <input type="checkbox"/>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신청인 /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보호 대상 자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기타()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		보장구분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011.11.1~2011.12.31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 서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장애등급 변경 등으 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 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받으 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액	연금액	성 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원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 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활동지원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활동지원 등급과 지급예정 월 한도액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지원등급	등급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활동보조		[] 긴급활동지원		[] 방문목욕
월 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효기간 ~				
수급자격심의위원회회의건					

3.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4.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 합으로 계산됩니다.
 ※ 단, 긴급활동지원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5. 법 제33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의 수급자는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6%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되고,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7. 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총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8. 활동지원수급자격의 갱신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본인부담금 및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금액 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제공기관	※이용안내문 참조
-------	------------------------	------	-----------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아래의 사업별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해야만 익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노동돌봄종합서비스** : (1차 납부 기한) 매월 15일~27일, (2차 납부 기한) 익월 1일~10일까지. 이 경우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카드 수령봉투에 인쇄된 납부계좌 또는 위 본인부담금 부분에 인쇄된 납부계좌로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외의 사업은 제공기관에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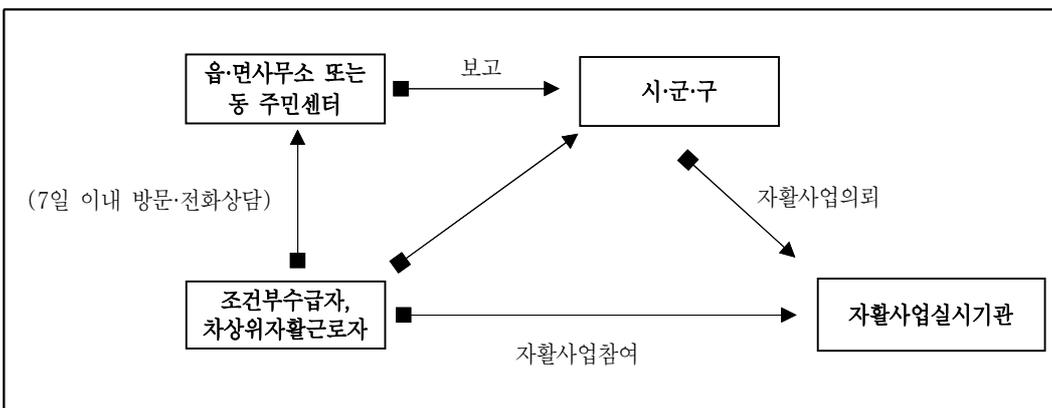
□ 부적합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input type="checkbox"/>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복지서비스·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 변경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input type="checkbox"/> 가구의원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input type="checkbox"/>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정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input type="checkbo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 중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부양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input type="checkbox"/>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input type="checkbox"/>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받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실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국적상실 <input type="checkbox"/> 국외이주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 경우 1급)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기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p>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p> <p>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p>1) 기초생활보장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p> <p>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유아보육·유아학비, 노인돌보미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p> <p>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p> <p>4)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p> <p>5)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보건소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신청</p> <p>6)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p>3.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200px;">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200px;">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조건부수급자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구분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조건부과제외자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조건부과제외자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조건부과제외자
	특이사항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일부보장()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수급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장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가구원은 근로능력·가구여건·취업상태 등이 기준에 해당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조건부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중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선정된 수급자임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원은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셔야 합니다.(전화상담도 가능) ○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건강문제 등)가 있는 경우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p>1.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p> <p>2.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생계비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제2항)</p> <p>※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경우 생계비가 다시 지급됩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7호-공동서식 별지제7호서식]

[1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전화 번호							
접수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세대주와의 관계		취 업 상 태			전화 번호							
보장 신청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 보장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 소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제출서류는 신청시 제출할 서류를 표기함			주 소	세대주와의 관계		취 업 상 태			전화 번호							
구 분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 질병)	근로능력 유무·사유	학력· 재학여부 (학교명, 학년반)	자격증 (경력)	복지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직업관련 구분	직종	직업	고용 형태	직장명	전화 번호	의료보장	보장상태
가구원	의																
	의																
	의																
	의																
	의																
	의																
부양 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가구 원수	직업	소 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재산	소득 인정액	월평균 지원금	부양능력 판정	사 유		
조사 결과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부양의무자·성명)		<input type="checkbox"/> 근부무 () <input type="checkbox"/> 해외이주 () <input type="checkbox"/> 복역 () <input type="checkbox"/> 부양능력자 <input type="checkbox"/> 행방불명·가출실종 () <input type="checkbox"/> 부양기피·거부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주 소	전화번호	가구 원수	직업	소 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재산	소득 인정액	월평균 지원금	부양능력 판정	사 유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면

소 득	성명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	
		근로소득	임업소득	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농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부양비	기타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성명	건축물	도지	선박/항공기	어업권/임목재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회원권 등	동산					
		<input type="checkbox"/> 건물(㎡, 천원) <input type="checkbox"/> 주택(㎡, 천원) <input type="checkbox"/> 시설물(㎡, 천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천원)	<input type="checkbox"/> 논(㎡, 천원) <input type="checkbox"/> 밭(㎡, 천원) <input type="checkbox"/> 대지(㎡, 천원) <input type="checkbox"/> 임야(㎡, 천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천원)	<input type="checkbox"/> 선박(천원) <input type="checkbox"/> (대 천원) <input type="checkbox"/> 항공기(천원) <input type="checkbox"/> (대 천원)	<input type="checkbox"/> 어업권(천원) <input type="checkbox"/> 임목재산(천원)	<input type="checkbox"/> 평가액(천원) <input type="checkbox"/> 지중연식() <input type="checkbox"/> 차량번호() <input type="checkbox"/> 폐기량() <input type="checkbox"/> 용도()	<input type="checkbox"/> 전월세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상가보증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예금·적금(천원) <input type="checkbox"/> 보험(천원) <input type="checkbox"/> 주식(천원) <input type="checkbox"/> 현금·수표·어음 등(천원)	<input type="checkbox"/> 회원권(천원) <input type="checkbox"/> 문양권(천원) <input type="checkbox"/> 조형물인수권(천원)	<input type="checkbox"/> 가족(마리, 천원) <input type="checkbox"/> 종모·임목(천원) <input type="checkbox"/> 기계·기구류(천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천원)					
	성명	기초공제예													
	성명	가구특성별 급여지출	강예인	근로사업소득 학생	지활공제	성명	장기저축	생활준비금	추가기본공제	정로연금부채 (저소득노인)					
		원				제 산 공 제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성명	금융기관대출금	금융기관의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대출금	임대보증금	공중사채(관공문호해-조정소시에 의한 사채)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3면

주거실態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대() <input type="checkbox"/> 미등기주택(주거소유관리대상 등재자) <input type="checkbox"/> 전세(무임차) <input type="checkbox"/> 전세(보증금 있음) <input type="checkbox"/> 월세(월) <input type="checkbox"/> 월세(일) <input type="checkbox"/> 보증부월세(보증금 있음) <input type="checkbox"/> 보증부월세(보증금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가 인정 <input type="checkbox"/> 가경위탁 <input type="checkbox"/> 보강기판 채공주거 <input type="checkbox"/> 그룸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미등기주택()																																																				
건축상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긴급보수 <input type="checkbox"/> 편의도모보수 <input type="checkbox"/> 도배 등 환경개선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거급여판정	<input type="checkbox"/> 월세(임대료) <input type="checkbox"/> 유자수선비(현금급여, 잠수선) <input type="checkbox"/> 전세차감대여 <input type="checkbox"/> 주거인정지원비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제외 <input type="checkbox"/> 안전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임상생활 <input type="checkbox"/> 가족생활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관계 <input type="checkbox"/> 경제																																																				
가구유구	<input type="checkbox"/> 교육 및 직업 <input type="checkbox"/> 생활환경 및 편의보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장구분	<table border="1"> <tr> <th colspan="3">소득</th> <th colspan="3">재산</th> <th colspan="4">환산대상</th> </tr> <tr> <th>소득액</th> <th>공제액</th> <th>소득평가액</th> <th>재산종류</th> <th>인정부족액</th> <th>공제액</th> <th>순재산액</th> <th>환산대상재산액</th> <th>소득환산액</th> <th>소득환산액</th> <th>소득인정액</th> </tr> <tr> <td>원</td> </tr> <tr> <td></td> </tr> </table>										소득			재산			환산대상				소득액	공제액	소득평가액	재산종류	인정부족액	공제액	순재산액	환산대상재산액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소득			재산			환산대상																																														
	소득액	공제액	소득평가액	재산종류	인정부족액	공제액	순재산액	환산대상재산액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보장결정	<table border="1"> <tr> <th>보장결정</th> <th>의견</th> <th>사유</th> </tr> <tr> <td><input type="checkbox"/> 적합</td> <td><input type="checkbox"/> 부적합</td> <td><input type="checkbox"/> 소득인정액 초과</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명</td> <td><input type="checkbox"/> 부적합</td> <td><input type="checkbox"/> 소득 초과</td> </tr> <tr>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td> <td><input type="checkbox"/> 재산 초과</td> </tr> </table>										보장결정	의견	사유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소득인정액 초과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소득 초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재산 초과																															
	보장결정	의견	사유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소득인정액 초과																																																		
	<input type="checkbox"/> 명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소득 초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재산 초과																																																			
기초생활보장	<input type="checkbox"/> 연소(18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연로(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임신 <input type="checkbox"/> 실직·미취업 <input type="checkbox"/> 사업실패 <input type="checkbox"/> 저임금·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양육·간병·보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보육료(0~4세)·유아교육료(3~4세) <input type="checkbox"/> 만5세아 보육·유아교육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육료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아동보육 <input type="checkbox"/> 병과 후 보육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긴급지원 <input type="checkbox"/> 학업지원 <input type="checkbox"/> 재택지원 <input type="checkbox"/> 상담지원 <input type="checkbox"/> 발달지원 <input type="checkbox"/> 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지원()																																																				
	<input type="checkbox"/> 부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모기출 <input type="checkbox"/> 부모사망·모기출 <input type="checkbox"/> 부가출·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모장애 <input type="checkbox"/> 부모폐질 <input type="checkbox"/> 부모이혼 <input type="checkbox"/> 부모노령 <input type="checkbox"/> 부모복역 <input type="checkbox"/> 기타()																																																				
친부·친모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사망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기출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유기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생산·불명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해외장기체류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기복역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미혼부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조손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선전상·유전성, 약물중독, 출산시 의료사고, 원인불명, 기타 <input type="checkbox"/> 후전상: 질병, 비행성, 퇴행성, 영양부족,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상, 기타 사고, 음향의상상난상, 미상, 기타																																																				
노인복지	<input type="checkbox"/> 기초노령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8호-공통서식 별지제8호서식] (갑-1)

세대/분기		세대주 통합관리카드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통합 사항					주 소 변 통 사 항							
세대주 및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변동일자	변동사유	주 소	전화번호	전 임 일 자							
가구원 사항														
구분		세대주 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구원별 보장구분	가구원별 지원금액	복지급여계좌 (금융기관명)	개인별소득		소득합계		자 산		
보장 가구		본인						전가구원 소득액	전가구원 소득액	전가구원 소득액	전가구원 소득액	재산총액	재산총액	
								소득공제액	소득공제액	소득공제액	소득공제액	공제총액	공제총액	
									전가구원 소득액	전가구원 소득액	전가구원 소득액	전가구원 소득액	기초공제액	기초공제액
									1인당평균 소득액	1인당평균 소득액	1인당평균 소득액	1인당평균 소득액	인정부채액	인정부채액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액
보장구분사항														
내 용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 자활지원, 부양인)		이동정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개시일														
종결일														
정제일														
상설일														
보장유형(등급)														
보장가구원수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갑-2)

관리번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주
	(작성일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기초생활 보장사 유	<input type="checkbox"/> 연소(18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연로(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질병(병명:)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 등급:) <input type="checkbox"/> 임신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한부모(2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실직·미취업 <input type="checkbox"/> 사업실패 <input type="checkbox"/> 저임금·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양육·간병·보호 <input type="checkbox"/> 기타() (해당되는 경우 체크)		
부양의무자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유무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없음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명), 부양능력 미약(명), 부양능력 있음(명)	<input type="checkbox"/>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input type="checkbox"/> 근북부 <input type="checkbox"/> 해외이주 <input type="checkbox"/> 복역 <input type="checkbox"/> 보장불명·기출·실종 <input type="checkbox"/> 사망()	
특례수급자	<input type="checkbox"/> 특례유형() <input type="checkbox"/> 특례수급자(가구원 전체, 가구원 일부) <input type="checkbox"/> 특례급여 개시일() <input type="checkbox"/> 특례급여 종료일()		
근로능력판정	판정사유		
긴급급여	<input type="checkbox"/> 급여액() <input type="checkbox"/> 급여일시() <input type="checkbox"/> 급여사유()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수 ()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월세임차료 <input type="checkbox"/> 유지수선비(월급여, 점검수선) <input type="checkbox"/> 전세자금대여 <input type="checkbox"/> 주거안정지원비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제외		
교육급여	성 명	학 교 명	성 명
		학 년 반	학 교 명
재산급여	<input type="checkbox"/> 재산자 () <input type="checkbox"/> 재산일자 ()	<input type="checkbox"/> 장 제 급 여 <input type="checkbox"/> 사망자() <input type="checkbox"/> 사망일자()	
각종 감면제도	복지 전화	<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사유:)	시청료감면고개번호
	상하수도요금	쓰레기종량제분부	기타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3)

관리번호	세대주	자활지원 대상자						
성 명	조건부수급자 구분							자활의지
	자활역량평가점수	지활방향	근로여부	가구특성	유형			
성 명	자활사업							조건 이행여부
	내용	의뢰기관	사업명	참여기간	급여(임금)	이행여부	급여중지일(재개일)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갑-4)

관리번호	세대주										
영유아보육·유아학비 대상자											
(작성일자 :)											
보육료 ·유아학비 감면아동	성명	보육시설·유치원명	이용기간	성명	보육시설·유치원명	이용기간	성명	보육시설·유치원명	이용기간	성명	시설전화번호
(작성일자 :)											
이동·청소년 복지 대상자											
이동급식	성명	지원항목	지원기간	비고	성명	지원항목	지원기간	비고			
소년소녀 가정	사유	<input type="checkbox"/> 부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모가출 <input type="checkbox"/> 부사망 모가출 <input type="checkbox"/> 부가출 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모장애 <input type="checkbox"/> 부모폐질 <input type="checkbox"/> 부모이혼 <input type="checkbox"/> 부모복역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육구 및 문계	보호 방향		시 설 입 소						
					시설명	소재지	입소일자	입소기간			
청소년 특별지원	성명	지원항목	지원기간	비고	성명	지원항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갑-5)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한부모가족 사유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사망	<input type="checkbox"/> 배우자가출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유기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생사불명	<input type="checkbox"/> 배우자해외장기체류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협부모(25세 미만) (해당되는 경우 체크)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기복역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이혼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미혼부	<input type="checkbox"/> 조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학비지원	성명	학교명	학년반	성명	학교명			학년반			
아동양육비 지원	성명	지원기간	성명	지원기간	성명			지원기간			
시설임소 (이용)	대상자	시설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이용)일자			입소(이용)기간		
가구별 자산 형성계좌지원	성명	계좌명	계좌개설일	계좌 (찾는 날짜)	탈수금등 성공수당	성명		3차			
						1차	2차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의료비부담액	성명	1차	2차	3차	4차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자립촉진수당	성명	1차	2차	3차	성명	1차		2차		3차	
						연월일	금액	연월일	금액	연월일	금액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1)

관리번호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애인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작성일자 : 성명 또는 인)		
장애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보장구지원()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 <input type="checkbox"/> 취업일선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이동수당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학비 <input type="checkbox"/> 자급대여 <input type="checkbox"/> 시설입소 <input type="checkbox"/> 활동보조서비스	
중합장애등급	심사원료여부	중복장애유무
주 장 애		
진단이력	유형	등급
장애등록사항	심사원료여부	결정일자
	장애판정기관	장애판정기관
	진단이력	유형
	부 장애	신천성 () □ 후천성 ()
장애사유	발생연령	발생연령
	보장구 종류	교부일자
	취업일선 직종	기관
	학비 대상자	학교명
	장애수당 대상자	지급개시일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급개시일자
속지원	대상자	시설명
	대상자	소재지
자동차표지	보행상 장애유무	발급일
	치량번호	치량
	소유자	소유자
	배기량	배기량
	반납일자	반납일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발급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발급
	발급일	발급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입소(이용)일자	입소(이용)일자
	입소(이용)기간	입소(이용)기간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2)

관리번호	장애편인금 대상자										세대주
(작성일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애편인금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지급개시일	지급정지		자격상실		해당구분		수급사항	
				일자	사유	일자	사유	장애인단독	장애인부부	기초급여	진액 감액(원)
이력	번동내역	개인전향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input type="checkbox"/> 수급결정여부	<input type="checkbox"/> 연금액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득·재산·부채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이력	연금내역	연금액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부과금액	사유
		변동사유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input type="checkbox"/>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수급권 소멸 발생 미신고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input type="checkbox"/> 거짓 자료제출 <input type="checkbox"/> 조사·질문 거부·망해 또는 기피, 거짓 답변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3)

관리번호											세대주
노인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											
(서명 또는 인)											
구분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검진일자	조치 의견	작성일자 직명	성명	검진결과(정상여부 등)				
건강 진단	1차 검진										
	2차 검진										
취업일선	대상자 성명	희망직종	취업일자	취업기관	비고						
시설입소 (이용)	대상자 성명	시설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이용)일자	입소(이용)기간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4)

관리번호				세대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지급개시일	지급정지일 및 지급정지 사유	상실일 및 상실 사유	수급사항			
					해당구분	지급액구분		
이력	변동내역	인적사항 변동일 및 사유		이의신청 사유	<input type="checkbox"/> 단독가구 <input type="checkbox"/> 전액 <input type="checkbox"/> 부부가구 1인 수급 <input type="checkbox"/> 감액(원) <input type="checkbox"/>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재산 변동일 및 사유			결과	<input type="checkbox"/> 수급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연금액 <input type="checkbox"/> 수급권 상실 <input type="checkbox"/> 부당이득 환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인용 <input type="checkbox"/> 각각 <input type="checkbox"/> 각하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 증가 <input type="checkbox"/> 해외체류 180일 <input type="checkbox"/> 재산차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금내역	연금예	이의신청	부당이득 사유	<input type="checkbox"/> 1회차 : <input type="checkbox"/> 사유 <input type="checkbox"/> 2회차 : <input type="checkbox"/> 결과 <input type="checkbox"/> 3회차 : <input type="checkbox"/> 사유			
		변동사유	부당이득		<input type="checkbox"/> 1회차 : <input type="checkbox"/> 금액 <input type="checkbox"/> 2회차 : <input type="checkbox"/> 환수 <input type="checkbox"/> 3회차 : <input type="checkbox"/> 환수원로 <input type="checkbox"/> 환수중 <input type="checkbox"/> 미환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과태료 부과 사유	과태료 부과 사유		<input type="checkbox"/> 1회차 : <input type="checkbox"/> 금액 <input type="checkbox"/> 2회차 : <input type="checkbox"/>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3회차 :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input type="checkbox"/> 거짓자료 제출 <input type="checkbox"/> 조사 질문 거부·병해 또는 기피, 거짓 답변 <input type="checkbox"/> 수급권 상실사유 발생 미신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을-5)

관리번호		세대주	
부랑인·노숙인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랑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복지욕구	□ 시설입소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기초노령연금 □ 장애연금 □ 장애수당 □ 기타()
시설입소	대상자	시설명	
		소계지	입소일자
후원자/원봉사 내용			
후원 현황	후원자	후원방법 (정기, 일시)	후원기간
	성명/기관명	주소/전화번호	후원종류 및 후원내용 현금 물품
			후원용도
			월후원에 소년소녀 가장 후원금관리자 관 계
지원 분사 현황	지원봉사자	지원봉사방법 (방문요일/시간)	지원봉사 대상자
	성명/기관명	주소/전화번호	비 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5)

관리번호		세대주									
부랑인·노숙인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랑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복지욕구	<input type="checkbox"/> 시설입소 <input type="checkbox"/> 취업알선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초노령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설입소	대상자	시설명	소재지	입소일자	입소기간					
후원자/원봉사 내용											
후원 현황	후원자		후원방법 (정기, 일시)	후원기간	후원종류 및 후원내용		후원용도	소년소녀 가장			
	성명/기관명	주소/전화번호			현금	물품		월후원에	후원금관리자	관계	
자원 봉사 현황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방법 (방문요일/시간)	자원봉사기간	자원봉사내용		자원봉사대상자	비고			
	성명/기관명	주소/전화번호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1) 권리번호 : 세대주 :)

상 담 내 역												
					구분	성 명				주 요 변 동 사 항		
1차 상담					보 장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재 산							
					구분	성 명				주 요 변 동 사 항		
2차 상담					보 장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재 산							
상 담 일 자	년	월	일	상 담 자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상 담 일 자	년	월	일	상 담 자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2)

상 담 내 용												
					구분	성 명	주 요 변 동 사 항					
3차 상담					보 장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재 산							
					구분	성 명	주 요 변 동 사 항					
4차 상담					보 장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재 산							
상 담 일 자	년 월 일	상 담 자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상 담 일 자	년 월 일	상 담 자	직 명	성 명								

297mm×210mm(일반용지 60g/㎡(제철용품))

[서식양호-공동서식 별지제10호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출력대상 : 기초생활 보장

페이지 : 1/00

연번	보장구분	관 리 행장동	세대주				세대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특 례	재산금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의료급여	전화번호
			주 소	주 기 유형	소 득 인정액	소 득 금액	장 애 유형	장 애 등급	질 병 종류	후 대 전 화
			수급자 구분	학 령 (학교/학년/반)	근로능력	근로능력	선정일자	선정일자	근로능력	선정일자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종))

[서식10호-공통서식 별지제11호서식]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차)				
수급자 (보호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거주지(소재지)			
비 용 (부당이득) 납부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수급자·보호 대상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납부(환수) 사 유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아동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안내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처분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유아보육·유아학비, 노인돌보미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보건소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신청 6)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11호-공통서식 별지제12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이 의 신 청 구 분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input type="checkbox"/> 환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안 내	<p>1. 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지 60일 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장애인활동지원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결정통지 처리합니다.</p> <p>2.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p>			
구 비 서 류	<p>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노령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상

접수번호	신청일	신청인				급여결정				비고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주소	세대원수	결정일	신청	제외 소득 인정액		부양 의무자	신청각하

작성 방법

1. 신청일란에는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적습니다.
2. 결정일란에는 급여여부를 결정할 날 또는 신청을 각하한 날을 적습니다.
3. 선정란에는 급여실시가 결정된 경우에 표시합니다.
4. 제외란에는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란을 표시합니다.
5. 신청각하란에는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검진지에 따르지 아니하여 급여신청을 각하한 경우에 표시합니다.

297mm×210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서식13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복지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복지 급여 계좌	현행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변경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p>위와 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급여통장 사본 1부				

210mm×279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14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조건부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생계급여의 조건 (자활사업명)			
생계급여 중지내용	중지기간·중지역	년 월부터	생계급여	원 중지
	중지사유	조건 불이행		
<p>1. 귀 가구의 조건부수급자가 지정된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생계급여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2.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는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담당자 : 직급 성명</p> <p style="margin-left: 100px;">문의 전화번호 :</p> <p style="margin-left: 100px;">담당기관 : () 읍·면·동 주민센터</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시장·군수·구청장 (인)</p>				

210mm×279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서식16호]

고 용 · 임 금 확 인 서						
피 고 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 본 급			
			각 중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입 <input type="checkbox"/>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식17호]

무 료 임 대 확 인 서				
임 차 인	성 명	①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통 반)		
	임대인과관계		주 거 내 용	건물 m ² (방 개)
	무료임대기간	. . ~ . . 까지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을 위 임차인에게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임 대 인</p> <p style="margin-left: 100px;">주 소 :</p> <p style="margin-left: 100px;">성 명 : ①</p> <p style="margin-left: 100px;">주민등록번호 :</p> <p style="margin-left: 100px;">전 화 번 호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_____ 읍·면·동장 귀하</p>				

[서식18호]

사 실 조 사 복 명 서				
1. 조사일시				
2. 조사대상자				
3. 조사장소 (출장지)	* 조사대상자 집 주소등 기재			
4. 조사목적	* 예 :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파악			
5. 조사내용				
6. 조사결과	* 예: 조사대상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함			
7.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서식19호]

()년도 ()분기 교육급여 수급자 명단 통보 및 학비지급 요청서

학교명 : _____

성명	계열	학년/반	학적변동사항 (변동내용*) 및 일자)	입학금	수업료	비고

*) 재학, 휴학, 자퇴, 퇴학, 기타 학적변동내용 기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 명단을 알려드리니, 상기 학생의 학적변동을 확인하여 우리 시·군·구로 교육급여(입학금 및 수업료)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위와 같이 학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학교장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20호]

()년도 ()분기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 실적보고

1. 학생변동현황

(단위: 명)

구 분	전분기 현원계 (1)	증 가				감 소							현인원 (1)+(2)-(3)
		소계 (2)	전입	신규 채정	전분기 미지급자	소계 (3)	전출	채정 제외	퇴학	휴학	사망	기타	
계													
중 학 생													
실업고생													
인문고생													

2. 학생별 집행현황

(단위: 명, 천원)

구 분	계				중 학 생				실 업 고 생				인 문 고 생				
	인원	집 행 액			인원	집 행 액			인원	집 행 액			인원	집 행 액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계																	
입 학 금																	
수 업 료																	

3. 국비집행사항(누계)

(단위: 천원)

배정액	집행액	잔 액	다음분기소요액	다음분기신청액	비 고

[서식21호]

○○년 차상위계층 소득·재산현황(○인가구)

* 1~6인이상으로 구분하여 Excel파일로 작성(6개 sheet)

(단위: 가구수)

재산 소득평가액	10백만원 이	10백만원 초 15백만원 이하	15백만원 초 20백만원 이하	20백만원 초 25백만원 이하	25백만원 초 29백만원 이하	29백만원 초 30백만원 이하	30백만원 초 31백만원 이하 (100만원 간격)	57백만원 초 58백만원 이하	58백만원 초 59백만원 이하	59백만원 초 60백만원 이하	60백만원 초 과	계
	계												
150만원초과													
150만원이하 148만원초과													
148만원이하 146만원초과													
146만원이하 144만원초과													
144만원이하 142만원초과													
142만원이하 140만원초과													
..... (2만원간격)													
28만원이하 26만원초과													
26만원이하 24만원초과													
24만원이하 22만원초과													
22만원이하 20만원초과													
20만원이하 18만원초과													
18만원이하 16만원초과													
16만원이하 14만원초과													
14만원이하 12만원초과													
12만원이하 10만원초과													
10만원이하 8만원초과													
8만원이하 6만원초과													
6만원이하 4만원초과													
4만원이하 2만원초과													
2 만 이 하													

[서식22호-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수급자 구분 [] 일반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제출용도	용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급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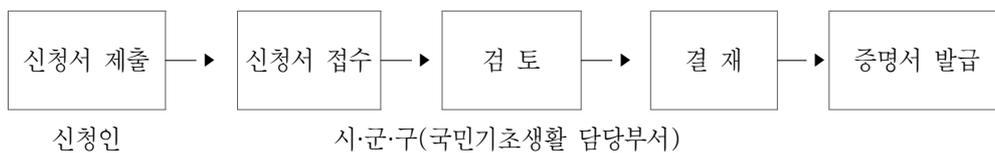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서식22호-시행규칙 별지제3호2서식]

제 호

수 급 자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세대주 성명 (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수급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보장시설 수급자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22-1호]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 임 장	위임을 받은 자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급통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본인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위임자: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법 정 대 리 인 동 의	(성명:)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발급통수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번호 -) 관계:				
	주소:				인감
※유의사항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월입니다. 2. 2부 이상의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통수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수급자 증명서를 위임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닌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5.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서식23호]

< 지출실태조사표 >					
I. 가구특성 <input type="checkbox"/> 맞벌이 여부 (Y / N)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여부 (Y / N) <input type="checkbox"/> 주택소유 여부 (Y / N) - 면적 ()㎡					
II. 지출내역 (한달 단위의 항목별 지출사항)					
지출 항목		지출금액(원)	지출 항목		
			지출금액(원)		
식품비	1.곡물 및 가공품		교육비	13.고교납입금	
	2.고기, 야채			14.보육료	
	3.과일			15.교재, 참고서비	
	4.빵 및 음료			16.학원비	
	5.외식비			교양오락비	17.방송수신료
주거비	6.월세		18.기타오락비		
	광열수도비	7.수도요금		교통통신비	19.교통비
		8.전기요금			20.자동차유지비
9.취사, 난방비용			21.전화요금		
피복신발비	10.의복, 신발		기 타	22.인터넷이용료	
	의료비	11. 입원, 진료비			23.담배, 술값
12. 의약품비				24.가사용품 및 서비스	
				25.가타 잡비	
				26.사회보험료	
합 계				() 원	
III. 소득내역 (가구원별 소득)					
수입원(성명)		가구주와 관계		직업(직장명)	수입(원)
합계				() 원	
IV. 추가 지원내역(수입내역이 지출내역에 비해 부족할 경우 보충 방법)					
지원하는 곳		성명 및 단체		월평균 지원금(원)	비고
부모·자녀					
형제·친지					
단체·기관					
대출·카드					
기 타					
합계(물품은 환가액으로 기재)				() 원	
작성일 : 20 년 월 일					
작성자 : (주 소) (연락처) (성 명)					
(인)					

<참고> 지출항목별 해당품목

지 출 항 목		해당품목
식품비	1.곡물 및 가공품	쌀, 떡, 라면류, 기타곡물가공품,
	2.고기, 야채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육류가공품, 우유, 요구르트, 갈치, 기타선어개류, 기타채소, 두부, 김치류, 김, 고추
	3.과일	사과, 배, 포도, 귤, 수박, 딸기, 기타과실
	4.빵 및 음료	케이크, 기타빵류, 아이스크림, 과자류, 커피, 음료류, 기타식품
	5.외식비	식사대, 학교급식대
주거비	6.월세	월세
광열수도비	7.수도요금	수도료
	8.전기요금	전기료
	9.취사,난방비용	등유, 도시가스
피복신발비	10.의복, 신발	학생복, 아동용외의, 여자내의, 운동화
의료비	11.입원, 진료비	병원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기타보건의료서비스
	12.의약품비	양약, 조제약
교육비	13.고교납입금	고교납입금
	14.보육료	보육료
	15.교재, 참고서비	중고교재, 참고서값(1인당)
	16.학원비	입시및보습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교양오락비	17.방송수신료	방송수신료
	18.기타오락비	완구, 기타교양오락서비스
교통통신비	19.교통비	버스, 택시, 지하철및전철, 화물운송료
	20.자동차유지비	부품및관련용품구입, 보험료, 경유, LPG
	21.전화요금	이동전화기기, 일반전화요금, 이동전화요금
	22.인터넷이용료	인터넷이용료
기타	23.담배, 술값	소주, 맥주, 담배
	24.가사용품 및 서비스	화장지, 세탁용세제, 청소료, 기타가사서비스
	25.가타 잡비	이미용료, 목욕료, 손해보험료, 기타잡비
	26.사회보험료	연금, 건강보험료 등

[서식24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input type="checkbox"/>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소 득	일 당 제	1일임금	원	
		월평균 근로일수 :	일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원		
		(이전소득일 경우 지원하는곳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자 :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식25호]

〇〇년 〇〇분기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현황

시·도

(단위 : 명)

구 분	계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교정시설 출소자 보호		
		소 계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자 쉼터 거주자	일반주거 거주자 ²⁾	소 계	주거보호	시설보호 ³⁾
				쪽 방	기 타 ¹⁾					
합계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〇〇 시군구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〇〇 시군구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신청자									
	탈락자									
	선정자									

※ 모든 실적은 당해 분기 발생분에 한하여 기재.

※ 주 1) 기타 : 여인숙, 만화방, 비디오방 등

2) 일반주거지 :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주민등록상의 문제를 가진 자

3) 갱생보호공단에 입소하여 보호되는 경우 포함.

[서식26호]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

○○시군구 ○○읍면동

< 년 월>

일련 번호	기초생활보장번호 (現 거주지)	성명	주소 (現 거주지)	기초생활보장번호 (前 거주지)	금품의 직접지급 시		비고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월 지급액	수급자 印 (받드시 摺印)	

※ 비고란 : 급여중지된 경우에는 급여중지사유를 기재. 특히, 타 시군구로 이동했을 시에는 타 시군구 지명을, 또는 이동한 지역을 모를 경우 '전출지 미상'으로 기재

[서식27호]

노숙자 긴급급여 관리대장

○○시군구 ○○읍면동

< 년 월 >

일련 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현거주지 주소 또는 현재지 (이동 후)	이동 일시	금월 지급액	수급자 印 (반드시 捺印)	비고
	기초생활보장번호		전 거주지 또는 주소 (이동 전)				

※ 수급자 무인은 이동을 반복하여 2중 급여를 받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서식28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 신청서				
확인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해당여부			
출소예정일				
출소유형	<input type="checkbox"/> 만기출소 <input type="checkbox"/> 가석방 <input type="checkbox"/> 형집행정지 <input type="checkbox"/> 집행유예 <input type="checkbox"/> 구속집행정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범 수				
보장시설 등 입소	<input type="checkbox"/> 갱생보호공단 <input type="checkbox"/>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 () <input type="checkbox"/> 노숙자 쉼터 <input type="checkbox"/> 기타()			
<p>상기 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교도소장 인</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서식29호)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의료기관진단서 				

[서식29호]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교정시설 작성용)

접수번호											신청구분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제출서류	<input type="checkbox"/> 호적등본	<input type="checkbox"/> 입대차계약서	<input type="checkbox"/> 진단서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복지급여 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기여부 및 미동거 사유	건강상태 (장애, 질병)	근로능력 유무및사유	학 령 (학교명, 학년반)	자격증 (경 령)	구분	직업종류		
	본인											
보장기구												
비보장 기구원												
부양 의무자	수급자와 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구원수	직업	소득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평균지원금	부양능력 판정 사유
조사결과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부양의무자 성명)	<input type="checkbox"/> 군복무 ()	<input type="checkbox"/> 해외이주 ()	<input type="checkbox"/> 복역 ()	<input type="checkbox"/> 복역()	<input type="checkbox"/> 보장시설수급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행방불명·가출·실종()	<input type="checkbox"/> 부양기피·기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	부양능력자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성명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	소득 계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 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부양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만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재산 계													만원	
건축물	<input type="checkbox"/> 주택(평) <input type="checkbox"/> 건물(평) <input type="checkbox"/> 기타 ()													
토지	<input type="checkbox"/> 논(평) <input type="checkbox"/> 밭(평) <input type="checkbox"/> 임야(평)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자동차가액(천원) <input type="checkbox"/> 차종연식() <input type="checkbox"/> 소유자() <input type="checkbox"/> 차량번호() <input type="checkbox"/> 배기량(cc)													
임차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전·월세보증금(천원) <input type="checkbox"/> 상가보증금(천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천원)													
금융재산	<input type="checkbox"/> 은행예금·적금 등(천원) <input type="checkbox"/> 저축성보험(천원) <input type="checkbox"/> 현금수표·어음등(천원)													
동산	<input type="checkbox"/> 주식(천원) <input type="checkbox"/> 가축(천원) <input type="checkbox"/> 종묘·임목(천원) <input type="checkbox"/> 기계·기구류(천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천원)													
주거유형	<input type="checkbox"/> 자가(천원) <input type="checkbox"/> 전세(보증금 천원) <input type="checkbox"/> 월세(월 천원) <input type="checkbox"/> 보증부월세(보증금 천원, 월 천원)													
보호욕구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주택 입주 <input type="checkbox"/> 보장시설임소 <input type="checkbox"/> 갱생보호공단임소 <input type="checkbox"/> 후원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서식30호]

무연고자 확인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가구에 해당하는 가족 및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여부		
확인결과	<input type="checkbox"/> 연고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연고자 없음		
확인내역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가족있음, 가족없음) : 자료 별첨 <input type="checkbox"/> 호적등본(부양의무자 있음, 부양의무자 없음) : 자료 별첨 <input type="checkbox"/> 접견(가족, 부양의무자, 기타 친지·친구 등) <input type="checkbox"/> 서신왕래(가족, 부양의무자, 기타 친지·친구 등) <input type="checkbox"/> 영치금 입금자(가족, 부양의무자, 기타 친지·친구 등)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와 같이 무연고자임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확인자: ○○교도소장 인</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 등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서식31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수신 : ○○ 교도소장				
제목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				
확인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확인결과	<input type="checkbox"/> 보장적합 : 귀기관에서 출소하는 당일 수급자로 선정 보호			
	<input type="checkbox"/> 보장부적합 :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보장 부적합			
교정시설 조치사항	1. 수급권자에게 통보 2. 출소 즉시 2시간 이내에 보장기관에 통보(보장적합시)			
<p>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결과 위와 같이 통보하니 신청자에게 동 사실을 안내문과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p> <p>* 안내문 : 별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인</p>				

[서식32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안내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조사결과	수급권자에 해당됨		
<p>귀하가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는 출소 당일 수급자로 선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필요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하가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경우 출소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군구(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방문하여 출소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귀하에게는 출소 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방문시 긴급생계비가 지원됩니다. ※ 시군구 또는 읍면동 방문시에 금융기관 거래은행 통장 소지 3. 귀하가 지정된 기일내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가 근로능력이 있고, 출소 후 3월이내에 취업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5. 귀하가 거주지역을 변경하거나 세대구성, 근로능력, 소득 및 재산 등에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구청장 인</p>			

[서식33호]

교정시설출소예정자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

(○○시군구)

(○○시군구 ○○읍면동)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수급권자 확인신청일	교정시설	출소 예정일	수급권자 해당여부	급여 결정일	보호 방법

* 보호방법란 : 가구보호, 보장시설보호(보장시설 입소, 의료기관입원 등)로 구분하여 기재
 ※ 동 관리대장은 필요한 경우에 작성·비치함

[서식35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받는 사람	성 명		
	주 소		
확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확인결과	<input type="checkbox"/> 보장적합		
	<input type="checkbox"/> 보장부적합 (사유)		
<p>귀하(기관)가 보호의뢰한 위 대상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인</p>			

[서식36호]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자 관리대장

(○○시군구 / ○○읍면동)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 원수	보 호 의뢰일	의뢰자 (소속기관)	조사일 (조사자)	결정결과	보호방법	결과 통보일

- ※ 민간복지사의 보호의뢰 및 유관기관의 관련사실 통보 등에 따른 접수·처리현황을 통합 관리함
- ※ 결정결과 : 보장 부적합, 보장 적합 등으로 구분
- ※ 보호방법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시설명), 특례수급자(특례사유 또는 종류), 차상위계층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서식37호]

통합조사 상담지

세대주		작성일자	. . .	상담자	
1. 가족사항, 가구특성 :					
2. 건강상태 :					
3. 주거 :					
3. 고용실태 및 자활 방향 :					
5. 소득 및 재산 :					
6. 부양의무자 :					
7. 복지욕구 :					
8. 기타영역() :					
9. 조치사항(담당자의견) :					

[서식38호]

복지대상자 사정표

※ 필요한 항목 선택적으로 기록, “현재상황”은 통합조사상담지와 상이한 내용 등 필요시 작성

성명	작성일자	담당자	
고려 사항	현재상황	자원 및 강점 (개인적/사회적)	개인적 바람 및 욕구
가족, 자녀, 대인 관계 영역 ·가족, 친구, 비공식적 지지 ·사회적 지지/ 종교적 지지 ·대인관계			
신체적·정신적 건강 영역 ·신체적/정신적/알콜사용/장애 /질병 등			
일상생활 활동 영역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 가사일(요리, 세탁, 쇼핑)			
이동/교통 수단 영역			
주택 및 주거 환경 영역			
고용 및 직업 영역			
소득 및 경제적 영역 · 소득/재산 · 경제적 도움받는 곳			
교육 및 학습 영역			
여가활용 및 문화활동 영역 · 가정 안과 밖의 관심/ 활동			
법률 영역			
기타 영역 ()			

[서식39호-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단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진단 질환명	질환명(1)		KCD 분류번호		진료기간	. . . ~ . . .												
	질환명(2)		KCD 분류번호		진료기간	. . . ~ . . .												
치료 경과 내 용	※ 진단대상자의 치료 경과 및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내용을 기록																	
평가 내용	평가대상질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2.																	
※ 아래의 평가대상질환을 적고, 해당하는 단계를 √표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0 auto; width: 80%;">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평가대상질환 보기</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33%;">① 근골격계</td> <td style="width: 33%;">② 중추(뇌·척수) 신경기능계</td> <td style="width: 33%;">③ 정신기능계</td> </tr> <tr> <td>④ 감각기능계</td> <td>⑤ 심혈관계</td> <td>⑥ 호흡기계</td> </tr> <tr> <td>⑦ 소화기계</td> <td>⑧ 비뇨생식계</td> <td>⑨ 내분비계</td> </tr> <tr> <td>⑩ 혈액질환계</td> <td>⑪ 피부질환계</td> <td></td> </tr> </table> </div>							① 근골격계	② 중추(뇌·척수) 신경기능계	③ 정신기능계	④ 감각기능계	⑤ 심혈관계	⑥ 호흡기계	⑦ 소화기계	⑧ 비뇨생식계	⑨ 내분비계	⑩ 혈액질환계	⑪ 피부질환계	
① 근골격계	② 중추(뇌·척수) 신경기능계	③ 정신기능계																
④ 감각기능계	⑤ 심혈관계	⑥ 호흡기계																
⑦ 소화기계	⑧ 비뇨생식계	⑨ 내분비계																
⑩ 혈액질환계	⑪ 피부질환계																	
향후 치료계획	1.관찰요망(), 2.통원치료나 약물치료 요망(), 3.적극적인 입원이나 수술요망(), 4.기타()																	
재진단 필요사유				재진단 시 기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명 :

직인

의료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전문과목		의사면허번호		성 명	(인)

유의사항

1. 진단 대상자 및 평가 내용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하여 발급 하되, 부득이한 경우 봉투의 봉합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습니다.
2. 평가 내용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서식40호-고시 별지제1호서식]

(앞면)

재 판 정 신 청 서			
신청인 (처분을 받은 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④처분의 요지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⑤처분이 있는(도달한) 날	년	월	일
⑥재판정신청의 취지와 이유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근로능력 판정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판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과의 관계:</p> <p style="text-align: center;">주소:</p> <p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 서류	1. 진료기록지 사본 2. 기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서식41호-시행규칙 별지서식5호]

생계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수급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한정자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 까지 (월간)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한정자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법정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대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지급계좌	금융기관 () 계좌번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계급여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기초생활급여 대리수령 신청 확인서

제 호

수급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 사유	대리수령 지정기간	
대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위와 같이 생계급여 대리수령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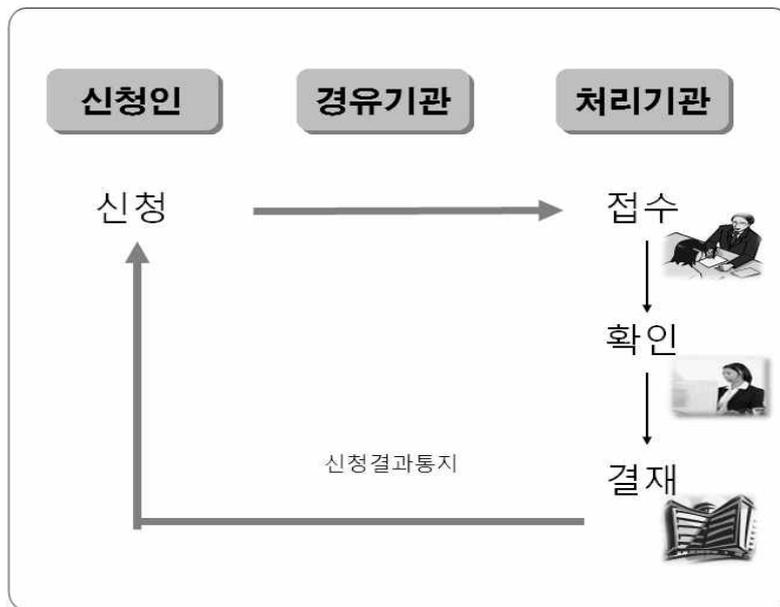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3. 대리수령인이 수급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유의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식42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지정동의서				
수 급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급 여 관리자(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관 계	
	주 소			
급 여 관리자(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관 계	
	주 소			
급여관리 지정사유				
급여관리자 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영수증 보관) 관리하여야 함 ○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활용하도록 함 ○ 담당사회복지사가 요청할 경우, 매 분기마다 관리상태를 확인시켜주어야 함. 			
<p>가. 수급자()는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의거 ①_____, ②_____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관리를 위임합니다.</p> <p>나. 급여관리자 ①_____, ②_____는 수급자()의 급여 관리·사용지원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50px;">수 급 자 : (인)</p>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50px;">급 여 관 리 자 (1) : (인)</p>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50px;">급 여 관 리 자 (2)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군·구청장 귀하</p>				
<p>※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p>				

※ 수급자가 의사무능력으로 인해 작성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급여관리자와 작성 (서식은 시, 군, 구 실정에 따라 변경가능)

[서식43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점검표(시군구보관)

□ 읍·면·동명 :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수급자 유형	장기입원자, 미성년자 등 사유
수급자 주소	전화 ()	실 거주지	○○병원, ○○시설, 그룹홈명 등
			소재지, 전화()
급여관리자1	성명 (생년월일), 관계()	주소	전화()
급여관리자2	성명 (생년월일), 관계()	주소	전화()

□ 점검사항

공 통 점 검 항 목		비 고
① 통 장소유자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급여관리자 <input type="checkbox"/> 제3자()	
② 인 출 형 태	<input type="checkbox"/> 매월 전액 인출 <input type="checkbox"/> 평균 10-30만원 <input type="checkbox"/> 평균 30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미인출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③ 지출내역 및 영수증 일치여부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일부 부족) <input type="checkbox"/> 미흡	
④ 주 요 사 용 처	<input type="checkbox"/> 식품비 <input type="checkbox"/> 주거비 <input type="checkbox"/> 광열수도비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input type="checkbox"/> 피복신발비 <input type="checkbox"/> 교양오락비 <input type="checkbox"/> 교통통신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병원 : <input type="checkbox"/> 간식비 <input type="checkbox"/> 담배 <input type="checkbox"/> 생필품	※ 지출실태조사표 참조 - 병원의 경우 해당 항목에 추가 표시
⑤ 타인 사용 입출금 내역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제3자() <input type="checkbox"/> 없음	※ 사용자, 사용내용, 금액 등 자유로이 기재
⑥ 수급자를 위한 정기적금, 펀드, 보험 가입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금 <input type="checkbox"/> 보험 <input type="checkbox"/> 펀드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통장종류 / 적금·펀드·보험 총금액 / 가입기간 / 입출금 내역 기재)
병 원 수 급 자 점 검 항 목		비 고
① 급여지출입대장 세부내역 작성	<input type="checkbox"/> 세부내역 작성 <input type="checkbox"/> 간식비 대장 작성으로 지출 같음	
② 구내매점 운영 주체	<input type="checkbox"/> 병원 직영 <input type="checkbox"/> 업체, 개인 위탁 운영 <input type="checkbox"/> 매점 없음	
③ 급여통장 관리 형태	<input type="checkbox"/> 일원화 <input type="checkbox"/> 이원화	※ 이원화 형태: - 통장, 도장 관리자 분리 여부 - 병상, 총무과 이원 관리 여부
④ 간식비 사용에 대한 미납금 유무	<input type="checkbox"/> 미납금(마이너스 잔고) <input type="checkbox"/> 미납금 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미납 사유:
시설 수급자(개인운영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그룹홈 포함) 점검 항목		비 고
① 입소계약 형태	<input type="checkbox"/> 정액 입소비 책정 ()원 <input type="checkbox"/> 생계주거비를 입소비로 같음 <input type="checkbox"/> 생계주거비의 추가 금액 <input type="checkbox"/> 입소계약서 없음	
② 생계급여 외 급여통장 관리 형태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시설장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최종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 부정경 관리에 대한 조치
- 미흡에 해당하는 문제점 등 전반적인 급여관리 실태 등 기재 - 병원, 시설의 경우 전반적인 급여관리 실태 등 기재		<input type="checkbox"/> 시경 <input type="checkbox"/> 고발 <input type="checkbox"/> 미조치 (조치예정 포함) - 조치사항 등을 상세 기재

※ 현장 점검시 점검표, 급여관리자 지정 동의서, 통장사본, 통장입출금 내역 사본 비치

20 . . .

조 사 자 _____ 읍면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성명 (인)

확 인 자 _____ 읍면동장 성명 (인)

[서식44호]

이행급여특례수급자 관리 명부

가구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특례책정시 소득인정액	탈수급사유	교육급여(명)		의료 급여	채정일자	중지일자	비고 (중지사유)
						중학생	고등학생				

제 10 편 부 록



- 부록 I. 조건표
- 부록 II. 부양능력판정표
- 부록 III.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107개 질환)
- 부록 IV.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 부록 V.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사업
- 부록 VI. 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 부록 VII.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안내
- 부록 VIII.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안내문
- 부록 IX.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 부록 X. 압류방지 전용통장
- 부록 XI. 기초생활보장 업무 관련 홈페이지

I 조건표

○ 건설부문 노임단가 (조사직종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대한건설협회 2011. 9월 공표)

(단위: 원)

번호	공 표 일			2011.9.1	2011.1.1	2010.9.1	2010.1.1
	직 종 명						
1001	작	업	반 장	100,879	98,329	95,671	92,218
1002	보	통	인 부	74,008	72,415	70,497	68,965
1003	특	별	인 부	95,366	92,956	89,835	84,404
1004	조	력	공	87,687	84,508	82,036	78,676
1005	제	도	사	87,155	82,428	81,538	77,030
1006	비	계	공	123,972	120,681	117,090	118,515
1007	형	틀	목 공	105,805	104,308	101,932	100,730
1008	철	근	공	111,058	109,325	108,427	110,803
1009	철		공	104,518	109,857	107,079	109,702
1010	철	판	공	107,902	104,801	100,784	103,664
1011	철	골	공	115,954	111,501	108,881	105,994
1012	용	접	공	115,090	110,123	108,866	108,464
1013	콘	크	리 트 공	102,951	103,765	100,947	103,780
1014	보	링	공	90,591	87,934	84,617	88,782
1015	착	암	공	88,645	84,470	81,112	79,533
1016	화	약	취 급 공	98,620	95,130	91,167	93,030
1017	활	석	공	95,502	96,658	94,720	101,602
1018	포	설	공	88,444	91,993	90,496	87,120
1019	포	장	공	99,661	99,638	98,247	93,077
1020	감	수	부	155,679	152,890	144,015	148,257
1021	조	적	공	104,754	102,200	100,263	95,916
1022	건	출	공	102,932	98,569	95,681	94,633
1023	건	축	목 공	106,641	99,722	98,254	96,310
1024	창	호	공	101,494	97,457	96,641	91,121
1025	유	리	공	99,467	96,963	94,934	90,764
1026	방	수	공	77,442	82,178	81,638	80,553
1027	미	장	공	103,210	100,562	98,280	95,659
1028	타	일	공	110,585	105,611	104,474	101,048
1029	도	장	공	100,929	96,119	95,987	92,700
1030	내	장	공	100,066	97,939	99,352	93,324

공 표 일		2011.9.1	2011.1.1	2010.9.1	2010.1.1
번호	직종명				
1031	도 배 공	84,052	80,414	83,005	81,322
*1032	연 마 공	86,165	88,551	88,269	87,598
1033	석 공	112,871	106,512	111,569	109,066
*1034	줄 눈 공	87,103	83,415	83,265	87,652
1035	판 널 조 립 공	102,363	99,232	97,417	95,410
1036	지 붕 잇 기 공	110,267	105,110	104,050	99,773
1037	벌 목 부	97,349	90,524	91,695	89,169
1038	조 경 공	90,072	87,905	89,787	84,090
1039	배 관 공	94,293	92,988	91,564	89,975
1040	배 관 공 (수 도)	113,702	120,692	119,760	113,593
1041	보 일 러 공	90,595	86,950	84,813	89,899
1042	위 생 공	87,613	83,210	82,119	85,352
1043	덕 트 공	90,070	87,190	84,482	86,730
1044	보 온 공	89,836	86,307	87,698	84,400
**1045	인 력 운 반 공	-	-	93,344	97,235
*1046	계 도 공	98,292	99,412	99,599	94,909
1047	건 설 기 계 조 장	95,501	98,314	96,755	94,350
1048	건 설 기 계 운 전 사	105,406	100,237	97,425	98,693
1049	화 물 차 운 전 사	83,850	85,888	85,587	84,942
1050	일 반 기 계 운 전 사	75,660	74,998	75,366	71,594
1051	기 계 설 비 공	94,807	91,570	90,102	86,521
*1052	준 설 선 선 장	117,431	112,106	112,072	107,747
*1053	준 설 선 기 관 사	90,764	90,916	88,436	86,507
*1054	준 설 선 운 전 사	92,121	92,858	92,224	90,838
*1055	선 원	81,609	79,138	78,945	80,558
1056	플 랜 트 배 관 공	155,151	148,074	144,674	136,587
1057	플 랜 트 계 관 공	134,336	126,004	131,115	125,905
1058	플 랜 트 용 접 공	164,849	159,756	153,374	143,296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	180,511	175,802	165,273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145,425	135,389	131,716	124,328

공 표 일		2011.9.1	2011.1.1	2010.9.1	2010.1.1
번호	직종명				
1061	플랜트특별인부	95,482	88,321	90,160	86,165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143,083	136,505	141,231	140,299
*1063	플랜트계장공	146,019	134,801	140,852	131,946
**1064	플랜트덕트공	-	113,986	116,491	-
*1065	플랜트보온공	145,855	138,345	142,365	145,453
1066	제철축로공	250,777	234,667	224,479	212,848
1067	비파괴시험공	165,624	156,533	154,526	153,630
**1068	특급품질관리원	-	102,456	101,604	97,102
*1069	고급품질관리원	102,462	97,258	94,662	90,942
*1070	중급품질관리원	91,128	87,691	87,676	87,471
1071	초급품질관리원	87,968	83,471	82,250	81,522
1072	지적기사	191,190	185,892	181,586	174,709
1073	지적산업기사	159,262	152,002	150,144	155,776
1074	지적기능사	125,193	117,740	115,850	110,974
1075	내선전공	116,754	113,858	108,345	101,742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217,870	207,924	203,302	197,326
1077	고압케이블전공	175,292	166,370	163,237	156,007
1078	저압케이블전공	138,576	136,290	133,274	125,857
1079	송전전공	326,438	322,635	314,465	296,392
1080	송전활선전공	355,581	351,951	343,602	326,162
1081	배전전공	213,248	200,344	193,646	180,608
1082	배전활선전공	332,195	327,793	318,440	307,778
1083	플랜트전공	136,915	129,208	125,566	117,737
1084	계장공	136,021	132,564	128,284	121,975
1085	철도신호공	153,096	146,262	142,615	134,363
1086	통신내선공	116,089	112,141	107,365	101,088
1087	통신설비공	129,480	125,590	124,022	115,757
1088	통신외선공	165,848	159,344	155,521	147,853
1089	통신케이블공	183,146	172,119	166,346	161,169
*1090	무선안테나공	142,274	134,812	131,918	125,344
1091	석면해체공	98,119	95,386	92,842	88,854

공 표 일		2011.9.1	2011.1.1	2010.9.1	2010.1.1
번호	직종명				
2001	광케이블설치사	192,441	181,474	178,381	170,411
2002	H / W 시험사	177,071	173,041	170,735	160,012
*2003	S / W 시험사	186,776	176,440	175,429	166,532
*3001	도판수	178,234	170,360	167,760	167,990
**3002	드잡이공	-	151,579	-	153,216
3003	한식목공	133,426	127,988	133,382	126,090
*3004	한식목공조공	99,755	96,248	95,011	92,083
3005	한식석공	148,117	144,386	141,519	137,425
3006	한식미장공	124,738	121,091	119,791	123,412
3007	한식와공	170,490	160,314	155,698	160,788
*3008	한식와공조공	128,120	126,649	125,457	121,768
*3009	목조각공	123,429	-	-	-
*3010	석조각공	162,857	156,098	-	156,391
*3011	특수화공	184,825	172,059	175,639	168,421
*3012	화공	129,191	-	123,696	120,294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151,628	145,896	144,980	142,078
4002	원자력용접공	154,106	145,953	151,834	143,258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155,383	148,960	149,519	144,457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175,725	167,167	165,073	160,842
5001	통신관련기사	147,395	140,036	136,957	132,479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136,269	130,718	128,249	123,749
5003	통신관련기능사	123,820	119,248	115,218	112,922
5004	전기공사기사	128,372	124,668	120,056	116,015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115,183	108,837	106,627	101,863
5006	변전전공	157,676	146,732	146,116	142,295
5007	코킹공	99,928	96,365	95,213	94,448

주) 「*」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 개미만 직종임

「**」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임

○ 건설부문 직종해설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01	작 업 반 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1002	보 통 인 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1003	특 별 인 부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 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1004	조 력 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1005	제 도 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1006	비 계 공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7	형 틀 목 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1008	철 근 공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9	철 공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0	철 판 공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011	철 골 공	H빔 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2	용 접 공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의 용접을 하는 사람(난이도 일반수준)
1013	콘 크 리 트 공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거나 슛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014	보 링 공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5	착 압 공	착압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1016	화 약 취 급 공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7	할 석 공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18	포 실 공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1019	포 장 공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1020	잠 수 부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1021	조 적 공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022	건 출 공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1023	건 축 목 공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1024	창 호 공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사람
1025	유 리 공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1026	방 수 공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27	미 장 공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반죽, 석고 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 작업을 하는 사람
1028	타 일 공	타일 또는 아스타일 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1029	도 장 공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 등에 칠하는 사람
1030	내 장 공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1031	도 배 공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 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 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1032	연 마 공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1033	석 공	대할 및 소할 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034	줄 눈 공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1035	판 널 조 립 공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 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1036	지 붓 잇 기 공	기와 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1037	벌 목 부	나무를 베는 사람
1038	조 경 공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1039	배 관 공	설계압력 5kg/cm ² 미만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0	배 관 공 (수 도)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농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1	보 일 러 공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1042	위 생 공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1043	덕 트 공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4	보 온 공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1045	인 력 운 반 공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목도 포함)
1046	궤 도 공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 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7	건 설 기 계 조 장	건설기계 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1048	건 설 기 계 운 전 사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이상 트럭 포함)
1049	화 물 차 운 전 사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1050	일 반 기 계 운 전 사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원치 등 경기계 조종원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51	기 계 설 비 공	일반기계설비 및 기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1052	준 설 선 선 장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1053	준 설 선 기 관 사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포함)
1054	준 설 선 운 전 사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1055	선 원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1056	플 램 트 배 관 공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배관 또는 설계압력 5kg/cm ² 이상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원자력배관공 포함)
1057	플 램 트 제 관 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58	플 램 트 용 접 공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강관(합금강제외)을 TIG, MIG 등 용접하거나, 각각의 설계압력이 5kg/cm ² 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중·고급수준)
1059	플 램 트 특 수 용 접 공	각각의 사용압력이 100kg/cm ² 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특급수준)
1060	플 램 트 기 계 설 치 공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61	플 램 트 특 별 인 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전문작업을 보조해주는 사람 (원자력 포함)
1062	플 램 트 케 이 블 전 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3	플 램 트 계 장 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4	플 램 트 덕 트 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 (원자력 포함)
1065	플 램 트 보 온 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원자력 포함)
1066	제 철 축 로 공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 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67	비 파 괴 시 험 공	일반 또는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등 시설물의 기기 및 배관 등의 용접부위 또는 구조물 주요부위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검사자)
1068	특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해당하는 특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69	고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해당하는 고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0	중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해당하는 중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1	초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해당하는 초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2	지 적 기 사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1073	지 적 산 업 기 사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1074	지 적 기 능 사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1075	내 선 전 공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7,000V 초과)
1077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1078	저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1079	송 전 전 공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0	송 전 활 선 전 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 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1081	배 전 전 공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 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1082	배 전 활 선 전 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83	플랜트 전 공	발전소 증공업설비·플랜트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4	계 장 공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1085	철도 신호 공	철도신호기를 설치 등 신호보안 설비공사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6	통신 내 선 공	구내에 통신용 합성수지관 및 배선을 시공 또는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7	통신 설비 공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8	통신 외 선 공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 등의 시공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9	통신 케이블 공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0	무선 안테나 공	철탑, 항공, 항만, 선박통신, 철도신호의 각종 안테나설비 설치 및 도색 등 유지보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1	석면 해체 공	건축물, 시설물, 설비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01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 및 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의 설치, 각종 시험,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2	H / W 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의 설치, 시험, 분석, 운영 시공지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3	S / W 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CPU 등 포함)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001	도 편 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목공, 한식석공 등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 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도석수 포함)
3002	드 잡 이 공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3003	한 식 목 공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4	한 식 목공 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5	한 식 석 공	도편수(도석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흑두기 등 석재를 마름질하여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 조립·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6	한 식 미 장 공	미장 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양벽·온돌·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3007	한 식 와 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3008	한 식 와 공 조 공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는 사람으로 한식와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9	목 조 각 공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 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3010	석 조 각 공	석조불상, 기단우석, 전통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하는 사람
3011	특 수 화 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벽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3012	화 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 먹긋기, 가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 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4002	원 자 력 용 접 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 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 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 설치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자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 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5001	통 신 관 련 기 사	정보통신공사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 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정보통신공사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 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 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3	통신관련기능사	정보통신공사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5004	전 기 공 사 기 사	전기공사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6	변 전 전 공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7	코 킹 공	창틀, 옥조 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 제조부문 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 2011.12월 공표)

(단위: 원)

번호	직 종 명	2011.9	2010.9	2009.9
1	기 계 설 계 사	85,158	88,338	91,652
2	회 로 설 계 사	-	73,259	74,971
3	제 도 사	81,983	77,513	77,076
4	현 도 사	92,370	76,667	73,565
5	강 관 공	78,380	67,841	66,137
6	드 릴 공	60,027	51,123	52,805
7	로 구 로 공 ※	61,681	54,475	54,403
8	마 킹 공	76,264	70,079	63,713
9	밀 링 공	67,356	61,699	55,237
10	보 링 공	68,593	58,366	52,154
11	불 반 공	-	51,033	48,882
12	샤 링 공	60,268	66,891	59,633
13	쉐 파 공 ※	60,947	56,907	51,707
14	스 롯 타 공 ※	53,913	51,461	49,590
15	절 곡 공	65,680	62,721	56,973
16	제 금 공	80,468	59,278	54,310
17	주 물 공	55,815	57,613	51,975
18	단 조 공	64,078	56,032	54,694
19	금 형 공	70,259	71,889	65,710
20	목 형 공 ※	74,030	62,061	59,550
21	조 형 공	56,513	55,522	-
22	압 연 공	67,637	60,851	55,323
23	압 출 공	65,201	60,583	54,436
24	열 처 리 공	70,470	55,826	56,996
25	용 해 공	62,219	58,200	58,140
26	인 발 공	64,123	52,549	49,629
27	태 평 공 ※	53,352	57,114	57,269
28	관 금 공	68,569	62,512	63,525
29	합 금 공	62,527	59,842	55,737
30	제 정 공 ※	58,299	53,539	54,189
31	다 이 케 스투 공	60,812	47,730	47,434
32	철 물 재 단 공	55,713	50,989	49,120
33	철 물 재 단 사	57,394	55,910	56,535
34	금 속 쇠 톱 공	64,260	69,274	60,899
35	회 전 쇠 톱 공 ※	51,230	45,613	43,375
36	모 형 조 각 기 공 ※	76,225	63,814	55,798
37	가 위 절 단 공 ※	46,423	46,700	48,885
38	모 형 절 단 공	62,699	56,789	49,531
39	방 전 절 단 공	-	66,000	68,178
40	산 소 절 단 공	62,787	59,659	57,606

번호	직종명	2011.9	2010.9	2009.9
41	알루미늄절단공	60,838	52,719	52,509
42	유리절단 및 재단공	64,280	56,494	58,974
43	벤딩머신공	55,341	61,495	57,494
44	벨런스머신공 ※	71,620	56,100	59,420
45	수동교정공 ※	70,897	60,631	58,326
46	수동선반공	68,107	67,631	58,899
47	자동선반공	60,782	56,199	52,689
48	프레나공	72,378	74,792	63,912
49	프레스공	57,236	53,008	50,536
50	레이저광선공	62,426	63,222	55,153
51	일반화학공	82,514	75,774	65,833
52	요업공	66,527	53,309	51,561
53	도자기제품제조공	48,687	48,931	-
54	합성수지피막공	70,174	53,656	55,531
55	권취공	-	52,948	47,815
56	대연공	-	-	60,893
57	신선공	67,211	58,070	50,087
58	연선공	58,645	50,076	52,282
59	연합공	68,068	64,974	59,755
60	절연공	70,744	60,099	59,508
61	피복공	63,402	62,493	56,449
62	케이블제조공 ※	48,945	54,013	55,486
63	고무제품제조공	57,577	52,249	-
64	리벳공	65,854	58,310	50,331
65	용접공	70,387	70,090	65,789
66	그라인더공	68,483	60,711	57,746
67	랍핑공 ※	54,412	57,200	56,164
68	빠테도포공 ※	55,445	43,613	40,232
69	빠후공	59,439	52,271	46,935
70	사지공 ※	42,999	45,927	47,201
71	세척공	63,348	54,488	52,823
72	호닝공 ※	46,445	45,990	46,737
73	도장공 (붓칠)	57,381	57,209	52,840
74	도장공 (취부)	58,781	57,895	57,709
75	목장도장공	56,458	50,189	48,414
76	전해연마공	60,787	54,110	48,228
77	지석연마공	60,411	50,564	51,834
78	컴파인드연마공	59,205	53,980	46,929
79	화학연마공	55,529	58,544	50,611
80	아연도금공	60,503	50,844	48,108

번호	직종명	2011.9	2010.9	2009.9
81	전기도금공	69,043	57,798	49,583
82	침적도금공	65,412	58,607	50,286
83	사출공	57,605	53,718	48,132
84	성형공	59,727	51,749	53,996
85	압출공	58,230	56,779	53,181
86	배합공	58,627	54,927	49,744
87	가구공	64,119	51,432	53,217
88	유리제품제조공	66,352	54,061	47,048
89	제재공	66,197	54,257	52,958
90	조성화학공	63,711	59,066	55,514
91	합판제조공	56,342	58,192	52,355
92	제재기계운전공	70,981	69,101	64,842
93	목재건조기계공※	61,362	53,695	55,704
94	제지공	63,951	59,305	60,680
95	조선목공※	66,153	62,149	58,953
96	골판지제조공	64,220	51,458	-
97	부품조립공	56,671	53,926	48,434
98	강전기계조립공	70,475	57,858	56,168
99	약전기계조립공	64,799	49,915	46,732
100	중기계조립공	64,021	66,592	62,290
101	경기계조립공	69,050	58,994	57,822
102	전자제품조립공	57,132	56,909	48,192
103	통신기계조립공	70,671	56,112	48,690
104	제품시험공	70,202	67,154	63,346
105	품질관리공	64,574	66,813	62,606
106	품질관리사	92,449	90,729	83,467
107	기계정비공	75,906	71,266	62,872
108	전기정비공	73,451	76,014	64,144
109	차량정비공	81,411	79,670	77,790
110	제품검사공	56,312	50,940	47,972
111	제품조정공	61,213	59,004	62,118
112	기계기술공	80,203	72,085	69,477
113	다듬질공	58,463	48,917	49,190
114	보선공※	74,050	62,355	65,668
115	배관공	86,141	73,420	71,064
116	배선공	83,252	56,838	52,057
117	권선공 - 코일	61,812	55,341	47,353
118	목재포장공	57,278	52,942	53,055
119	물품포장공	54,855	49,081	46,978
120	철강포장공	60,132	47,739	45,669

번호	직종명	2011.9	2010.9	2009.9
121	제품출하공	62,934	60,843	54,175
122	전산용지정합공	68,216	64,505	61,165
123	스캔기능공※	61,764	65,275	63,968
124	교정사	56,233	59,387	60,674
125	전자편집디자인	90,829	85,212	72,396
126	스티카인쇄공	73,936	72,590	71,263
127	전자조판공	66,362	66,306	69,535
128	사진제판공	80,578	70,563	62,934
129	옵셋인쇄공	73,980	67,793	63,020
130	인쇄동판제조공	65,740	74,579	62,928
131	인쇄연판제조공※	88,253	71,961	67,928
132	제본공	66,247	69,372	60,767
133	지류제단공	67,916	68,291	60,316
134	전자출판출력공※	72,952	76,587	71,158
135	활판인쇄공	73,527	75,476	65,252
136	금박공	65,749	62,624	59,923
137	연포장재접합공	60,863	59,731	60,944
138	관권공	53,637	50,118	47,708
139	방직기계보전공	60,796	59,473	58,924
140	스냅공※	45,204	43,136	44,339
141	연단공	58,435	51,888	48,201
142	연사공	56,364	53,581	45,344
143	염직공	63,451	55,814	55,679
144	오바로그공	47,172	46,538	47,504
145	이본침공	49,964	45,839	44,535
146	인타로그공	-	39,626	40,273
147	정경공	63,047	58,059	48,848
148	재봉기운용사	52,756	47,506	45,888
149	제화공	59,397	60,226	54,885
150	직물제단공	62,911	49,595	50,094
151	직물제단사	66,769	63,305	55,723
152	직포공	66,338	56,574	48,318
153	침염공	57,020	50,125	52,372
154	편직공	60,745	53,626	46,184
155	피혁공	57,536	60,925	51,886
156	상침공	56,790	48,353	43,871
157	하침공	50,088	43,376	41,468
158	통신내외선공	81,774	65,449	68,883
159	전기기사	81,905	89,150	82,417
160	전기산업기사	87,038	77,482	80,193

번호	직 종 명	2011.9	2010.9	2009.9
161	전 기 기 능 사	79,263	78,685	67,249
162	목 공 및 유 리 공	63,318	61,282	-
163	컴 퓨 터 H / W 기 사 ※	98,036	124,092	108,674
164	컴 퓨 터 S / W 기 사 ※	92,502	100,204	97,376
165	컴 퓨 터 운 용 사	96,200	107,264	92,631
166	콘크리트제품성형기운전공	67,512	65,544	-
167	중 기 운 전 사	64,678	69,123	62,994
168	트 레 일 러 공 ※	53,490	-	61,810
169	돌 분쇄 공 ※	75,690	74,570	60,202
170	착 압 공 ※	75,352	72,985	64,545
171	소 성 공	70,855	53,028	51,759
172	인 조 석 가 공 공	70,288	63,377	-
173	폐 수 처 리 공	68,316	66,367	63,174
174	식 품 제 조 공	52,495	52,058	46,411
175	보 통 인 부	57,859	53,160	49,430
176	작 업 반 장	78,307	74,290	72,019
177	안 전 관 리 사	87,939	90,616	85,469
178	벨트콘베이어작업공	73,632	66,108	46,827
179	보 일 러 공	77,504	61,894	63,759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이하인 직종임

○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고용노동부 2010년 조사)

직 종	근로일수 (일)	월급여총액 (천원)	1일임금 (원)
사무 종사자	22.5	2,360,466	104,910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22.2	2,447,381	110,24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22.4	2,483,683	110,879
법률 및 감사 사무직	21	2,835,019	135,001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21.2	2,726,875	128,626
서비스 종사자	22	1,709,542	77,706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23.1	1,617,363	70,016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21.1	2,040,798	96,720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22.6	1,457,784	64,50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22.4	1,849,757	82,578
판매 종사자	23.9	1,541,434	64,495
영업직	22.5	2,270,084	100,893
매장 판매직	22.4	2,716,007	121,250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22.9	1,565,710	68,37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2.1	1,933,743	87,500
농축산 숙련직	23	1,913,601	83,200
임업 숙련직	23.2	1,951,687	84,124
어업 숙련직	21.5	1,481,980	68,92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1.6	1,876,018	86,853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23.3	2,123,991	91,158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23.8	1,532,999	64,412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23.4	1,500,409	64,120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24.3	1,623,095	66,794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24	2,185,873	91,078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23	2,379,330	103,449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23.2	2,159,590	93,086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23.3	1,942,483	83,368
기타 기능 관련직	22.7	2,629,018	115,81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3.1	1,958,454	84,782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23.3	1,989,589	85,390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23.4	1,986,985	84,914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25	1,741,338	69,65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23.5	2,071,212	88,137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24.3	2,155,616	88,708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23.6	2,107,228	89,28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2.6	2,022,074	89,472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22.6	1,847,208	81,735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22.6	2,214,391	97,982
단순 노무 종사자	24	1,873,441	78,060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22.3	1,403,237	62,925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23.7	1,608,230	67,858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22.8	1,814,504	79,58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23.9	1,468,812	61,457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21.3	1,311,645	61,580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22.9	1,266,672	55,313

부양능력판정표

〈부양능력판정표-보장비용징수제외특례〉

부양 능력 판정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수급권자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1인가구	1,628,906	164,249,986	2,212,170	175,439,712	2,627,184	183,401,612	3,042,200	191,363,540	3,457,215	199,325,468	3,872,231	207,287,396
2인가구	2,190,276	175,019,683	2,773,541	186,209,410	3,188,555	194,171,309	3,603,570	202,133,237	4,018,586	210,095,165	4,433,601	218,057,094
3인가구	2,589,713	182,682,734	3,172,977	193,872,460	3,587,991	201,834,360	4,003,007	209,796,288	4,418,022	217,756,216	4,833,036	225,720,144
4인가구	2,989,151	190,345,613	3,572,415	201,535,540	3,987,429	209,497,439	4,402,445	217,459,367	4,817,460	225,421,295	5,232,476	233,363,223
5인가구	3,388,587	198,008,863	3,971,852	209,198,590	4,386,866	217,160,489	4,801,881	225,122,417	5,216,897	233,084,345	5,631,912	241,046,273
6인가구	3,788,024	205,671,914	4,371,288	216,861,640	4,786,302	224,823,540	5,201,318	232,785,468	5,616,333	240,747,396	6,031,349	248,709,324
1인가구	1,628,906	139,749,986	2,212,170	150,939,712	2,627,184	159,901,612	3,042,200	166,863,540	3,457,215	174,825,468	3,872,231	182,787,396
2인가구	2,190,276	150,519,683	2,773,541	161,709,410	3,188,555	169,671,309	3,603,570	177,633,237	4,018,586	185,595,165	4,433,601	193,557,094
3인가구	2,589,713	158,182,734	3,172,977	169,372,460	3,587,991	177,334,360	4,003,007	185,296,288	4,418,022	193,256,216	4,833,036	201,220,144
4인가구	2,989,151	165,845,613	3,572,415	177,095,540	3,987,429	184,997,439	4,402,445	192,959,367	4,817,460	200,321,295	5,232,476	208,883,223
5인가구	3,388,587	173,508,863	3,971,852	184,698,590	4,386,866	192,660,489	4,801,881	200,622,417	5,216,897	208,584,345	5,631,912	216,546,273
6인가구	3,788,024	181,171,914	4,371,288	192,361,640	4,786,302	200,323,540	5,201,318	208,285,468	5,616,333	216,247,396	6,031,349	224,209,324
1인가구	1,628,906	132,749,986	2,212,170	143,939,712	2,627,184	151,901,612	3,042,200	159,863,540	3,457,215	167,825,468	3,872,231	175,787,396
2인가구	2,190,276	143,519,683	2,773,541	154,709,410	3,188,555	162,671,309	3,603,570	170,633,237	4,018,586	178,595,165	4,433,601	186,557,094
3인가구	2,589,713	151,182,734	3,172,977	162,372,460	3,587,991	170,334,360	4,003,007	178,296,288	4,418,022	186,256,216	4,833,036	194,220,144
4인가구	2,989,151	158,845,613	3,572,415	170,095,540	3,987,429	177,997,439	4,402,445	185,959,367	4,817,460	193,321,295	5,232,476	201,883,223
5인가구	3,388,587	166,508,863	3,971,852	177,698,590	4,386,866	185,660,489	4,801,881	193,622,417	5,216,897	201,584,345	5,631,912	209,546,273
6인가구	3,788,024	174,171,914	4,371,288	185,361,640	4,786,302	193,323,540	5,201,318	201,285,468	5,616,333	209,247,396	6,031,349	217,209,324

* 실제소득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인 150%이하
 * 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인 120%이하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과 재산이 모두 해당금액 이하일때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

〈부양능력판정표-시설입소자부양의무특례〉-재산액

부양 능력 판 정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부양 의무자	553,9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수급권자	소득	재산	소득	재산	
대도시	1인가구	1,411,718	159,041,655	1,917,214	168,366,427	2,276,893	175,001,343	2,636,573	181,636,283	2,996,253	188,271,223	3,355,933	194,906,163
	2인가구	1,898,239	168,016,403	2,403,735	177,341,175	2,763,414	183,976,091	3,123,094	190,611,031	3,482,774	197,245,971	3,842,454	203,880,911
	3인가구	2,244,418	174,402,278	2,749,913	183,727,050	3,109,592	190,361,966	3,469,272	196,996,906	3,828,952	203,631,847	4,188,633	210,266,787
	4인가구	2,590,597	180,788,177	3,096,093	190,112,950	3,455,772	196,747,866	3,815,452	203,362,806	4,175,132	210,017,746	4,534,812	216,652,686
	5인가구	2,936,775	187,174,053	3,442,271	196,498,825	3,801,950	203,133,741	4,161,630	209,768,681	4,521,310	216,403,621	4,880,990	223,038,561
	6인가구	3,282,954	193,559,928	3,788,450	202,884,700	4,146,128	209,519,616	4,507,809	216,154,556	4,867,489	222,789,496	5,227,169	229,424,436
중소 도시	1인가구	1,411,718	159,041,655	1,917,214	168,366,427	2,276,893	175,001,343	2,636,573	181,636,283	2,996,253	188,271,223	3,355,933	194,906,163
	2인가구	1,898,239	168,016,403	2,403,735	177,341,175	2,763,414	183,976,091	3,123,094	190,611,031	3,482,774	197,245,971	3,842,454	203,880,911
	3인가구	2,244,418	174,402,278	2,749,913	183,727,050	3,109,592	190,361,966	3,469,272	196,996,906	3,828,952	203,631,847	4,188,633	210,266,787
	4인가구	2,590,597	180,788,177	3,096,093	190,112,950	3,455,772	196,747,866	3,815,452	203,362,806	4,175,132	210,017,746	4,534,812	216,652,686
	5인가구	2,936,775	187,174,053	3,442,271	196,498,825	3,801,950	203,133,741	4,161,630	209,768,681	4,521,310	216,403,621	4,880,990	223,038,561
	6인가구	3,282,954	193,559,928	3,788,450	202,884,700	4,146,128	209,519,616	4,507,809	216,154,556	4,867,489	222,789,496	5,227,169	229,424,436
농어촌	1인가구	1,411,718	159,041,655	1,917,214	168,366,427	2,276,893	175,001,343	2,636,573	181,636,283	2,996,253	188,271,223	3,355,933	194,906,163
	2인가구	1,898,239	168,016,403	2,403,735	177,341,175	2,763,414	183,976,091	3,123,094	190,611,031	3,482,774	197,245,971	3,842,454	203,880,911
	3인가구	2,244,418	174,402,278	2,749,913	183,727,050	3,109,592	190,361,966	3,469,272	196,996,906	3,828,952	203,631,847	4,188,633	210,266,787
	4인가구	2,590,597	180,788,177	3,096,093	190,112,950	3,455,772	196,747,866	3,815,452	203,362,806	4,175,132	210,017,746	4,534,812	216,652,686
	5인가구	2,936,775	187,174,053	3,442,271	196,498,825	3,801,950	203,133,741	4,161,630	209,768,681	4,521,310	216,403,621	4,880,990	223,038,561
	6인가구	3,282,954	193,559,928	3,788,450	202,884,700	4,146,128	209,519,616	4,507,809	216,154,556	4,867,489	222,789,496	5,227,169	229,424,436

* 실제소득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인 130%이하
 * 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 이하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과 재산이 모두 해당금액 이하일때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

Ⅲ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107개 질환)

연번	상병코드	상 병	비 고
1	A18.3	장,복막 및 장간막 림프절의 결핵	
2	A81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3	B20-B2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4	B25	거대세포바이러스병	
5	B45	크립토콕쿠스증	
6	C90-C96	백혈병	
7	C00-C86.5, C88, C97, D00-D09	악성신생물	
8	D35.2	뇌하수체 양성 신생물	
9	D55.0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G6PD] 결핍에 의한 빈혈	
10	D55.2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11	D59.5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증	
12	D60-D61	무형성 빈혈	
13	D66-D68.4	혈우병	
14	D69.1	정성적 혈소판결합	
15	D69.30	에반스 증후군	
16	D69.6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17	D70	무과립구증	
18	D71	다형핵 호중구의 기능적 장애	
19	D76.1, D76.2, D76.3	림프세망 및 세망조직구 조직의 참여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질환	

연번	상병코드	상 병	비 고
20	D80-D84.9	면역결핍증	
21	D86	사르코이드증	
22	E22.0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23	E22.1	고프로락틴혈증	
24	E23.0	콜만증후군, 쉬한 증후군	
25	E24	쿠싱증후군	
26	E25	부신생식기장애	
27	E27.1, E27.4	E27.2, 부신의 기타장애	
28	E34.8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레프리카니즘 등)	
29	E70-E77	대사장애	
30	E80.2	기타 포르피린증	
31	E83.0	구리대사장애(윌슨병 등)	
32	E83.3	인 대사 장애	
33	E84	낭성섬유증	
34	E85	아밀로이드증	
35	F84.2	레트 증후군	
36	G10	헌팅톤병	
37	G11	유전성 운동실조	
38	G12	척수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39	G1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40	G20	파킨슨병	
41	G23.1	진행성 핵상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 제위스키]	

연번	상병코드	상 병	비 고
42	G35	다발성 경화증	
43	G41	간질지속상태	
44	G51.2	멜커슨 증후군	
45	G56.4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II형	
46	G60.0	유전성 운동 및 감각신경병증(샤르코-마리-투스병 등)	
47	G63.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48	G90.8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49	G95.0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50	G61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51	G70.0-G70.2	중증근무력증	
52	G71.0-G71.3	근육의 일차성 장애	
53	H35.31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54	I27.0	일차성 폐동맥 고혈압	
55	I82.0	버드-키아리 증후군	
56	I42.0-I42.4	심근병증	
57	I67.5	모야모야병	
58	I73.1	폐쇄성 혈전 혈관염(버거병)	
59	K50	크론병[국한성 장염]	
60	K51	궤양성 결장염	
61	K74.3	일차성 담즙성 간경화증	
62	K75.4	자가면역성 간염	
63	L10	천포창	

연번	상병코드	상 병	비 고
64	L12.3	후천성 수포성 표피분리증	
65	M08.0-M08.3	연소성 관절염	
66	M30.0-M30.2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병태	
67	M31.0-M31.4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68	M32	전신성 홍반루프스	
69	M33	피부다발근육염	
70	M34	전신경화증	
71	M35.0-M35.7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습	
72	M45	강직성 척추염	
73	M89.0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74	M94.1	재발성 다발연골염	
75	N18	만성 신장질환	
76	N25.1	신장성 요붕증	
77	P22	신생아의 호흡곤란	
78	Q05	이분척추	
79	Q06.2	척수이개증	
80	Q07.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81	Q20.0-Q20.2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82	Q22.0	폐동맥판 폐쇄	
83	Q22.6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	
84	Q23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85	Q24.5	관상 혈관의 기형	
86	Q25.5	폐동맥의 폐쇄	
87	Q26.0-Q26.6	대정맥의 선천 기형	

연번	상병코드	상 병	비 고
88	Q44.2	담관의 폐쇄	
89	Q75.1	두개안면골형성이상(크루종병)	
90	Q75.4	하악안면골형성이상	
91	Q77.4	연골무형성증	
92	Q77.5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93	Q77.7	척추골단형성이상	
94	Q78.0	불완전골형성증	
95	Q78.1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알브라이트 증후군)	
96	Q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97	Q81.1, Q81.2	치사성,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98	Q85.0	신경섬유종증(비악성)(폰렉클링하우젠병)	
99	Q85.1	결절성 경화증	
100	Q86.0	(이상 형태성)태아알코올증후군	
101	Q87.0	주로 얼굴 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Apert, 골덴하증후군 등)	
102	Q87.1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프라더윌리증후군 등)	
103	Q87.4	마르팡증후군	
104	Q90	다운증후군	
105	Q91	에드워즈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106	Q93.4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107	Q96	터너증후군	

IV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신청가능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교과서대: 1인당 115.7천원(연1회) - 학용품비: 1인당 48천원(학기당 24천원) -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34.9천원(연1회) 지급	- 중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 미지급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500천원	쌍둥이 출산시 1,000천원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500천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 타제도 지원내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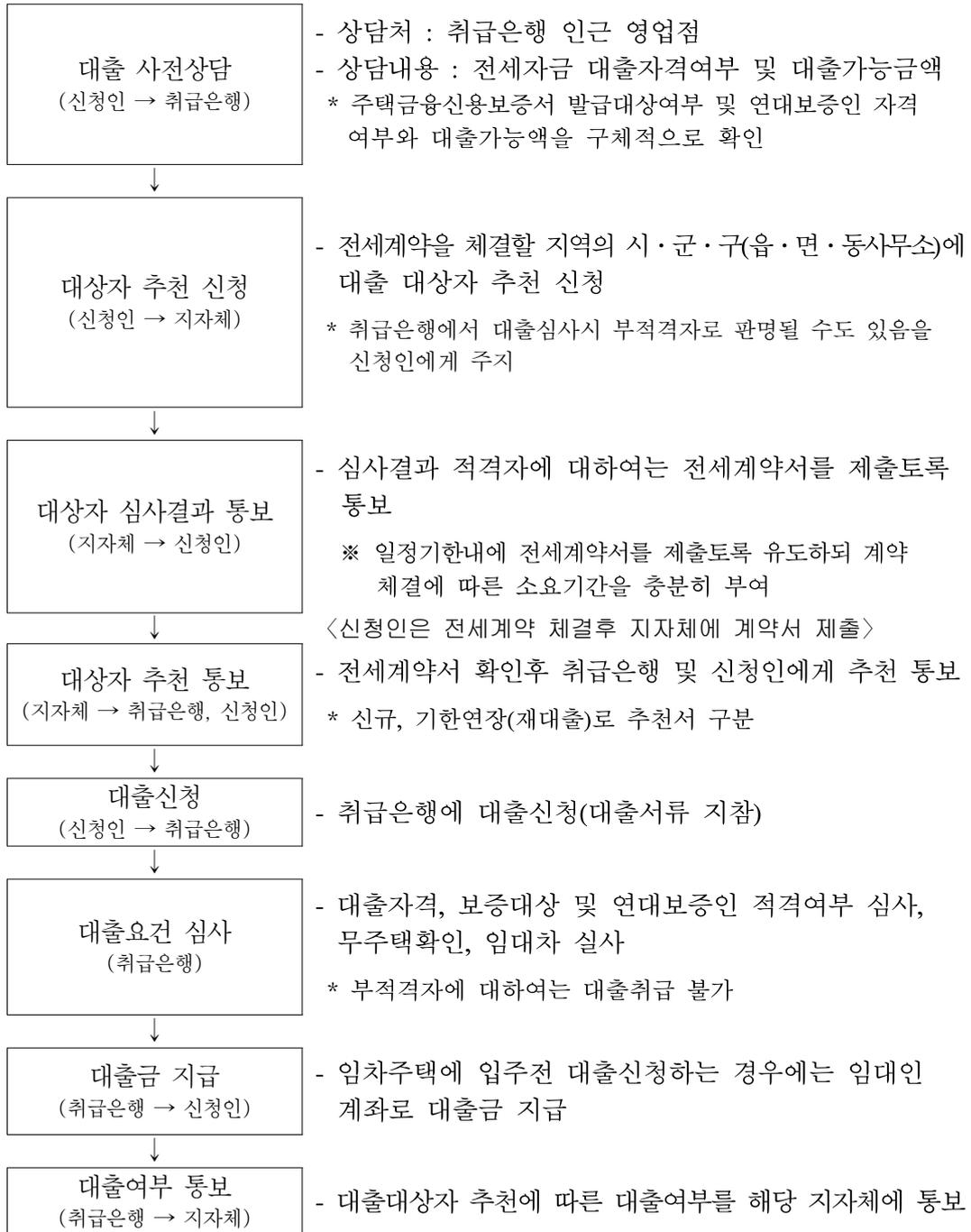
지원내용	비고
<input type="checkbox"/>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사·군구에서 일괄 면제
<input type="checkbox"/>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20%)	한국전력공사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주민센터
<input type="checkbox"/>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 업체에 직접 신청
<input type="checkbox"/>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면·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input type="checkbox"/>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input type="checkbox"/>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input type="checkbox"/>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V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사업



VI

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가. 법률구조제도란

-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임

나. 법률상담

- 법률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상담하거나 전화, 서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담

▶ 면접상담

- 공단 각 사무실에서 직접상담
- 평 일 : 오전 10시~12시, 오후 13시~오후 17시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 평 일 : 오전 9시~12시, 오후 13시~오후 18시

민사·가사사건

- 공단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단,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은 구조가능)한 모든 민사·가사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해주고 있음

▶ 대상자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헌법재판소가 공단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개인회생, 파산사건 포함)을 받은 사람
 -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농어민,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영세담배소매인, 체불임금근로자,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 범죄피해자, 소상공인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여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사건처리절차

-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됨
-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함
-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됨
- 한편, 공단에서 구조기각으로 결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자가 이에 불복하면 공단의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된 사건을 재검토하여 구조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됨

▶ 소송비용

-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음

- 그러나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 받음
- 의뢰자는 공단에 상환할 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상환 하도록 하거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함
-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아래의 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정한 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음

무료법률구조사업

-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마저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하기 힘든 국민들을 위한 보완책
 - 공단은 여러 기관들과의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 동 기관들로부터 출연받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
- **대상**으로는 농·어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범죄피해자, 사회연대은행(사) 함께만드는세상의 지원수혜자,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민·가사사건에 한함),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족, 조부모가족(양육비, 인지청구사건에 한함), 임금 등 체불피해근로자(민사사건에 한함),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 소상공자영업자(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형 사 사 건

- 공단에서는 민사·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하고 있음. 즉,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공단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를 해주고 있음

▶ 대상자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 가정폭력·성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국선변호사건(법원이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농·어민,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영세담배소매인 등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 사건처리절차

- 구조신청은 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 서면으로 하면 되고, 공단에서는 구조대상자 여부,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구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구조가 결정되면 소속변호사등이 형사변호를 하며, 구조기각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사건은 재검토하여 구조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됨
 - 다만 구조대상자나 구조대상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조기각된 사건은 제외
- 이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심사한 결과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하고 원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결정을 함

▶ 소송비용

-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등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음.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

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 행정소송사건(항고소송사건에 한함)
 -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은 제외(단,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은 구조가능)

- ▶ 헌법소원사건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또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한자 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경우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음

- ▶ 대 상 자
 - 민사·가사사건과 동일하나 외국인은 제외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 ▶ 사건처리절차와 소송비용
 -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되고 사건처리절차 및 소송비용은 민사사건과 동일함

▶ 공단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 (전국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

기관명	주 소	업무전화
본 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법원길 13(서초3동 1703-10)	02-532-0132
서울중앙지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법원길 13(서초3동 1703-10)	02-3482-0872
서울동부지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16-2 제일빌딩 3층	02-457-4403
서울남부지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7-3 승소빌딩 2층	02-2646-6117
서울북부지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동 661-3 북부포커스빌 2층	02-978-4240
서울서부지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59 마포법조빌딩 4층	02-713-6039
의정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3층	031-876-0954
고양출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8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내	031-907-2132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278-1 인천지검 2층	032-874-3374
부천출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8층 805호	032-325-5387
수원지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1층	031-211-1775
성남출장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23 신우빌딩 4, 5층	031-748-6177
여주출장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흥문리 72-8 동부빌딩 3층	031-884-7640
평택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245-1 수원지검 평택지청내	031-656-9144
안산출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4 한남법조타운 3층 301호	031-482-2773
춘천지부	강원도 춘천시 호지2동 709-10 화남빌딩 1층	033-251-8301
강릉출장소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138번지 춘천지검 강릉지청 1층	033-645-3163
원주출장소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1049-2 2층	033-748-0763
속초출장소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80-2 동명빌딩 2층	033-636-8511
영월출장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59-24	033-373-1910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0 대전지검내	042-472-9062
홍성출장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8 대전지검 홍성지청내	041-634-4476
공주출장소	충남 공주시 반죽동 226-1 2층	041-857-6132
논산출장소	충남 논산군 강경읍 대흥리 44-5, 2층	041-745-4478
서산출장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00 서산지청내	041-667-4054
천안출장소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3-7 서울빌딩 3층	041-563-6174
청주지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82-1 2층	043-299-4676
충주출장소	충북 충주시 충의동 14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043-854-0402
제천출장소	충북 제천시 중앙로2가 68-19 3층	043-646-5011
영동출장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04-3번지 청주지검 영동지청 내	043-744-9600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8-2 대구지검내	053-740-3676

기관명	주소	업무전화
안동출장소	경북 안동시 정하동 235-2 안동지청 내 1층 법률구조실	054-856-2595
경주출장소	경북 경주시 동부동 203-1 경주지청내	054-775-5553
김천출장소	경북 김천시 삼락동 1222 대구지검 김천지청내	054-433-1780
상주출장소	경북 상주시 만산동 652-2 대구지검 상주지청내 1층	054-535-3277
의성출장소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748 대구지검 의성지청내	054-833-5402
영덕출장소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1 대구지검 영덕지청내	054-734-1745
포항출장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768 대구지검 포항지청내	054-251-6111
서부출장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32 대구지검 서부지청내	053-573-1320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1 부산지검내	051-505-1643
부산동부출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33 부산지검 동부지청내	051-780-4676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635-3 울산지방검찰청내	052-228-4676
창원지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3 변호사회관 4층	055-266-3382
진주출장소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6-100 2층	055-760-4677
통영출장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7 창원지검 통영지청내	055-649-1830
밀양출장소	경남 밀양시 내이동 428 창원지검 밀양지청내	055-356-5131
거창출장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1-8	055-942-8436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342-1 광주지검내	062-224-7806
목포출장소	전남 목포시 용해동 818 광주지검 목포지청내	061-277-2025
장흥출장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신리 414-4 (주)KT 장흥지점 3층	061-863-8856
순천출장소	전남 순천시 왕지동 777-1 광주지검 순천지청내	061-725-8121
해남출장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1-6 해남축협 2층	061-536-9945
전주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76-24 한경빌딩 4, 5층	063)251-4034
군산출장소	전북 군산시 조촌동 883 영창빌딩 2층	063-472-4676
정읍출장소	전북 정읍시 수성동 989-6 정읍지청내	063-533-9644
남원출장소	전북 남원시 하정동 67-2 중앙약국 2층	063-626-5789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950-1 제주지검내	064-753-9955

『ARS·FAX 법률정보』 이용방법

1.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를 누름
2. 전화가 연결되면 “2번”을 누름
 안내에 따라 해당하는 사례를 선택하여 내용을 청취한 후, FAX로 받기를 희망하면 안내에 따라 FAX번호를 입력

VII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소개

1. 설립목적

-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과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가계파산을 예방
- 서민의 금융상담 및 신용관리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전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 참여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축소 및 회수비용 절감을 통하여 자산건전성 제고

2. 신용회복위원회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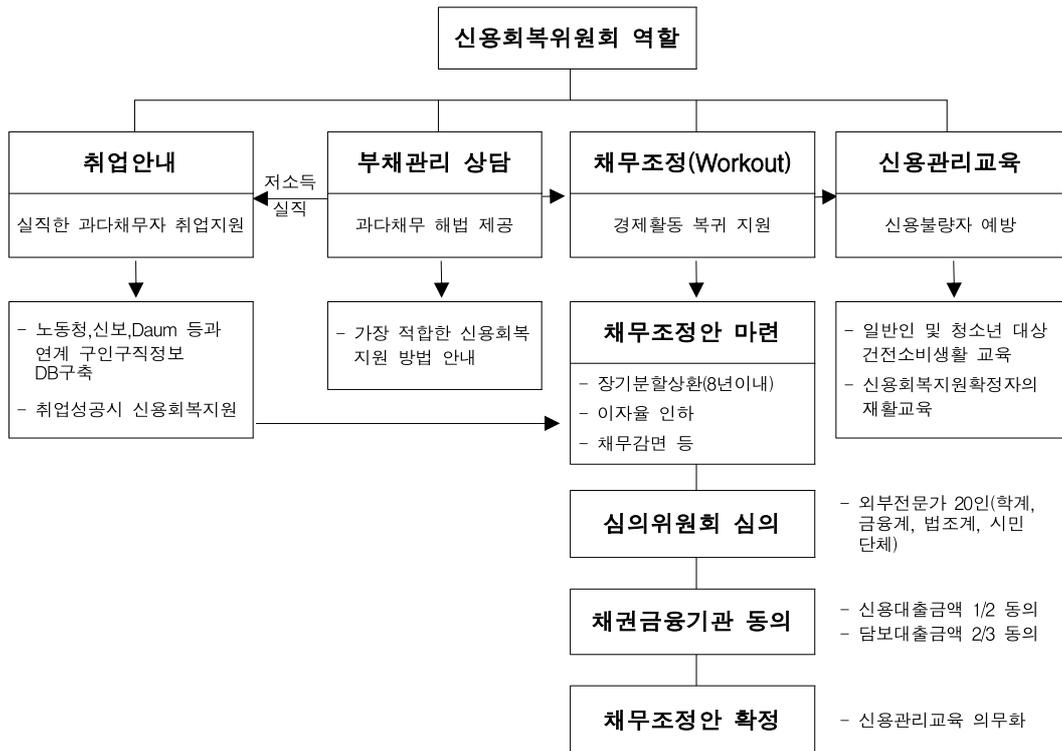
- 2002.1.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을 계획(금융감독원)
- 2002.10.1. 신용회복지원업무 개시
- 2003.11.1.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
- 2004.10.8. 무료 취업안내센터 설치
- 2004.10.11. 파산에 관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개시
- 2005.4.1. 생계형 특별 신용회복지원업무 개시

3.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

과다한 채무로 인한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여 가계파산을 예방

- 신용관리 및 신용회복에 관한 상담
 -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부채관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재기의욕을 고취
- 채무조정 업무
 -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다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지원

- 신용관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일반인 및 대학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현금관리, 부채관리 및 올바른 신용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신용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과다채무자의 예방 및 재발을 방지
 - 신용관리 및 신용회복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신용관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정부에 건의
 - 무료 취업안내센터의 운영
 - 실직 또는 소득이 부족한 과다채무자에게 취업을 안내하여 소득 창출의 기회 제공하고 채무를 조정하여 줌으로써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 ⇒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과다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과다채무자 발생을 예방하여 신용사회 확립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



신용회복지원제도

1. 지원대상

-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과다연체자(3개월이상 연체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본인 소득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지 등의 도움을 받아 채무상환이 가능한 자도 신청 가능)
- 신청일 당시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예정인 자
- 국가기관 등에서 사회소외계층으로 인정하여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자

2. 지원(채무조정) 내용

채무상환 의지가 있는 연체자(3개월 이상)를 대상으로 다양한 채무조정 방법을 통해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채권에 한하여 1/2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 상환 유예
 - 채무자별 채권의 성격, 변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의 상환을 유예
- 상환기간의 연장
 -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최장 8년 : 원금상환기간
- 분할상환
 - 각 사정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음

3. 기타

- 신청으로 채권기관의 채무상환 독촉 중단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방문하여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 및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봉급생활자의 급여에 가압류 등으로 월 급여의 50%만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모든 채권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당해채무자의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함

신청서류 및 상담안내

1. 신청서류

신용회복지원신청서 [위원회양식]	필수
주민등록증 사본	필수
주민등록 등본	필수
재산증명서류 - 소유부동산 등기부 등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소득증명서류 -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증명(진술)서 [위원회양식]	택 1 - 소득증명서류제출이 불가능하여 성실 신고를 전제로 소득진술서(위원회양식)로 대체 가능
급여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적립금액 확인서 [위원회양식]	해당하는 경우
위임장 [위원회 양식]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 [위원회 양식]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상담안내

◆ 방문 상담 : 전국 22개 지부 및 상담소(안내 참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전화 상담 : ☎ (지역번호없이) 1600-550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인터넷 상담 : www.ccrs.or.kr 신청자격이나 채무조정 또는 제도내용과 관련된 상담
◆ 무료취업안내 상담 : ☎ 02-6362-2047, 2048 및 홈페이지 job.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주소안내(지부 및 상담소)

지부/상담소	주소 및 전화번호
사무국 및 명동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 1600-5500
서울 영등포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150-0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 1600-5500
부산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422-8번지 국민연금공단 6층 ☎ 1600-5500
광주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빌딩 6층 ☎ 1600-5500
대구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 대우빌딩 4층 ☎ 1600-5500
대전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1600-5500
인천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205-11 인일빌딩 2층 ☎ 1600-5500
경기도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8 현대증권빌딩 9층 ☎ 1600-5500
의정부 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한국씨티은행건물 4층 ☎ 1600-5500
원주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 마노벨라빌딩 3층 ☎ 1600-5500
청주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 1600-5500
전주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72-3번지 대한생명빌딩 3층 ☎ 1600-5500
울산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번지 삼호빌딩 10층 ☎ 1600-5500
마산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무학빌딩 3층 ☎ 1600-5500
순천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26-2 동양생명빌딩 8층 ☎ 1600-5500
제주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 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1600-5500
강릉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강원도 강릉시 흥제동 1001번지 강릉시청 15층 ☎ 1600-5500
목포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121-4번지 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 1층 ☎ 1600-5500
안산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6-5번지 BYC건물 5층 ☎ 1600-5500
서울당산동 교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 : (150-7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3-1 ☎ 1600-5500

VIII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안내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05. 12. 1.부터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구조 제도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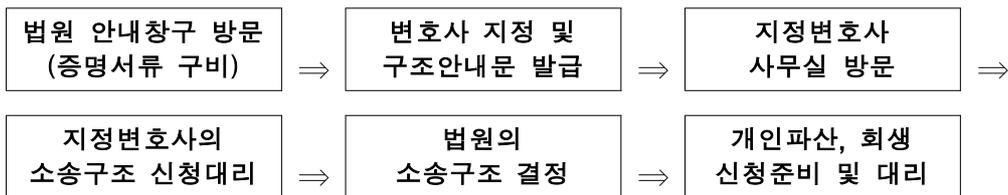
1. 소송구조 대상자(증명서류)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나.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모·부자가정 증명서)
- 다. 65세 이상인 자(주민등록표등본)

2.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에 한함(공고료, 송달료는 본인 부담)

3. 소송구조의 이용 절차



4.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이용자는 지정 변호사로부터 아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을 요구 하여서는 아니됨

- 가.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 나.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변제계획 포함)
- 다.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 라.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개인회생 제도란?

- 개인회생 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 소득액 중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5년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면책 제도란?

- 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그 법적 정리를 신청하는 제도이며,
 - 면책이란 법적 정리를 마친 후 남은 채무에 대하여 재판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상세한 내용은 법원에서 배부하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안내」 책자를 이용하시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전화(530-1537, 2187, 2317)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1. 기본자격요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이며,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2. 대출절차

- 인터넷(학자금대출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으로 대출신청 → 대학 또는 재단에 증빙서류 제출 → 대출대상자 심사 및 추천 → 대출대상자 선정·통지 →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3. 대출조건

- 1인당 총 대출한도(재학기간 중)
 -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 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학기당 대출범위
 - 등록금 + 생활비 (*10-1학기부터 보증료는 제외 예정)
(단, 생활비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대출신청시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에게만 대출)
- 대출금리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한하여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동안만 기금이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 대출기간
 -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는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은 남은 재학연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거치기간 이내에서 연단위로 학생이 선택

4. 상환방법

- 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납부액이 매월 줄어드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한가지 선택

○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장학복지과 (☎ 02-2100-6270~4)
- 한국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 (☎ 1666-5114)
- 학자금대출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

X

압류방지 전용통장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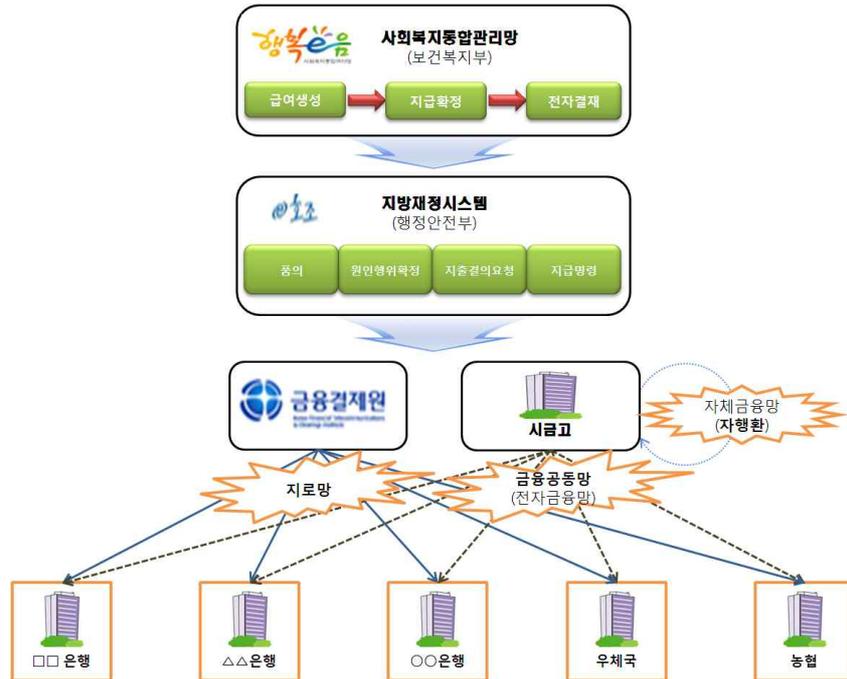
-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신규 상품으로 개발
- 보장기관(국가·시도·시군구)이 위 전용통장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내역을 송부할 때 **일정한 코드 값을 부여**하여 전송
- 금융기관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동 **코드값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방지 계좌에 입금을 허용**하고, 코드값이 없으면 입금을 차단
 - 아울러, 동 전용통장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되지 않도록 관리**

2. 급여지급 흐름에 따른 관계기관의 역할

가. 급여지급 흐름도

- 보장기관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입금을 의뢰하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혹은 e-호조 시스템)**」을 경유하여 **이후 크게 세가지 흐름**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첫째, **금융결제원의 지로망**을 통해 **각 금융기관**으로 전송되는 흐름
 - 둘째, **시금고 은행**을 거쳐 **전자금융망**을 통해 **각 금융기관**으로 전송되는 흐름
 시금고 은행 : 우리은행(서울), 농협(9개 시도), 부산은행(부산),
 기업은행(수원), 전북은행(전주·완주)
 - 셋째, **시금고 은행**에서 자체 전산망(**일명 자행환**)을 통해 **자기 해당은행**의 계좌로 입금되는 흐름

< 복지급여 지급의 흐름도 >



나. 각 관련기관의 역할

- (복지부) 시통망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압류금지 구분 필드(2자리) 추가 및 전송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시스템에 압류금지 구분 필드 추가 및 전송
- (금융결제원) 지로망과 전자금융망에 압류금지 구분 필드 추가 및 전송
- (시금고은행) 지방재정시스템과 전자금융망 압류금지 구분 필드 추가
- (모든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프로그램 추가 개발사항(지로망과 전자금융망)과 동일하게 프로그램 개발
 - * 프로그램 개발 일정 및 주요내용은 금융결제원에서 별도 통보 예정(12월)
- (압류방지 참여 금융기관) 압류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개발

□ 상품내용(案)

구 분	내 용
상품명	▷ 『행복 지킴이 통장』 ※ 각 은행별로 상품명은 ‘우리’행복지킴이통장, ‘국민’행복지킴이통장으로 ‘은행명’+‘행복지킴이통장’식으로 표시됩니다.
통장확인	▷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문구로 확인 ※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확인은 통장의 첫 페이지 (인감이 날인된 면)에 “압류방지전용통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은행은 통장을 개설할 때, 예금주(수급자)가 ‘기초수급자 증명서’ 제출한 경우에만 개설해 드립니다.
상품특징	▷ 본 통장은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u>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u>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압류명령이 은행에 도달한 경우, ‘행복지킴이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에만 은행은 압류등록합니다.
근거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u>
상품내용	▷ <u>입금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만 가능</u> ※ 은행이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행복e음’에서 수급자의 성명이나 계좌번호를 오입력 한 경우, 은행에서 오입력사항에 대해 회신해 드리며 이러한 경우 수정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는 일부 시금고에서 공문접수후 처리중이나, 향후 제한됨) ▷ 지급 : 제한없음

구 분	내 용
거래제한	<p>▷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하는 일체행위 제한</p> <p>※ (가)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불가</p> <p>※ 타인으로부터의 양도, 타인에게서 양수하는 행위 불가</p>
유의사항	<p>▷ ‘행복 지킴이 통장’을 카드결제용, 대출금납입용으로 사용하여 취소나 연체발생시 은행에 직접 내점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p> <p>※ 압류방지를 위해 ‘복지부’의 입금만 허용하기 때문에, ‘카드결제후 취소시 카드사의 환급금’이나 ‘연체발생시 연체납부금’도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별도로 환급받거나, 대출연체금 납부를 위해 영업점을 내점하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결제계좌를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p> <p>▷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만 입금가능하므로, 카드결제 사용은 자제하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3.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 변경 주의사항

가. 기초생활수급자만 전용통장 개설 가능

-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급여만 입금되며 그 이외의 금원은 입금될 수 없음
- ※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에 주의

나. 계좌변경 주의사항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인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
 - 기초생활수급자만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등)은 가입할 수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받고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되며, 그 외의 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될 수 없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행복e음의 압류방지계좌 등록관리에만 등록
 - 행복e음의 상담·신청/계좌관리/계좌정보등록관리/압류방지계좌 등록관리에 입력
 -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방지계좌로 등록할 수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다른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압류방지계좌 등록관리에 등록하지 않음에 주의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시스템상 일정한 코드번호가 부여되어 금융전자망을 통하여 수급자 계좌에 입금되므로
 - **압류계좌를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계좌로 입력**하면 **입금오류 사태가 발생함**
 - 시범실시 기간에도 위의 사례가 오류의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계좌등록에 각별한 주의 요망

다. 입금오류 발생시 처리방법

- 은행 이체이후 입금불능 처리된 경우(일반계좌오류처리와 동일)
 - (오류내역 확인) 압류방지계좌인데 압류방지여부가 “No” 되어 있거나 일반계좌 인데 압류방지여부가 “Yes” 되어 있는 경우 및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성명 등 오류확인
 - (반납처리) 오류대상자를 e-호조(지방재정시스템)에서 반납처리
 - (오류현황조회) 반납처리된 대상자는 행복e음 “지방재정연계처리현황”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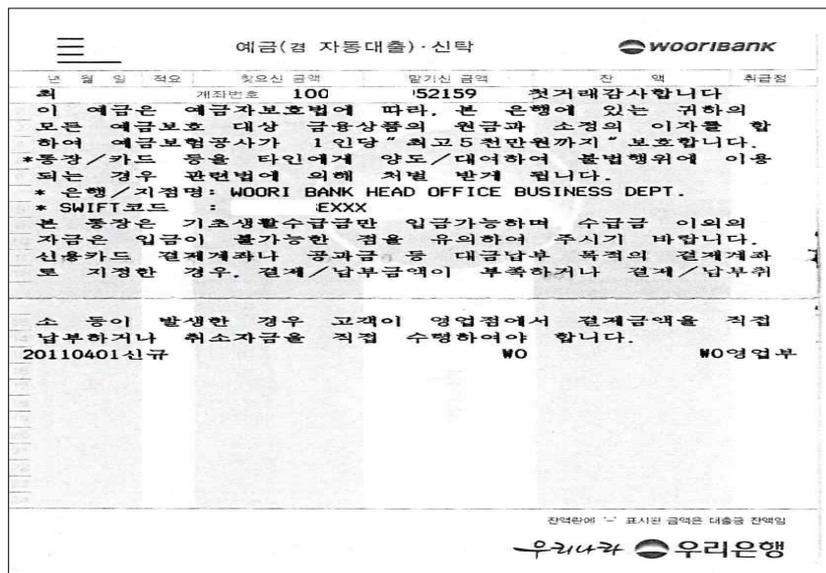
오류현황 화면에서 조회

- (계좌 변경후 재 지급) 오류현황에서 조회된 대상자를 확인하고 계좌정보만 변경처리 하여 재 지급
- ※ 유의 : 오류현황에서 변경한 계좌정보는 1회성임
- (계좌정보변경) 지급이후 오류발생대상자의 “복지급여계좌신규·변경신청” 화면에서 계좌정보 정정처리

[행복지킴이 통장 - 표지(예)]



[행복지킴이 통장 - 내지(예)]



XI

기초생활보장 업무 관련 홈페이지

홈페이지 주소	활용가능한 자료	운영기관 및 단체
http://www.mw.go.kr	보건복지정책 전반	보건복지부
http://team.mohw.go.kr/blss	기초생활보장업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http://www.work.go.kr	구인·구직 및 조건부수급자 관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nts.go.kr	사업등록자 관련자료 및 아파트 등 기준시가	국 세 청
http://www.mma.go.kr	입영대상자 확인	병 무 청
http://www.mopas.go.kr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http://www.moct.go.kr	지적자료 등	국토해양부
http://www.mke.go.kr/	장애인 자동차 등	지식경제부
http://www.kpi.or.kr	직종별 표준노임단가 등	한국물가정보
http://www.jahwal.or.kr	자활후견기관 업무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http://www.kihasa.re.kr	사회복지 관련 연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neonet.co.kr/novo-rebank	부동산 관련 자료	부동산뱅크
http://www.klac.or.kr/	저소득층 무료변론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hrdi.or.kr/	사회복지 관련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www.lh.or.kr	공공주택 관련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member.kapanet.co.kr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한국감정평가협회
http://www.peoplepower21.org	사회복지 관련 자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ww.ccej.or.kr	사회복지 관련 자료	경 실 련
http://www.kepad.or.kr	장애인 취업 및 알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ex.co.kr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
http://www.ksswa.or.kr	사회복지 관련 자료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http://www.npc.or.kr	국민연금제도 안내	국민연금공단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rc.go.kr	장애인 직업재활	국립재활원
http://www.redcross.or.kr	저소득층 구호 및 재해구호	대한적십자사

작성 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 화	02) 2023-8123, 8125, 8129, 8134~6
f a x	02) 2023-8140
homepage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